

DDA 농업분야 Modality협상 결과분석 및 C/S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

서진교 부연구위원
임송수 연구위원
김상현 연구원
임소영 연구원
이병훈 연구원
이재욱 선임연구위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3
3. 연구의 한계	4
제2장 DDA 농업분야 모델리티 협상의 평가와 전망	5
1. 모델리티 협상의 추이	5
2. 기본골격의 평가와 시사점	68
3. 모델리티 협상 과제와 전망	89
4. C/S 작성에 주는 시사점	93
제3장 민감품목의 선정과 평가	95
1. 민감품목 선정 기준	95
2. 검토 기준 적용 결과	101
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TRQ 확대 분석	133
제4장 DDA 농업부문 모델리티 협상전략	144
1. 시장접근분야	144
2. 국내보조분야	147
제5장 C/S 작성의 기본방향	151
1. 관세감축의 일반 원칙	151
2. 민감품목 관세감축의 전략적 접근	154

부록 1. 품목 분류 기준	155
부록 2 민감 품목의 유사/대체품	160
부록 3 차선의 관세 인하 모형	167
참고문헌	170

표 목 차

표 2-1.	하빈슨 초안에 따른 관세감축 공식	6
표 2-2.	하빈슨 초안에 따른 TRQ 규범	7
표 2-3.	하빈슨 초안에 따른 SSG 규범	8
표 2-4.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9
표 2-5.	하빈슨 초안에 따른 허용보조 규범	10
표 2-6.	개도국의 특별 품목 의무	12
표 2-7.	특별 품목과 UR 농업협정 부속서5B의 비교	13
표 2-8.	시나리오 분석 결과	14
표 2-9.	선진국 시나리오 아래 SSG의 파급 영향	15
표 2-10.	TRQ 품목의 영향 분석	16
표 2-11.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수준	18
표 2-12.	AMS와 쌀 소득보전제의 관계	19
표 2-13.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이행실적	21
표 2-14.	초안에 따른 주요 회원국의 국내보조 감축 부담	24
표 2-15.	미국과 EU의 R/O와 초안의 결과 비교(2010년 기준)	25
표 2-16.	미국-EU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시장접근	27
표 2-17.	미국-EU간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국내보조	29
표 2-18.	미국-EU간 공동제안서의 주요 내용: 수출경쟁	30
표 2-19.	관세 감축의 효과 비교: 400% 관세율 사례	34
표 2-20.	EU, 미국,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36
표 2-21.	EU, 미국,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39
표 2-22.	각료초안의 주요 내용: 관세감축	45
표 2-23.	관세구간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주요품목, 생산액	50
표 2-24.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사례	51

표 2-25.	주요국의 관세 구조 및 분포 현황	52
표 2-26.	주요국의 국내보조와 총 농업 생산액 수준(1999년 기준)	56
표 2-27.	기본골격 협상에 관한 주요 경과	63
표 2-28.	회원국 또는 그룹별 성과	73
표 2-29.	우리나라의 주요 고관세 품목	74
표 2-30.	무역왜곡 보조의 규모 비교	79
표 2-31.	AMS의 소진률과 상대적 규모	81
표 2-32.	우리나라의 현행 AMS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율	83
표 2-33.	주요국의 수출보조 추이	87
표 3-1.	품목별 생산액 비중	102
표 3-2.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2001년 기준)	104
표 3-3.	품목별 생산액 변화추이	106
표 3-4.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	108
표 3-5.	품목별 생산능가 및 취업자 비중	111
표 3-6-1.	지역별/품목별 생산집중도 I	113
표 3-6-2.	지역별/품목별 생산집중도 II*	114
표 3-7.	지역별 품목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	115
표 3-8.	품목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116
표 3-9.	품목별/연도별 고정비용 비중	119
표 3-10.	품목별/연도별 가변비용비중의 변화 추이	120
표 3-11.	품목별/연도별 토지비용 비중의 변화추이	121
표 3-12.	품목별/연도별 노동비용 비중의 변화 추이	122
표 3-13.	생산비 구조에 따른 품목별 순위: 2000~2002년 평균	123
표 3-14.	주요 품목의 2001-03년도 평균 국내외 가격차 및 2004 양허세율	124
표 3-15.	1인당 연간 소비량: 1985~2002년	126
표 3-16.	일본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127
표 3-17.	생산액과 국내외가격차에 의한 품목분류	128
표 3-18.	재배면적과 취업자수에 의한 품목분류	129

표 3-19.	노동분배몫과 토지분배몫에 의한 품목분류	130
표 3-20.	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에 의한 품목분류	130
표 3-21.	토지분배몫과 자본분배몫에 의한 품목분류	131
표 3-22.	민감품목 1차안	132
표 3-23.	민감품목(고추)	134
표 3-24.	민감품목(마늘)	134
표 3-25.	주요 품목의 공급탄성치 및 수요탄성치	140
표 3-26.	2001~03년 평균 수급 실적 및 수입 수요량	141
표 3-27.	품목별 국내외 가격과 양허세율	142
표 3-28.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율	143
표 3-29.	관세 1% 변화시 수입량 변화율	143
표 4-1.	관세구간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주요품목, 생산액	146
표 4-2.	우리나라의 AMS 이행 실적	148
표 4-3.	보조총액 감축률별 무역왜곡 보조총액의 상한	149
부표 1-1.	생산액 기준 품목 분류	155
부표 1-2.	노동투입시간에 따른 품목 분류	156
부표 1-3.	지역별 집중도에 근거한 품목 분류	158
부표 2-1.	보리	160
부표 2-2.	맥주보리	160
부표 2-3.	옥수수	161
부표 2-4.	감자	162
부표 2-5.	감귤	162
부표 2-6.	쇠고기	163
부표 2-7.	돼지고기	164
부표 2-8.	닭고기	165
부표 2-9.	유제품	166

그림 목 차

그림 2-1.	관세감축 방식의 비교	12
그림 2-2.	공동 제안서의 구도	35
그림 2-3.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구성 보조별 감축의 관계	78
그림 3-1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136
그림 3-2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136
그림 5-1	품목별 2004 양허세율	15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WTO 농업협상은 뉴라운드의 출범과는 관계없이 UR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개시되었음. 이후 WTO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사인 도하 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er)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DDA로 편입되면서 협상 목적과 일정이 확정되었고,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y)협상이 개시되었음.
- 이후 DDA 농업협상은 2002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03년 2월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세부원칙 도출을 위해 “세부원칙에 관한 1차, 2차 초안(일명 하빈슨(Harbinson) 초안)”이 하빈슨의장에 의해 작성·배포되었음.
- 그러나 하빈슨 초안은 핵심 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이견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도하개발아젠더 출범당시 설정하였던 세부원칙 도

출 시한인 2003년 3월말을 넘기게 되었고, DDA 농업협상은 사실상 표류하게 되었음.

- 이후 농업협상은 세부원칙 도출에서 한 발짝 물러서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 도출로 재출발하였으며, 2003년 7월 미국과 EU의 공동 제안 발표, 카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의 초안 발표 등으로 2003년 9월 WTO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칸쿤)에서 기본골격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로 접어들었음.
-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는 데르베즈(Derbez) 초안의 배포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쟁점인 싱가포르 이슈와 면화 보조금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EU 중심의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이 주도하는 소위 (수출)개도국들의 모임은 G-20간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되었고, 농업협상은 모델리티 기본골격 초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음.
- 2004년 2월 이후 재개된 DDA는 신임 의장단의 선출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회원국간의 집중적인 이견 절충 시도를 통해 2004년 8월 1일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마련에 성공하였음.
 - 기본골격은 향후 타결될 모델리티(modality)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행계획서 작성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감축수치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남겨둠으로써 향후 협상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음.
- 향후 DDA 농업협상을 전망해 볼 때 모델리티의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중국, 홍콩)가 모델리티 합의 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모델리티 합의 도출은 곧 농산물 관세감축 및 TRQ 확대 폭이 결정됨은 물론 농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감축 수준이 결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DD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과급영향의 크기를 상당 부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DDA 이후 국내 농업정책의 수행에도 커다란 외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DDA 모델리티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향후 채택될 모델리티의 틀 안에서 국내농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행계획서의 작성방안도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행계획서는 DDA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바, 세부원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기초한 효율적·전략적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매우 중요.
- 이 연구의 목적은 DDA 농업협상에서 수립될 세부원칙(modality)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 작성의 효율적·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의 평가
 - 분야별 세부 평가: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 중심

-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의 대응 전략 마련
- 민감품목의 선정
- 이행계획서(CS) 작성 방향 제시

3. 연구의 한계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칸쿤 각료회의 결렬로 인하여 DDA의 진행이 매우 더딘 실정에서 모델리티의 합의도출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초 계획된 연구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모델리티의 구체성은 결여된 실정임.
- 지난 8월 1일 모델리티의 기본골격이 합의·도출되었으나, 여전히 핵심쟁점은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아 있음.
- 이러한 여건 아래서 모델리티 합의 도출을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CS 작성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름.
- 다행히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이 모델리티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모델리티가 수립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CS 작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CS 작성의 최대 핵심인 민감품목의 선정에 관하여 연구의 중심을 둠.

제 2 장

DDA 농업부문 모델리티 협상의 평가와 전망

1. 모델리티 협상의 추이

- 모델리티(modalities) 또는 세부원칙은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어떻게 농정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명시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각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하여 WTO차원에서 검증을 받고 이를 이행하게 됨.

1.1. DDA의 출범과 하빈슨(Harbinson) 초안

-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UR 이행종료 1년 전인 2000년부터 시작됨.
- 2001년 11월에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로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공식 출범시켰고, 이에 따라 농업협상도 DDA의 한 부분으로 일괄 타결방식으로 추진되게 되었음.

- 농업협상은 홍콩 대사인 하빈슨(Harbinson) 의장을 중심으로 농업협상 특별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03년 3월의 모델리티 도출시한에 맞추기 위해 하빈슨의장은 2003년 1월과 2월에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모델리티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함.

1.1.1. 하빈슨 초안의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관세감축은 UR 협상결과 최종양허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10년으로 주어졌음<표 2-1>.
- 감축 방식은 UR 방식대로 단순평균 감축률 및 최소감축률을 적용하되, 관세 수준별로 UR보다 높은 수준의 차등 감축률을 적용함.
- 개도국의 관세감축 폭은 선진국의 2/3 수준

표 2-1. 하빈슨 초안에 따른 관세감축 공식

구분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초안	90%초과	60	45	5년	120%초과	40	30	10년
	15~90%	50	35		60~120%	35	25	
	15%이하	40	25		20~60%	30	20	
					20%이하	25	15	
				특별품목(SP)	10	5		
UR		36	15	6년		24	10	10년

주: 개도국 특별 품목은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으로 지정.

- 개도국에게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을 HS [4]단위 기준에서 선정해 평균 10%, 최소 5%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특별세이프가드(SSM)를 적용함.
- TRQ는 UR 협상결과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5년 동안 1999~2001년 평균 소비량의 10%(최소 8%)까지 증량함<표 2-2>.

표 2-2. 하빈슨 초안에 따른 TRQ 규범

구분	선진국		개도국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2001년 기준 ·평균 소비량의 10%미만 품목은 10%까지 증량함. ·해당품목의 1/4은 최소 8%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대신 다른 1/4는 12%까지 증량해야 함. 	5년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2001년 기준 ·평균소비량의 6.6%미만 품목은 6.6%까지 증량함. ·해당품목의 1/4은 최소 5%까지 증량할 수 있으나 대신 다른 1/4은 8%까지 증량 · SP품목은 증량 면제 	10년간 이행
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88년 평균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3%에서 5%로 증량(MMA). · 3% 이상인 품목은 최소한 기준연도 수입량을 보장(CMA). 	6년간 이행	· 선진국과 동일	10년간 이행

- 개도국은 10년 동안 6.6%(최소 5%)까지 증량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품목은 TRQ 증량이 면제됨.
- TRQ내 관세율은 감축하지 않음.

- TRQ 관리의 투명성 ·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산 구매 또는 재수출 조건, 용도지정 등을 금지함.
 - 열대 상품(tropical product)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최근 대표적인 3개년 평균으로 TRQ 이행률(fill rate)이 65% 이하일 때 관세를 감축하도록 함.
- 특별 긴급수입규제 조치(SSG)의 존속 여부는 이행 최종연도 직후나 2년 후에 폐지함<표 2-3>.
- 개도국은 기존의 SSG를 유지하고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SSM을 도입.

표 2-3. 하빈슨 초안에 따른 SSG 규범

구분	선진국	개도국
초안	·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이행 종료 직후 또는 2년 후 철폐	· 기존 SSG 유지 ·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SP)에 대해서는 새로운 SSG 마련
UR	· UR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에 한해 적용	· 선진국과 동일

- 수입 국영무역에 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함.
- 그밖에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국내보조

- 감축대상 보조(AMS)는 총액 기준으로 양허수준의 60%를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 40%를 감축함<표 2-4>.
- 품목별 AMS는 1999~2001년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 2-4.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초안	60%	5년	40%	10년
UR	20%	6년	13.3%	10년

-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는 농업생산액의 5% 수준에서 해마다 0.5% 포인트씩 인하.
 - 개도국의 경우 지금과 같이 10%를 유지함.
 - 품목 특정보조가 음(-)일 경우 품목 불특정 보조에서 해당 품목의 총 생산액 1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블루박스(blue box)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수준을 기준으로 5년간 50%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함.
 - 개도국의 경우 10년간 33%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함.

- 허용보조(green box)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되 보조 지급요건을 명확히 설정<표 2-5>.
 - 개도국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직접보조를 추가적으로 인정.

- 개도국 특별우대 조항(6조 2항)의 대상은 더욱 확대시킴.

표 2-5. 하빈슨 초안에 따른 허용보조 규범

구분	선진국	개도국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보조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함. · 탈농지원 대상에 농지의 장기임대도 대상에 포함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및 새로운 허용보조 추가 검토 · 공공비축제 등은 적용요건 완화함. · 새로운 조치를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요작물의 국내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 농촌 활력과 문화유산 유지를 위한 소규모 생산자/가족농에 대한 보조
UR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허용보조 도입	선진국과 동일

□ 수출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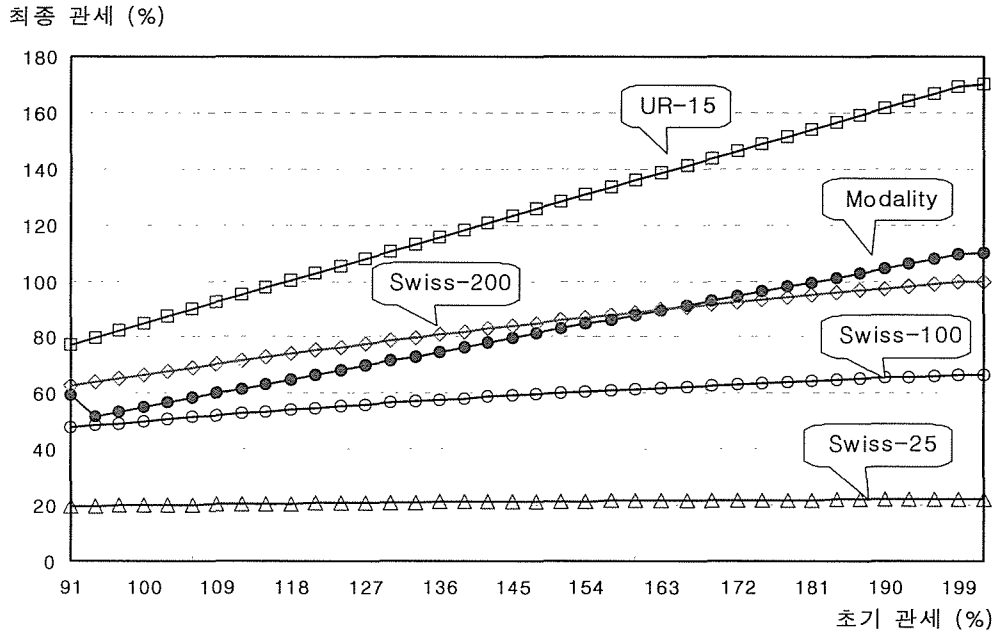
- 수출보조의 50%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년도 대비 30%를 감축하고 6년째에는 철폐하며, 그 밖의 품목은 전년대비 25% 감축하되 10년째 폐지함.
 - 개도국의 경우 수출보조의 50%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년도 대비 25%를 감축하고 11년째 철폐하며, 그 밖의 품목은 전년대비 20% 감축하되 13년째 폐지함.
-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고, 이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적용함.
- 식량원조가 우회적인 수출보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설정함.
- 수출 국영무역기관(STEs)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
- 원칙적으로 수출금지, 제한 조치 및 수출세 부과 등을 금지.

1.1.2. 하빈슨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 시장접근

- 관세 감축방식은 수입국의 입장에서 UR공식을 채택한 반면에 감축 폭은 수출국의 주장대로 큰 폭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국 사이에 절충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세 상한이 설정되지 않은 점에서 수입국들의 입장(고율관세 대폭 감축의 어려움)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됨
- EU가 주장한 최소감축율 15%와 미국이 주장한 계수 25의 스위스공식, 그리고 모델리티 초안에서 제시된 관세수준별 차등감축방식에 따라서 관세를 감축해 보면,
 - 초기관세가 높은 고율관세의 경우, 모델리티 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했을 때가 수입국의 당초 의견에 가장 가깝게 나타남<그림 2-1>.
 - 제시된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 결과가 계수를 100이나 200으로 설정한 스위스공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초안은 45% 최소감축률 제시에도 불구하고, 고율관세 감축에 대해 수출국들이 처음에 제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계수를 상향 조정한 경우(예: 계수 100이나 200의 스위스 공식 적용)보다도 감축효과가 적음.
- 수입국들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감축률 45%는 수입국의 제안보다 큰 수준이고, TRQ 증량과 SSG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수출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러움.

그림 2-1. 관세감축 방식의 비교



- 개도국 우대조치가 확대되고, 특히 특별품목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표 2-6>.

표 2-6. 개도국의 특별 품목 의무

	UR	초안	
	개도국	개도국	선진국
특별품목	없음	있음	없음
최소감축률	10%	5%	25~45%
TRQ	2%에서 3~5%로 증량	증량의무 없음	10%까지 증량

- 특별품목의 도입으로 개도국이 관세화 특별취급조항(Annex 5B)을 원용할 유인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표 2-7>.

표 2-7. 특별 품목과 UR 농업협정 부속서5B의 비교

	UR	초안
	Annex 5B	특별 품목
적용 대상	개도국 조항	개도국 조항
세부 적용요건	매우 까다로움	없음
특혜	관세화 예외 / 10% 감축	5% 감축
TRQ	1%에서 4%로 증량	증량 의무 없음

- 지금까지 관세화 대상품목에 한하여 적용 가능했던 SSG 조치가 개도국의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 점도 특이할 사항임.
- 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초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다양함.
 -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여부로 설정할 수 있음.
- 개도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쌀은 특별 품목으로 선정해 TRQ 증량 없이 관세를 10년간 5% 감축함.
 - 그 밖의 품목은 관세 수준별로 10년간 17~30%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TRQ를 1999~2001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6.7%까지 증량함.
- 선진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쌀의 관세는 5년간 최소 45%로 감축하고, TRQ 물량은 1999~2001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10%까지 늘림.
 - 그 밖의 품목은 관세 수준별로 5년간 25~45%의 최소 감축률을 적용하고, TRQ를 1999~2001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10%까지 증량함.
 - 쌀에 대해 SSG를 적용할 경우를 추가로 분석함.

○ 개도국과 선진국 시나리오아래 2010년 농업 총소득은 약 2조 9,000억 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쌀 소득의 격차(약 2조 7,000억 원)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표 2-8>.

- 개도국 지위아래 2010년 농업 총소득은 15조 4,000억 원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선진국 시나리오아래서는 12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8.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농가판매 가격지수 (명목)	수입량 ²⁾ (천톤)	쌀소득 ³⁾ (10억원)	농업 총소득 (10억원)
2002		1,053	4,927	130.5	154	6,958	14,950
2005		983	4,896	126.4	205	6,741	15,720
2010	개도국	818	4,225	123.8	373	5,558	15,412
	선진국	722	3,596	82.3	834	2,844	12,491
	차이 ¹⁾	96	480	41.4	462	2,714	2,924
2005년 대비 증감률 (%)	개도국	△16.8	△16.8	△2.1	7.3	△17.5	△2.0
	선진국	△26.6	△26.6	△34.9	16.3	△57.8	△20.5

주: 1) 차이는 개도국의 경우에서 선진국의 경우의 해당 수치를 뺀 값임.

2) 쌀 수입량에서 2005년 대비 증감률은 수입량을 기준년도(1986-88) MMA기준 비율을 의미. 따라서 7.3%는 개도국우대를 유지할 경우 2010년 예상 쌀 수입량 83만 4천톤이 MMA 기준으로 16.3%에 해당함을 의미

3) 쌀소득과 농업총소득은 모두 명목개념임.

○ 쌀 소득은 개도국 지위아래 2010년에 5조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 지위아래에서는 재배면적 감소와 쌀 가격 하락으로 2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나리오 사이의 쌀 소득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2010년에 쌀 수입량은 개도국지위 아래 37만 3,000톤으로 기준연도 MMA로 환산할 때 7.3%에 해당하며, 선진국일 때에는 83만 4,000톤으로 MMA의 약 16.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쌀에 대한 SSG 적용 여부에 따라 2010년에 쌀 소득은 1조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도 67만 6,000톤으로 전망돼 SSG가 쌀 수입물량을 약 16만톤(MMA 환산기준으로 약 3%)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9>.

표 2-9. 선진국 시나리오아래 SSG의 파급 영향

연도 및 분류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농가판매 가격지수 (명목)	수입량 (천톤)	쌀소득 (10억원)	농업 총소득 (10억원)
2002		1,053	4,927	130.5	154	6,958	14,950
2005		983	4,896	126.4	205	6,741	15,720
2010	SSG 적용	768	3,827	100.2	676	3,975	13,587
	SSG 미적용	722	3,596	82.3	834	2,844	12,491
	차 이	46	231	17.9	△158	1,131	1,096

- TRQ 증량이 최근연도 소비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표 2-10>.
- 나머지 TRQ 품목은 최근의 실제 수입물량이 TRQ 확대 물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¹

1 TRQ품목은 현재 HS 10단위 기준으로 189개이고, 실품목 기준으로 64개임.

- 다만 쿼터내 관세율과 쿼터초과 관세율 사이의 격차가 커 TRQ 물량의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초안이 TRQ 물량의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기존에 우리나라가 활용해 왔던 수입 국영무역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의한 관리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임.

표 2-10. TRQ 품목의 영향 분석

	2004년 양허수준 (톤)	초안(선진국) (톤)	1998~2000년 평균수입량 (톤)	쿼터내 관세율 (%)	쿼터초과 관세율(%)	
					2005년	2010년
참 개	6,731	9,011	61,710	40	630	선진국 개도국 346.5 441.0
고구마	18,535	37,067	2,972	20	385	선진국 개도국 211.8 269.5
마늘	14,467	35,770	19,697	50	360	선진국 개도국 198.0 252.0
천연꿀	420	1,200	386	20	243	선진국 개도국 133.7 170.1
잣	52.9	105.3	41.1	30	567	선진국 개도국 311.9 396.9
고추	7,185	19,700	6,346	50	270	선진국 개도국 148.5 189.0
감자	18,810	64,830	10,215	30	219.4	선진국 개도국 120.7 153.6
양파	20,645	89,600	18,163	50	135	선진국 개도국 74.3 94.5

□ 국내보조 분야

- AMS의 감축폭이 UR 수준의 3배에 해당하는 이행기간 5년(개도국 10년)에 60%(개도국 40%)으로 제시되고, AMS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의 감축이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감축 대상 보조에 대한 규율이 강화됨.
- 초안은 큰 폭의 국내보조 감축의 기초 속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
 - 개도국의 주장대로 S&D 박스가 크게 확충됐으며, 그린박스 규정도 개도국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의 기준이 완화됨.
 - 감축부담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격차가 UR 수준보다 더욱 커졌는데, 이는 선진국 관련 규율이 강화된 반면에 개도국의 감축부담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완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농업의 NTC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된 개념이나, 초안은 NTC를 허용보조의 틀 안에서 주로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로 편향돼 제시됨.
 - 허용보조 이외의 다른 국내보조 분야에서도 NTC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AMS의 큰 폭 감축, 이행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정된 AMS 상한 설정, 블루박스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한 규모 감축 내지 폐지, 최소 허용보조 감축(선진국에 한정) 등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수단 도입을 차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신속적인 농정전개에 음(-)의 영향을 미침.

- 초안에 따르면 감축대상 보조(AMS)는 2004년 1조 4,900억 원에서 2010년에 5,960억 원(선진국 기준 적용) 또는 2015년에 8,940억 원(개도국 기준 적용)으로 감축해야 함<표 2-11>.

표 2-11. 하빈슨 초안에 따른 AMS 감축 수준

	선진국 기준(억원)	개도국 기준(억원)
감축률	2010년 : 60% 감축	2015년 : 40% 감축
2004(기준연도)	14,900	14,900
2010	5,960	11,920
2015	-	8,940

- AMS 감축 수준을 쌀 수매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이행기간에 쌀 수매량을 해마다 9만 톤(선진국 기준 적용) 또는 3만 톤(개도국 기준 적용) 줄여나가야 함.²
 - 이에 따라 2010년 수매량은 2000년 수준보다 45만 톤(선진국 기준 적용) 또는 15만 톤(개도국 기준 적용)이 적게 됨.
-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된다면 2003년에 도입된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소요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산은 AMS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축된 AMS 수준에서 수매제와 소득 보전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표 2-12>.

² 2000년도 관리가격과 고정 참조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총 AMS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수준인 92%로 가정함. 2000년도 쌀 수매물량은 905,903톤으로 생산량의 17% 정도임.

표 2-12. AMS와 쌀 소득보전제의 관계

	개도국 기준(억 원)			선진국 기준(억 원)		
	AMS상한	소득보전 직불소요	차액	AMS상한	소득보전 직불소요	차액
2005	14,900	2,393	12,508	14,900	2,393	12,508
2006	14,304	2,047	12,257	13,112	5,670	7,442
2007	13,708	1,443	12,265	11,324	8,820	2,504
2008	13,112	1,004	12,108	9,536	11,462	△1,926
2009	12,516	661	11,856	7,748	12,701	△4,953
2010	11,920	532	11,388	5,960	12,255	△6,295

- 선진국 기준아래 2010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의 규모는 1조 2,255억 원인데, 이 조치만으로도 AMS 상한을 6,000억 원 이상 초과하게 됨.
 - 개도국 기준 아래에서는 2010년에 소득보전제의 규모를 빼고도 1조 1,388억 원을 AMS로 활용할 수 있음.

- 1999~2000년 이행결과를 기초로 할 때, AMS에 포함시킬 수 있는 품목은 쌀, 보리, 누에고치, 유채에 국한되며, 그 밖의 다른 품목에 대해 AMS 보조는 새롭게 도입할 수 없음.
 - 초안은 1999~2001년의 이행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행실적 통보는 2000년도까지 이뤄진 상태임.
 - 품목별 AMS 상한은 쌀 1조 5,752억 원, 보리 452억 원, 유채 19억 원, 누에고치 5,000만 원이 됨.

- 시장개방의 확대되면서 지원규모 및 대상 품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MS 보조의 추가 도입 불가는 농정의 신축적인 운용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1997~98년 소 파동에 따른 수매조치로 생산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가 투입돼 최소 허용보조 기준을 간신히 맞췄고, 2000년 마늘 파동에 따른 가격보조는 이전까지 생산액의 1% 미만으로 지원됐던 경우와 달리 8% 이상의 보조 규모가 투입됨.
- 따라서 기존의 AMS 대상 품목을 뺀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는 실제로 최소 허용보조 수준(개도국 기준으로 품목별 생산액의 10%)으로 상한이 설정된 것임.
-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신규 품목에 대한 AMS 형태의 보조는 사용할 수 없음.
- 선진국 기준에 따라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품목별 농업생산액 대비 2.5%로 감축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일부 품목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나, 앞으로 이 조치를 활용해 시장개방으로 피해 받는 품목에 대해 보상하는데에는 제한을 받을 것임.
 - 1995~2000년에 품목별 농업생산액에서 해당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지금의 보조 수준을 깎지 않아도 됨<표 2-13>.
 - 기준 강화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은 소고기, 마늘, 기타곡물 등임.
- 개도국지위 아래에서는 기존의 10%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감축 부담은 없음.
- 지금의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은 블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안은 1999~2001년에 이행한 블루박스의 실적을 상한으로 감축기준을 제시함.³

표 2-13. 우리나라의 최소 허용보조 이행실적

연도	생산액 대비 품목별 보조 비율				AMS 품목
	1% 미만	1~3%	3~5%	5~10%	
1995	보리맥, 쌀,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밤, 인삼, 돼지고기, 달걀, 가금육, 채소, 약용, 고추, 버섯, 감자	콩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6	보리맥, 콩, 쌀, 밤,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인삼, 소고기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7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인삼		쇠고기, 기타곡물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8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마늘, 감자, 돼지고기, 채소,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마늘	인삼	쇠고기	쌀, 보리, 옥수수, 누에고치, 기타곡물
1999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 채소, 달걀, 화훼류, 고추, 버섯	콩, 밤, 인삼		옥수수	쌀, 보리, 누에고치, 기타곡물
2000	보리맥, 과일, 사과, 배,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 달걀,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고구마, 파, 당근, 대추, 기타과실류	콩, 밤, 인삼, 양파, 참다래		옥수수, 누에고치, 마늘, 기타곡물	쌀, 보리, 유채
'95~'00 평균	보리맥, 고구마, 파, 당근, 감, 대추, 기타과실류, 과일, 사과, 배, 감귤, 포도, 돼지고기, 가금육, 달걀, 감자, 채소류, 약용, 화훼류, 고추, 버섯	콩, 양파, 참다래, 마늘, 밤, 인삼	쇠고기	기타곡물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주: 1. 기타곡물은 밀, 메밀 등이고, 기타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자두 등임.

2. 1997~99년에 유채의 생산액 자료가 없어 그 비중을 산출하지 못함.

자료: 농림부(<http://www.maf.go.kr>)의 자료를 기초로 분류함.

3 블루박스 조치가 없었던 일본은 UR 농업협정 이행기간인 1998년에 '도작 경영안정제'를 블루박스로 도입함.

- 우리나라는 블루박스를 이행한 실적이 없으므로 감축을 위한 상한 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블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없게 됨.
- 소득보험과 소득 안전망 제도(7항)의 도입 여건이 악화됨.
 - 농가의 농업소득이 최대 70%까지만 회복되도록 보상 상한을 설정한 것은 농업소득의 최대 91% 수준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강화한 것임.
 - 현재의 규정 아래에서도 농가의 참여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보상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조치의 도입 가능성은 더욱 어렵게 됨.
 - 단 개도국의 경우에 국내법에 근거한 발동 및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활용에 사실상 제약이 따르지 않음.
- 가축 질병 관련 재해 구호(8항)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짐.
 - 국내법이나 국제기준에 근거한 질병예방 조치에 의한 생산 손실이 재해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고, 이 경우 평균 생산의 30% 미만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가축질병 관련 재해 구호는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에 전년도 생산의 10% 초과 또는 국내법 규정에 명시된 발동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생산자 및 자원 은퇴제도(9항과 10항)의 규정을 조정해야 함.
 - 구조조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규율을 강화한 것임.
 - 생산자 은퇴제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농지 임대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5년 이상 농지를 임대하는 농민이 수혜 대상인 우리나라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이 이 조항에 부합될 가능성이 커짐.
 - 개도국의 경우 자원은퇴제도 아래 농지의 은퇴 기간을 최소 3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신축성을 부여함.

-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11항)의 요건이 강화됨.
 - ‘구조적 불이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화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것은 이 조항의 활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듦.
 - 이 조항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는 그린박스 총액 가운데 20% 또는 1조 원 이상이며, 주로 축산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활용함.

- 주곡의 국내생산 능력과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긍정적
 -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목적으로 쌀의 국내생산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쌀은 주곡의 기준으로 제시된 생산액, 칼로리 소비량, 또는 수출량 대비 비중 요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임.
 - 보조 규모나 자격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른 신축적으로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임.
 - 개도국 지위 아래 우리나라는 농촌활력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지원을 도입할 수 있음.
 - 회원국 사이에 다양한 농업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의와 자격 및 보조 규모는 국내법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신축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임.

- 기타 개도국 우대아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3항)과 지역지원제도(13항)의 운용에서 미리 정한 목표 수량이나 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부에 구속받지 않게 됨.

- 초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999년과 2010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일본의 국내보조 순 감축부담을 산출하면 <표 2-14>과 같음.

- 1999년의 실제 보조 규모와 비교할 때 2010년에 EU는 AMS와 블루박스에서 309억 유로 감축해야 하는 반면에 같은 기간에 미국은 AMS와 최소 허용보조에서 120억 달러, 일본은 블루박스에서 464억 엔을 감축해야 함.

표 2-14. 초안에 따른 주요 회원국의 국내보조 감축 부담

		EU (억 €)	미국 (억 \$)	일본 (억 ¥)	우리나라(억 원)	
					선진국기준	개도국기준
실제 지원한 보조 ¹⁾ (1999년 기준)	AMS	479	169	7,478	16,909	
	블루박스	198	0	927	0	
	최소허용보조	5	74	326	5,245	
	① 합계	681	243	8,731	22,154	
감축해야 할 규모 (2010년 기준) ²⁾	AMS	210	92	0	10,949	4,989
	블루박스	99	-	464	-	-
	최소허용보조	0	28	0	328	0
	② 합계	309	120	464	11,277	4,989
감축률(②/①)		45%	49%	5%	51%	23%

주 : 1. 1999년에 AMS와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로 사용한 실적인데, 우리나라 수치는 2000년 기준임.

2. 초안의 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지원한 보조 수준에서 감축해야 될 규모(2010년 기준)를 말함.

- 2000~2010년에 우리나라는 개도국 기준아래 5,000억 원 정도와 선진국 기준아래 1조 원 이상을 실제로 감축시켜야 함.
-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감축 부담이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결과임.
- 국내보조 감축률 측면에서는 EU 45%와 미국 49%로 EU의 감축률이 4% 포인트 낮고, 일본의 감축률은 5%로 낮게 나타남.

- 미국과 EU의 R/O(request/offer)와 초안을 비교하면 <표 2-15>와 같음.
- 초안에 따른 국내보조(AMS, 블루박스, 최소 허용보조)의 상한 규모는 미국과 EU 안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함.

표 2-15. 미국과 EU의 R/O와 초안의 결과 비교(2010년 기준)

		EU (억 €)	미국 (억 \$)	일본 (억 ¥)	우리나라(억 원)	
					선진국기준	개도국기준
미국 안 ¹⁾	AMS	109	100	5,004	14,900	
	블루박스	-	-	-	-	
	최소허용보조	5	74	326	5,245	
	합계	114	174	5,330	20,145	
EU 안 ²⁾	AMS	302	86	18,623	6,705	10,803
	블루박스	198	-	927	-	-
	최소허용보조	-	-	-	-	-
	합계	500	86	19,550	6,705	10,803
초안	AMS	269	76	15,892	5,960	11,920
	블루박스	99	-	464	-	-
	최소허용보조	5	46	326	4,916	5,245
	합계	372	123	16,681	10,876	17,165

주 : 1) 미국 안은 AMS와 블루박스를 합해 그 상한을 1996~98년 평균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하는 것임.

2) EU 안은 AMS를 55% 감축하고 블루박스를 유지하되 최소 허용보조를 폐지하는 것임.

1.2 미국-EU 공동 제안서와 카스티요 초안

1.2.1. 배경

- 하빈슨 초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EU는 공동 제안서를 통해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답보상태에 빠진 농업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음.
 - 하빈슨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지 못했고, 모델리티 시한인 2003년 3월이 지나면서 회원국들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 EU의 타협이 필요함을 인식함.
 - 특히 7월말에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미국과 EU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냄.
- 공동 제안서는 주요 감축수치를 공란으로 남겨둔 채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최소한의 기본골격(framework)을 제시한 것임.
 - 주요 쟁점인 자세한 수치 결정은 각료회의 이후 협상과제로 남긴다고 밝힘.

1.2.2.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관세 감축공식은 농산물 전체를 관세라인별(tariff line)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① UR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② 스위스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③ 관세철폐(무세화) 등을 적용함<표 2-16>.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에는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해당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감축) 또는 R/O방식을 통하여 TRQ 증량 등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함.

표 2-16. 미국-EU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시장접근

분류	미국-EU 공동 제안서		하빈슨 초안
관세 감축 및 TRQ	관세라인 [X]%	·UR방식: 평균 []%, 최소 []% ·TRQ 증량	<선진국> ·90%<: 평균 60%, 최소 45% ·15~90%: 평균 50%, 최소 35% ·15%>: 평균 40%, 최소 25% <개도국> ·120%<: 평균 40%, 최소 30% ·60~120%: 평균 35%, 최소 25% ·20~60%: 평균 30%, 최소 20% ·20%>: 평균 25%, 최소 15% ·특별품목: 5% TRQ증량 선진국은 국내소비의 10% 개도국은 국내소비의 6.6%
	관세라인 [Y]%	스위스 공식 계수 []	
	관세라인 [100-(X+Y)]%	관세철폐	
	고율관세 규제	관세율이 [Z]%를 초과하는 품목은 [Z]%까지 감축 또는 R/O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 시장접근 확대	
이행 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개도국 우대	·선진국은 개도국산 농산물의 []%에 대해 무관세 적용 ·이행기간과 감축률에서 우대		·특별품목 허용 ·이행기간과 감축 폭에서 우대

자료: WTO<<http://www.wto.org>>

- SSG는 계속 협상하고, 개도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SSM)를 마련함.

□ 국내보조

- 국내보조가 무역에 미치는 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감축 폭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왜곡 효과가 없거나 적은 그린박스 보조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표 2-17>.
- 무역 왜곡이 가장 큰 보조(most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곧 감축 대상보조(AMS)의 경우에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감축하기로 함.
 - AMS감축의 범위를 제시한 이유는 회원국 사이에 보조 규모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보조 수준이 큰 회원국은 더 큰 폭으로 보조를 감축하자는 취지임.
- 무역왜곡이 덜한 보조(less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곧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보조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이행기간 종료 때까지 총 농업생산액(VAP)의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함.⁴
 - 이 부류의 보조는 기존의 블루박스 조치와 동일하나, 생산제한프로그램(production-limiting programs)이란 조건만을 뺀 것임.
 - 지금까지 보조규모의 상한이 없던 블루박스 보조에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최소 허용보조(de minimus)는 []% 감축함.
 - EU와 많은 개도국들의 주장 또는 하빈슨 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따르면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은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됨.

- (i) 고정된 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한 지불
- (ii) 기준 생산량의 85%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불
- (iii) 고정된 가축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한 지불

- AMS,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최소 허용보조 수준의 합이 2004년의 수준보다 크게 낮아야(significantly less) 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크게 낮은 수준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허용보조(그린박스)와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SDT)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그린박스는 어떠한 추가 규율을 부과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장접근 분야와 달리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SDT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음.

표 2-17. 미국-EU간 공동 제안서의 주요 내용: 국내보조

미국-EU 공동제안서	EU 제안서	US 제안서	하빈슨 초안 (선진국 기준)
무역왜곡 효과가 큰 보조(AMS)를 []%~[]% 감축	AMS 55% 감축	모든 무역왜곡 보조(AMS, 블루박스)를 총 농업생산액의 5%수준으로 상한 설정	·AMS 60% 감축 ·품목별 AMS는 이행 실적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무역왜곡 효과가 덜한 보조(약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를 총 농업생산액의 5% 수준으로 상한 설정	블루박스 유지		블루박스는 이행실적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50% 감축 또는 AMS와 통합
최소 허용보조를 []% 감축	최소 허용보조 폐지	-	최소허용보조를 50% 감축
AMS, 블루박스, 최소 허용보조의 합이 2004년 수준보다 크게 낮아야 함.	-	-	-
-	그린박스 조치 확충(지리적 표시제, 동물 복지 등)	그린박스 조치 유지	그린박스 조치 유지(개도국 추가 신축성)

자료: WTO<<http://www.wto.org>>

□ 수출경쟁

-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을 철폐하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감축함<표 2-18>.

표 2-18. 미국-EU간 공동제안서의 주요 내용: 수출경쟁

분류	하빈슨 초안	미국-EU 공동제안서
수출보조	공식에 의거 이행기간 종료 후 철폐	·개도국 관심인 []품목에 대해서 []년 이내 철폐 ·다른 품목은 보조 예산과 물량을 감축
수출신용	엄격히 규제 ·상환기간 축소	·개도국 관심인 []품목에 대해서 []년 이내 상환 기간을 []월로 줄임으로써 무역왜곡 요소 철폐 ·수출보조 감축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감축 노력
식량원조	엄격히 규제	·식량원조를 통한 상업적 수출을 방지위한 규범 마련
수출 국영무역	엄격히 규제	·수출독점, 재정적 특혜, 가격차별 방지 등에 대한 규범 마련

1.2.3. 평가와 시사점

□ 시장접근

- 품목별로 수입 민감도에 따라 상이한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미국과 EU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함.
 - 민감품목에는 EU 등 수입국이 주장했던 UR 방식을 제시한 반면에 나머지 품목에는 미국과 케언즈 등 수출국이 주장한 스위스 방식과 무세화가 채택되어 수출입국 사이에 절충을 추구한 것임.
- EU의 경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55품목(HS 8단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1,762품목(HS 8단위 기준)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인 품목은 전체의 11%를 차지함.
 - 대표적인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수준 100% 이상)은 양고기, 쇠고기, 낙농품(분유, 버터, 유장, 치즈), 매니옥, 바나나⁵, 밀(듀럼), 포도주, 기타 과일쥬스, 버섯(일시 저장), 설탕 등임.
- 미국의 경우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26개로 전체 농산물 1,720개 중(HS 8단위 기준) 약 1.5%이고 50% 이상인 경우도 3.5% 정도에 불과하며, 주요 해당 품목은 담배, 낙농품 일부(버터, 유장), 설탕, 땅콩 등임.

5 바나나가 EU의 민감품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함. 바나나의 관세가 높은 이유는 ACP 및 EBA협약에 따른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EU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역사적 특수관계(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의 식민지였음) 때문에 기인하며, 지난 UR협정때에도 EU의 바나나문제에 대해서는 중남미국가들의 용인이 있었음.

- 우리나라 농산물중 100%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142개(쌀 관련품목 포함)로 전체의 1,452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9.8%에 해당됨.
 - 이 중에서 농업생산액이 큰 품목은 100여개로 전체의 7.5%안팎이고, 다시 가공품과 일부 곡물류를 제외하면 70개 안팎으로 줄어 전체의 약 5%에 해당하게 됨.

- 민감품목의 비율이 5% 안팎으로 결정되는 한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의 관세감축에 UR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예: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이 모두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으로 관세 상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사항임.

- 관세상한이나 TRQ 확대가 명시된 것은 UR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가로 인식해야 할 것임.
 - 이는 UR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율관세를 겨냥한 수단으로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수출국들의 요구사항임.
 - 고율관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규정임.

- 미국과 EU의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관세 상한이 200% 이상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 미국이 100~200%의 상한을 언급한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 EU의 경우 민감 품목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품목의 관세는 종량세 또는 혼합세를 종가세로 환산할 때 최고 300% 내외로 추산됨.
 - 쇠고기/면양고기/듀럼밀(100~150%), 분유/기타 과일 주스(150~200%), 치즈(200~250%), 버터밀크/유장(250~350%) 등
 - 관세가 300%인 낙농품을 EU가 주장하는 UR 방식(평균 36%, 최소 15%)에 따라 감축하게 되면, 이행기간 끝에 관세는 약 260%가 됨.

- 만약 관세 상한이 200%로 설정된다면, 60% 포인트의 추가 감축이 EU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데, 이는 TRQ 확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EU와 유사한 종량세를 적용한 경우가 많지만 최고 관세는 250% 정도로 추산됨.
 - 설탕(100~150%), 버터/유장/땅콩(150~200%), 담배(250~300%) 등
 - 여기에 최소감축률 15%를 적용하면 이행기간 말 관세는 212% 수준이 됨.
- 관세상한이 200%로 설정될 경우, 미국은 추가 부담이 거의 없으며, UR 방식 적용에 따른 감축 혜택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됨.
 -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된다고 해도, 계수 25의 스위스공식을 주장한 미국의 처지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 100~200%로 관세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 회원국에는 하빈슨초안보다 훨씬 큰 관세감축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됨<표 2-19>.
 - 4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UR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소 감축률 15%를 적용해도 하빈슨 초안의 선진국 기준보다 더 큰 감축을 하게 됨.
 - UR 방식아래 TRQ 증량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상대국은 이론적으로 관세 상한 수준까지 TRQ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그들의 관심품목의 시장접근 확대와 연계시키려고 할 것임.

표 2-19. 관세 감축의 효과 비교: 400% 관세율 사례

2004년 양허관세 (400%)	하빈슨 초안			미국-EU 공동 제안서		
	개도국		선진국	고율 관세 유지	관세 상한	
	특별품목	일반품목			100%	200%
이행연도 끝 관세	380%	280% + TRQ증량	220% + TRQ증량	340% +기본 TRQ증량 +추가 TRQ증량	100%	200%
감축 폭	5%	30%	45%	15%+TRQ	75%	50%

- 하빈슨 초안에 제시된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SP)이 배제된 것은 관세 감축의 일반 원칙에서 개도국만의 배타적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EU도 관세감축에서 융통성을 반영한 UR 방식을 적용하고 개도국 SSM에다 추가로 혜택을 주는 특별 품목에 소극적인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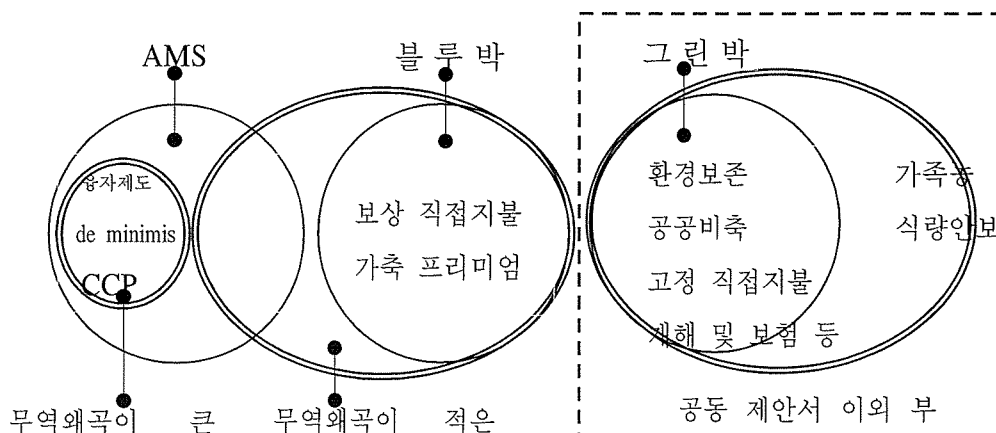
- 종합하면, 공동 제안서는 관세 상한의 도입과 특별품목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만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고율관세의 민감 품목을 가진 수입국이나 특별품목을 주장해 온 개도국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안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의 처지에서는 하빈슨 초안보다도 더 큰 폭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리한 안이라고 판단됨.

□ 국내보조

-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EU와 미국의 공동 제안서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 틀 안에서라면 두 나라는 커다란 추가 부담 없이 국내보조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블루박스의 개념을 완화된 형태로 다시 정의함으로써 양국이 국내보조 감축부담을 덜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 공동 제안서는 기존의 AMS와 블루박스를 무역 왜곡이 큰 보조와 무역 왜곡이 덜한 보조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전자는 그 규모를 감축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조 감축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음<그림 2-2>.
 - EU의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 미국의 용자제도와 최소 허용보조(de minimis) 등으로 구성된 AMS는 감축함.
 - EU의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 프리미엄으로 구성된 기존의 블루박스의 대상에 AMS인 미국의 가격보조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VAP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보조 규모를 확보함.

그림 2-2. 공동 제안서의 구도



- 무역 왜곡이 큰 보조 또는 감축대상 보조(AMS)에 대해서는 AMS 감축 폭을 범위로 제시하면서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더 큰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⁶
- 미국은 이전에 자국의 제안서에서 총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AMS를 포함한 무역왜곡 보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AMS 수준의 높낮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음.

$$\textcircled{1} \quad \frac{AMS}{VAP},$$

- AMS는 감축대상 보조이고, VAP는 총 농업생산액임.
- $\textcircled{1}$ 에 따라 미국, EU, 우리나라의 수치를 산출하면 <표 2-20>와 같음.
- 3개국 가운데 EU의 AMS 비중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AMS 감축 규모가 가장 커야 할 것임.

표 2-20. EU, 미국,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EU(억 €)	미국(억 달러)	우리나라(억 원)
㉠ 총 농업생산액 (2002년 기준)	2,472	2,009	321,160
㉡ AMS 한도 ¹	672	191	14,900
㉡/㉠	27.2%	9.5%	4.6%

주: 1. EU와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준이고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임.
 자료: WTO(<http://www.wto.org>), OECD(<http://www.oecd.org>)

6 또는 가장 무역왜곡 효과가 큰 보조(most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 EU는 자국의 제안서에서 AMS 감축률 55%를 제시했으나, 2003년 7월 말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하빈슨 초안대로 감축률 60%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힘.
- 이에 따라 EU와 미국의 공동 제안서에서 제시한 AMS 감축 범위의 상한은 60%로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자국에 대해 60%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률 적용을 주장할 것임.
- AMS 감축 기준으로 식 ①이 채택되고 감축률 상한이 60% 선에서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AMS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60%보다 낮은 감축률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공동 제안서는 국내보조 분야에서 SDT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제안서의 내용이 하빈슨 초안의 경우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⁷
- 무역 왜곡이 덜한 보조 또는 약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대해 공동 제안서는 농업협정 제6조 5항의 3가지 직접지불을 무역왜곡 효과가 덜한 보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조항과 달리 ‘생산제한정책(production-limiting programs)’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⁸
- 생산제한정책이 없다는 것은 농업협정 제6조 5항에 명시된 3가지 직접지불에 강제적인 휴경의무가 부가되지 않은 것을 뜻함.
 - 블루박스의 재정의로 관련 직접지불의 신축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하빈슨 초안은 개도국에 대해 AMS 40%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8 Inside US Trade(2003), "US-EU Farm Framework Creates New 'Blue Box' Flexibility for US". August 15, 2003.

- 다시 정의된 블루박스의 상한을 총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하면 EU의 상한은 124억 €이 되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각각 100억 달러와 1조 6058억 원의 보조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됨<표 2-21>.
- EU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블루박스 조치의 상당 부분을 그린박스 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VAP의 5% 상한 안에서 블루박스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00~02년에 연평균 블루박스 규모는 214억 €으로 시산되는데, 이 규모는 2003년 CAP 개혁의 영향으로 67억 €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⁹
 - 이에 따라 EU의 블루박스는 하빈슨 초안의 50% 감축(102억 €)이나 VAP 5% 기준에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시 정의된 블루박스 개념에 따라 현재 EU가 블루박스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경 의무제를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농업생산 증대로 추가적인 정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고정된 예산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표 2-21. EU, 미국, 우리나라의 총 농업생산액 대비 AMS 규모

	EU(억 €)	미국(억 달러)	우리나라(억 원)
총 농업생산액 (VAP, 2002년)	2,472	2,009	321,160
블루박스 상한 제안 (VAP×5%)	124	100	16,058
블루박스 이행실적 (1999/2000년)	198	-	-

자료: WTO(<http://www.wto.org>), OECD(<http://www.oecd.org>), USDA(<http://www.ers.usda.gov>)

9 임송수(2003),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KREI 농정연구속보 2003-2(제2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새로운 기준으로 미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MS 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격보조 직접지불을 ‘무역 왜곡이 덜한 보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책 신축성을 가질 수 있음.¹⁰
- 지금까지 CCP는 현재 시장가격과 연동된 가격보조로 AMS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돼 왔음<식 ②>.

$$\textcircled{2} \{ \text{목표가격} - \text{고정 직접지불} - \max(\text{시장가격}, \text{윤자가격}) \} \times \text{과거 기준 면적} \times 85\% \times \text{프로그램 단수}$$

- 미국은 2007년 이후에 이 부류의 보조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함.
 - 2002년 농업법은 2007년까지 적용되는 반면에 새로운 DDA 농업협정은 200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협정이 미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 우리나라도 새로 정의된 블루박스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AMS 감축에 대응해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VAP 5% 상한에 의한 1조 6058억 원은 2004년 AMS 한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박스 조치 도입의 충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빈슨 초안은 1999~2001년 블루박스 이행실적을 상한으로 그 규모를 감축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이행실적이 없는 회원국은 사

¹⁰ 미국은 1996년 농업법(farm bill)에서 부족불 지불(deficiency payment)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블루박스 조치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실상 블루박스 조치를 도입할 수 없게 되는데, 공동 제안서는 과거 실적과 상관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공동 제안서는 그린박스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EU와 미국의 개별 제안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EU는 지리적 표시제, 동물복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을 그린박스 틀 안에 확충할 것을 제안한 반면에 미국은 국내 식량지원, 연구, 지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등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제안함.
- 하빈슨 초안은 지금의 그린박스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보조 지급요건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인정하고 있음.
- 공동 제안서가 그린박스 조치의 현행 유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 허용하는 신축성 측면에서 하빈슨 초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그린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확충하는 것을 협상의 주된 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나, EU와 미국은 NTC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

1.3. 카스티요 초안

1.3.1. 배경

-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끄는 일반 이사회(GC) 카스티요(Castillo) 의장은 2003년 8월 25일 농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리티 기본골격안을 제시.
- 카스티요 초안은 2003년 8월 13일에 배포된 미국-EU 공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작성됨.
- 이 안에 기초하여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데르베WM 초안이 작성, 배포됨.

1.3.2.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선진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나눠 관세를 감축함.
 - (i) 농산물 전체의 []%에 대해 평균 []%, 최소 []% 감축하되, 관세감축과 TRQ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함.
 - (ii) 농산물 전체의 []%에 대해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iii) 나머지 농산물은 무관세를 적용함.
- 선진국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을 설정해 관세가 최고 []%를 넘는 품목은 ① 이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② R/O방식을 통해 해당품목 또는 다른 품목의 TRQ 증량 등 추가 시장접근 확대를 보장하도록 함.

- 개도국에 대해서도 그룹별 관세 감축방식을 채택함.
 - (i) 농산물 전체의 []%에 대해 평균 []%, 최소 []% 감축하되, 관세 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특별 품목은 최소 []%의 선형 감축방식을 적용하고 TRQ 증량을 면제함.
 - (ii) 농산물 전체의 []%에 대해 평균 []%, 최소 []% 감축, 또는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iii)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평균 []%, 최소 []% 감축 또는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개도국 우대조치로서 감축 폭 및 이행기간에 우대를 적용하고, 관세 상한은 나중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 선진국은 개도국 농산물의 []%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함.

□ 국내보조

- AMS는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감축함.
- 블루박스 또는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년까지 2000~02년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년 동안 매년 []% 감축함.
- 최소 허용보조는 []% 감축함.
- AMS, 블루박스, 최소 허용보조 등 감축보조 총액은 2000년 수준보다 현저히 작도록 감축함.
- 허용보조는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함.
- 개도국에는 농촌개발, 식량안보, 생계보장 등과 관련해 우대조치를 적용하며, 국내보조 감축률과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하고 최소 허용보조 감축의 의무를 면제함.

□ 수출경쟁

-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에 모든 조치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를 적용함.
- 개도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는 []년에 걸쳐 철폐하고, 기타 품목은 철폐를 전제로 감축함.
- 개도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인 수출 신용은 []년에 걸쳐 철폐하고, 기타 품목은 철폐를 전제로 감축함.
 - 무역왜곡적 수출신용의 기준은 상환기간 []개월 이상으로 함.
- 식량원조는 상업적인 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수출 국영무역에 의한 수출보조 요소는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 의무를 적용함.
- 수출제한과 금지는 농업협정 12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 개도국의 경우 긴 이행기간, 개도국 수출보조 우대조치(9.4조) 유지, 최빈개도국(LDC)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한 신속적인 수출신용 규율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함.

1.3.3. 평가와 시사점

- 카스티요 초안은 칸쿤 각료회의의 논의 기초로 제시된 것이고, 칸쿤 각료초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 평가와 시사점은 생략함.

1.4. 칸쿤 각료회의와 각료 초안(데르베즈 초안)

1.4.1. 배경

- 2003년 9월 10일에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도하라운드의 중간 점검의 계기를 삼음.
- 싱가포르의 여(Yeo) 무역장관은 농업분야 협상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논의 결과에 기초한 초안을 9월 12일에 제시함.
- 농업분야 초안은 다른 도하라운드 패키지와 함께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됐는데, 의장이었던 멕시코 무역장관 데르베즈의 이름으로 배포되면서 데르베즈 초안 또는 각료 초안으로 불림.
 - 싱가포르 이슈로 인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농업 의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1.4.2. 각료 초안의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카스티요 초안과 같음)하나, 평균 감축율의 하한을 설정해 추가로 제약함<표 2-22>.
 - 제1그룹: 평균 []%, 최소 []%의 UR 방식을 적용하되, 관세 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보장함.
 - 제2그룹: 계수 []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함.
 - 제3그룹: 무관세를 적용함.

표 2-22. 각료초안의 주요 내용: 관세감축

선진국	개도국
<p>·(i), (ii), (iii) 카스티요 초안과 동일. ·[전체 품목의 평균 감축률은 적어도 []% 이상이어야 함]</p> <p>관세가 최고 []%를 넘는 품목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수준까지 감축하거나, ② R/O방식을 통해 해당품목 또는 다른 품목의 TRQ 증량 등 추가 시장접근 확대를 보장하며, ③ [NTC를 고려해 아주 제한된 []개 품목에 대해 추가 융통성을 부여해 감축 공식 (i), (ii), (iii)만 적용] 	<p>(i) 카스티요 초안과 같음. ·특별품목(SP): 카스티요 초안과 동일 ·현행 양허관세가 []% 이하인 경우 관세 감축 의무를 면제</p> <p>(ii) 농산물 전체의 []%에 대해 []를 계수로 한 스위스 공식을 적용,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p> <p>(iii) 나머지 농산물은 0~5%로 양허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p> <p>관세 상한은 나중 협상에서 결정</p>

자료: WTO

- 선진국에 관세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NTC 등을 근거로 매우 제한된 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의 적용 배제 가능성을 []으로 제시함.
- 개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
 - 제1그룹: 평균 []%, 최소 []%의 UR 방식을 적용하되, 관세 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보장함.
 - 제2그룹: 계수 []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함.
 - 제3그룹: 저세율인 0~5%로 감축하되, 추가 이행기간을 허용함.
- 개도국에 특별품목을 인정해 평균 []%, 최소 []%로 감축하고, 저세율인 경우에는 감축 면제 가능.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TRQ 증량 면제.

- 개도국의 관세 상한 문제는 나중 협상을 통해 다룸.
- TRQ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감축하고 그 증량이나 신설 가능성을 제시
- SSG의 존속기간과 적용방법 및 개도국의 SSM 등은 나중 협상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 국내보조

- AMS는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 범위에서 감축함.
 -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의 경우 그 규모가 클수록 더 감축하자는 것으로 미국이 제안했던 조화(harmonization)의 개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무역왜곡 보조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년 동안의 품목별 평균 AMS 수준을 상한으로 도입함.
 - 이는 기준 기간에 AMS 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 새롭게 보조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이는 지금까지 주로 수출국들이 주장해온 내용으로 하빈슨 초안에 포함됐으나 미국-EU 공동 제안서부터 빠졌다가, 개도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각료 초안에 포함됨.
- 최소 허용보조는 []% 감축함.
 - 그 근본 취지와 달리 일부 선진국들이 최소 허용보조의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보조를 운용함으로써 무역 왜곡의 정도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 미국-EU 공동 제안서가 생산제한의 요건 없이 다시 정의한 블루박스가 제시됐고, 이를 []년까지 2000~'02년 총 농업생산액의 5%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회원국 사이의 보조 규모 형평성 곧 조화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제시는 199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이후에도 블루박스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EU와 최소 허용보조(품목 특정 및 불특정)의 감축에 대응한 보조 규모 확보가 과제인 미국의 이해가 부합된 결과임.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이행기간 이후 []년에 걸쳐 해마다 []% 감축.
 - 이행기간 이후의 감축 방식을 제시한 것은 블루박스가 전환기 특성의 조치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온 케언즈 그룹의 뜻과, 선진국의 높은 보조 수준에 불만을 나타내는 많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허용보조는 본래 그 정신에 맞도록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허용보조의 기준을 재점검함.
 - 이는 허용보조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 모호한 기준에 대한 명료화 등을 요구했던 케언즈 그룹과 일부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빈슨 초안에 제시됐던 다양한 NTC가 여기서 말하는 기준 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 곧 AMS 양허수준과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및 최소 허용보조의 총 규모(2000년 기준)를 []% 감축하되, 첫해에 []% 감축하는 방식(downpayment)을 제안함.
 - 보조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EU 공동 제안서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며, 첫해에 어느 정도 크게 감축하는 방식은 케언즈 그룹 등이 주장해오던 것임.
 - 개도국은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에서 면제함.
 - 이로써 지금까지 품목별 생산액의 10% 또는 총 농업 생산액의 10%를 품목 불특정 보조로 지탱할 수 있음.

- 농촌 개발, 생계 보장, 식량 안보 등의 필요를 감안해 개도국에 대한 보조의 감축 폭과 의무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 조치함.
 - 감축 폭의 완화와 이행기간 확대는 GATT와 WTO 체제가 인정하는 전통적인 개도국 우대 방식임.
 - 이에 따라 개도국은 개도국 우대 조항(농업협정 6조 2항)과 허용보조의 확충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개발박스(Development Box)의 설정은 같은 무역체제 아래 상이한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란 우려 가운데 주로 선진국들이 반대해 왔으며, 결국 각료 초안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 사항

- 평화 조항(peace clause)을 연장.

1.4.3. 평가와 시사점

□ 시장접근

- 관세상한 설정에서 일부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나, 2그룹과 3그룹 품목의 감축방식에서 UR 방식이 배제된 것은 부정적임.
 - 개도국의 공식에서 (ii)와 (iii) 그룹에 스위스 공식과 0~5%로 양허하는 단일안을 제시한 점, 전체 평균 감축률의 하한을 설정해 이중의 부담을 부과한 점, 그리고 쿼터내 관세 감축의무를 추가한 점 등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요소들임.
- 관세상한의 적용이 선진국의 경우 NTC, 개도국의 경우 특별 품목의 명목으로 면제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특별 품목을 활용해 TRQ 증량 없이 최소 관세감축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임.

- 개도국 일반 품목은 선진국과 비슷한 관세 감축공식에 구속되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EU가 카스티요 초안 배포 이후 계속 주장해 온 사항임.
- 스위스 공식과 무세화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 폭이 클 것을 시사함. 다만 낮은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의 개도국 우대조치와 추가 이행기간이 허용된 것은 관세 감축 폭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임.
- 일반 품목에 적용되는 스위스 공식의 계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선진국의 제2그룹 품목의 관세감축에 계수 25인 스위스 공식 적용과 5년의 이행기간이 적용될 경우, 개도국에는 우대차원에서 이보다 더 긴 이행기간과 다른 계수가 적용될 수 있고(예: 계수 50, 이행기간 10년), 추가로 2~3년의 이행기간 연장도 생각할 수 있음.
- 인도는 UR 방식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위스 공식의 최종 선택은 불확실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관세구조 측면에서 민감 품목의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많은 주요 품목을 1그룹에 포함시켜 UR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표 2-23>.
-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민감품목은 1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
 - 1그룹에 포함될 경우 TRQ 증량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나머지 그룹에는 TRQ 증량 의무가 없음.

표 2-23. 관세구간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주요품목, 생산액

관세구간(%) ¹⁾	품목수(개)	평균 관세율 (%)	주요 품목	생산액 ²⁾ (10억원)
0세율	29	0.0	종자류	
1-10	186	5.8	종자,원피 등	
10-15	139	13.1	동물, 나무	
15-20	256	18.7	닭고기	817
20-30	286	26.5	돼지고기, 계란	2,584
30-40	104	35.1	쇠고기	1,786
40-50	122	44.7	과일류, 버섯, 채소	2,526
50-60	124	53.8	과일주스	
60-70	20	65.1	육류통조림	
70-120	47	82.4	바나나, 감, 동물의 설육	
120-150	7	138.9	양과, 감귤	881
150-250	24	206.9	낙농품, 천연꿀, 밤, 땅콩	1,517
250-350	24	287.2	보리, 옥수수, 감자, 고추	1,634
350-450	18	381.5	마늘, 고구마	749
450-600	13	521.3	대두, 녹차, 잣, 감자전분	295
600-700	7	618.3	참깨, 녹두, 대추	252
700-800	16	755.9	인삼류	380
800이상	14	831.4	매니옥, 곡물전분	
계 ³⁾	1,436	63.2		

주 : 1) 하한치는 초과하되 상한치는 포함됨(예: 10-15는 10% 초과 15% 이하).

2) 생산액은 1999~2001년 평균 생산액이며, 주요 품목만 포함함., 3) 쌀은 제외함.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2』.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표 2-24. 관세감축 및 TRQ 증량 사례

2004년 양허관세	2015년 시장개방 수준	개도국 ¹⁾		선진국 ²⁾	
		10% 감축	S-50	15% 감축	S-25
20%	관세	18.0%	15.2(14.3)%	17.0%	11.1%
	T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45%	관세	40.5%	27.2(23.7)%	38.3%	16.1%
	T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270%	관세	243%	80.2(42.2)%	229.5%	22.9%
	T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360%	관세	324%	96.6(43.9)%	306%	23.4%
	TRQ	증량 (5%)	미증량	증량 (8%)	미증량

주: 1) 개도국 이행기간은 10년, 스위스 공식 적용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은 2년으로 가정함.

2) 선진국의 이행기간은 5년으로 가정함.

- 하빈슨 초안과 비슷하게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개방 의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함.
- 기타 1그룹에 포함되어 최소 감축을 하는 품목은 TRQ 증량 등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관세감축 대신 TRQ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평균 감축률의 하한 설정과 부분적으로 모순됨.
- <표 2-25>는 주요국의 관세구조 및 분포 현황을 나타냄.

표 2-25. 주요국의 관세 구조 및 분포 현황

회원국	종량세	복합세	품목수	주요 품목
EU	476개 (27.0%)	250개 (14.2%)	55개 (3.3%)	쇠고기/면양고기/듀럼밀(100~150%), 분유/기타 과일주스(150~200%), 치즈(200~250%), 버터밀크/유장(250~350%)
미국	617개 (35.9%)	120 (7.0%)	26개 (1.5%)	설탕(100~150%), 버터/유장/땅콩(150~200%), 담배(250~300%)
일본	162개 (12.4%)	57개 (4.4%)	168개 (12.9%)	200%이상 91개 (7.0%), 300%이상 81개(6.2%), 400%이상 48개(3.7%), 500%이상 35개 (2.7%): 쌀, 땅콩, 완두, 전분류, 설탕 등
캐나다	225개 (17.3%)	40 (3.1%)	- (8.3%)	
인도	-	-	- (84%)	300%가 26개, 150%가 223개, 100%가 313개
인도네시아	-	-	-	210% 수준(12개 품목: 분유류)이며, 그 다음으로 쌀이 160%(8개: 쌀), 150%(일부 포도주, 쌀 가공품, 위스키류 등 35개)
중국	-	-	-	35%(16개: 기타 포도주)이며, 그 외 122%(2개: 대두유), 117%(2개: 기타 포도주), 114%(10개: 기타 곡분), 100% (7개: 유채유, 등)
파키스탄	-	-	600 여 개	최고관세는 200%(1개: 잣), 150%(13개: 홍차류) 등
이스라엘	-	-	320개	560% 1개(대추야자), 553% 1개(신선사과), 438% 1개(신선 배), 349% 1개(신선 포도), 344 1개(버섯) 340% 2개(건포도), 315% 1개(마늘), 200-300%이상 23개(신선 토마토, 냉동채소, 과일주스 등), 100-200% (쇠고기, 쇠고기조제품, 분유류 287개)

□ 국내보조

- 국내보조 측면에서 볼 때 칸쿤 회의가 결렬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진국의 보조 감축에 관한 양허 수준이 개도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서부 아프리카 4개국(Burkina Faso, Benin, Chad, Mali)이 제기한 면화에 대한 보조 감축 주장, 곧 부문별 발의(sectoral initiative)가 카스티요 초안을 통해 칸쿤 의제에 포함됐으나, 이에 미온적이던 미국의 뜻에 가깝게 각료 초안이 만들어져 아프리카 회원국과 다른 개도국의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함(IGTN 2003).
 - 미국의 면화 보조 수준은 연간 30억 달러, EU의 경우 7억 달러 등이고 중국의 면화 보조 수준도 높음(WSJ 2003; FT 2003).
 - EU는 면화 보조의 감축 의사를 밝힌 반면에 미국은 면화 보조 문제가 도하 각료 의제가 아니라는 점과 농업협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 또한 면화 보조를 양보할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도전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양허의 뜻을 밝히지 않음.
 - 미국의 입장에 치우쳐 ‘면화가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경우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각료 초안에 대해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자국의 면화 생산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함.
 - 서부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ACP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2005년 이후 3년 안에 모든 수출보조 철폐와 4년 안에 생산보조 철폐, 그 동안 보조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아프리카 회원국에 연간 3억 달러 보상 등의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함.
 - 이에 따라 칸쿤 회의가 일부 회원국의 관찰대로 수사적인(rhetoric) 표현이 주도하면서 협상 정신이 결여됐고, WTO가 아니라 마치 UN 회의처럼 논의가 이뤄짐.

- 각료 초안의 내용은 8월 13일에 이뤄진 미국-EU 공동 제안서와 이에 대응해 8월 20일에 제시된 G20의 제안서 가운데 전자에 가깝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 상한과 평화조항(peace clause)의 연장이 제시됨.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2000~02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의 5%를 넘지 않도록 제시됨.

- G20은 각료 초안이 충분한 개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함.
 - 품목 특정한 AMS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대한 상한을 농업 총생산액의 2.5%로 설정.
 - 그린박스에 속하는 직접지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
 - 평화조항은 연장하지 않음.

- EU는 각료 초안에 대해 일부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지적함(Inside US Trade 2003).
 - 감축대상 보조(AMS)에 대해 품목별 상한을 설정한다면 2004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10개국의 정책 대상 품목(예: 설탕)을 포함시키기 어렵게 되며, 아직 보조 체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담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블루박스의 경우 농업 생산액의 5%로 상한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선형방식의 감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최근 CAP 개혁으로 창출된 보조를 감축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어려울 것임.
 - 그린박스의 보조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는 안에 대해 EU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그린박스 보조의 상한을 설정하자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함.

- 미국은 각료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모여 관련 의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그린 룸(green room)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각료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MS를 감축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더 많이 감축함.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는 인정하되, 총 농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그 상한을 설정함.
 - 그린박스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 AMS의 감축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이지만, 감축률 55%를 제안했던 EU가 2003년 7월에 열린 캐나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60%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품목 특정 AMS에 대해 기준 기간의 평균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은 품목별로 다양한 가격보조 조치를 시행해 온 미국과 EU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AMS에 속하는 용자제도(LR, LDP)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EU는 가격보조인 개입가격의 수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농정개혁을 추진중
 - EU에서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는 가격보조가 아닌 직접지불(블루박스 또는 그린박스) 수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AMS의 대부분을 쌀에 집중해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품목(예: 시장개방 확대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양념 채소류)에 대한 AMS 형태의 보조 도입이 어렵게 될 것임.

-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수준은 2000~02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의 5%로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이행이 쉬운 반면에 EU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은 현재 블루박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 허용보조가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안이 이뤄진 상태이므로 품목 불특정 보조를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포함시키려 할 것임.¹¹
 - 1999년 기준으로 총 농업 생산액 대비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수준은 미국이 4%(CCP를 이 부류에 포함시켰을 경우), 일본 1%, 캐나다 3%, EU 9%, 우리나라 1% 등임<표 2-26>.¹²

표 2-26. 주요국의 국내보조와 총 농업 생산액 수준(1999년 기준)

	단위	현행 총 AMS	최소 허용보조		블루박스	총국내 보조	농업생산액
			품목특정	품목불특정			
미국	백만달러	16,862	29	7,406	0	24,297	184,735
일본	10억 엔	748	10	22	93	873	9,418
캐나다	백만 C\$	939	169	933	0	2,041	28,630
EU	백만유로	47,886	17	291	19,792	67,986	233,700
우리나라	10억 원	1,691	112	413	0	2,215	33,001

주: WTO에 통보된 가장 최근의 공통 자료가 1999년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함.

자료: WTO<<http://www.wto.org>>

11 미국 농무부 관계자는 경기순환에 대응한 손실보조(counter-cyclical payment: CCP)가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2003년 9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만약 미국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면, 블루박스를 새롭게 정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불명확해짐.

12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로 재분류할 수 있는 농정 조치는 없음.

- EU는 2003년 공동 농업정책(CAP) 개혁안을 통해 블루박스 직접지불을 그린박스 직접지불로 전환하는 조치를 채택했는데, 이로써 블루박스 규모는 2000~2008년에 74% 포인트(EC 2003), 또는 2000~2002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69% 포인트 감축(임송수 2003b)될 것으로 전망됨.
 - EU의 CAP 개혁 결과를 감안할 경우, 1999년 총 농업 생산액 대비 블루박스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게 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EU는 설탕, 올리브기름, 담배, 면화 부문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Agra Europe 2003), 이를 통해 생산쿼터 감축이나 폐지, 가격보조 수준 인하 등을 단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블루박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쇄를 시도할 경우에 블루박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음.
- AMS와 최소 허용보조 및 완화된 형태의 블루박스 합을 2000년 수준에서 감축하자는 제안은 AMS 양허 수준이 아니라 사용한 실적에 근거한 것인 만큼 미국과 EU의 농정에 구속력을 나타낼 것임.
- 2000년 미국이 지급한 해당 보조의 합계는 234억 달러로 추정됨(임송수 2003a).
 - EU는 1999년 통보 기준으로 682억 유로이고, 일본은 8,731억 엔임.
 - 우리나라의 보조 합은 2000년 통보 기준으로 2조 2,154억 원임.
 - 앞으로 세계 농산물 가격이 증가해 미국과 EU의 가격보조수준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보조합의 감축 제안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 그린박스 기준에 대한 재검토 제안은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지만 근본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임.
- 미국과 EU 모두 지금의 그린박스 유지에 찬성하고 있음.

- 다만 직접지불이 본디 그 뜻에 맞게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또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하빈슨 초안에서 제시됐듯이, 해당 조항의 일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요건이 수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문제는 이와 관련해 지리적 표시제(GI)와 기타 비교역적 기능(NTC)을 주장하는 EU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임.¹³
- 평화조항이 연장되도록 제안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조 수준이 높은 미국과 EU이 개도국의 WTO 제소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피성임.
- 농업협정 13조에 따르면 평화조항은 2004년 1월 1일에 끝남.
 - 칸쿤 각료회의가 무산되자, 미국과 EU의 일부 관계자들은 평화조항의 만료가 보조 이행 결과를 WTO 통보한 시점부터 9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이 2004년 중반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함(Inside US Trade 2003b).
 - 평화조항이 만료되면 개도국들은 WTO 보조 상계조치 협정의 6조 3~4항에 근거해 미국과 EU의 품목 특정한 보조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 이런 압력 수단을 통해 선진국들로 하여금 비연계 직접지불 중심으로 농정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임(Steinberg and Josling 2003).
 - 실제로 브라질 등은 평화조항이 종료되면 선진국들의 높은 수준의 농업 보조에 대해 WTO 정식 제소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Inside US Trade 2003b).
- 협상 영역 가운데 어느 정도 수렴된 내용은 큰 폭의 AMS 감축, 감축률 완화와 이행기간 연장 등의 개도국 특별 우대조치(SDT), 개도국의 경우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면제 등임.

¹³ 미국과 많은 개도국들은 EU의 GI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음.

-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의제는 그린박스 관련 내용임.
 - 그린박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EU는 그린박스 직접지불의 규모가 크더라도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적다는 이론을 강조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그린박스 규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¹⁴
 - 그린박스 규모에 대한 상한 설정이나 규범 강화는 미국과 EU가 추구하는 국내 농정개혁 방향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협 여지가 적다고 판단됨.

- 농업협상에서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NTC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만큼 기존 회원국 사이의 공조체제를 활용하면서 협상에 대응함.

1.5. G20 제안서

- 칸쿤 각료회의에서 데르베즈 초안이 배포되자,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이 이끄는 G20은 각료 초안에다 개도국의 입장을 담아 수정한 제안서를 만들어 배포함.

1.5.1.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선진국의 관세 감축공식에서 1그룹에 대해 평균 및 최소 감축률을 삭제하고 그냥 감축(cut)으로 명시했으며, 관세 감축과 TRQ 설정이나 증량의 조합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을 명확히 함.

14 2003년 9월 17일에 미국 농무부(ERS)가 주최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개도국들이 그린박스 직접지불도 일반 보조와 같이 무역이나 생산을 왜곡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학자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선진국이 NTC 명분으로 관세 상한의 설정에서 면제 받을 수도 있게 한 대안은 삭제됨.
-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TRQ가 []% 확대되는 것으로 명시됨.
- SSG 철폐의 조건과 시기는 나중 협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됨.
- 개도국의 관세 감축공식에서 1그룹에 속한 품목의 관세 감축과 TRQ의 조화에 시장접근 개선 요건은 삭제됨.
 - 2그룹과 3그룹 모두 평균 및 최소 감축률에 따른 UR 방식으로 제시됨.
-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음.

□ 국내보조

- []년 동안 평균수준을 기준으로 품목특정 AMS 상한을 도입함.
 - 세계 수출의 []%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특정 AMS 대상품목의 경우 추가 규범을 마련함.
- 블루박스는 []년까지 2000~02년 농업총생산액의 2.5% 이하로 지급 가능하며 이후 철폐를 목적으로 []년간 매년 []%로 큰 폭으로 감축함.
- 감축보조 총액은 2000년 수준에서 최소 []% 감축하되, 이행 첫해에는 최소 []%로 큰 폭으로 감축함.
- 허용보조는 직접지불에 대한 허용 보조의 규범을 강화함.
-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음.

□ 수출경쟁

- 개도국의 관심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철폐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 감축할 것으로 명시함.
- 수출신용뿐만 아니라 수출신용 보험과 수출 보증제도 등도 규율하도록 제시함.
- 수출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협상에서도 개도국이 더 큰 신축성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임을 밝힘.
- 나머지 사항은 각료 초안의 내용과 같음.

□ 기타 사항

- 평화조항의 연장 제안은 삭제됨.

1.5.2. 평가와 시사점

- G20의 제안서는 일편 미국과 EU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각료 초안에 대응하기 위한 개도국의 입장으로 여길 수 있으나, 협상을 위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돼 여기에서 평가와 시사점 도출은 생략함.

1.6. 기본골격의 타결 및 주요 내용

1.6.1. 기본골격의 협상 경과

- 2003년 9월에 열린 칸쿤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고 막다른 골에 빠지자, WTO 회원국들은 협상을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 시도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협상이 집약되게 이뤄짐.
 - 이 과정에서 특히 14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회의보다는 이견을 가진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 사이에 양자 형태의 협상으로 논의가 추진됨.
- WTO는 2004년 7월 30일(금)을 기본골격 합의의 정치적인 기한으로 설정하고 집약적인 협상을 전개함.
 - 이는 10월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임원의 교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요인으로 7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불가능할 것 이란 판단 때문임.
- 8월 1일에 기본골격이 정식 채택되기까지 7월 말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됐던 주요 협상 경과를 요일별로 정리하면 <표 2-27>과 같음.

표 2-27. 기본골격 협상에 관한 주요 경과

날짜(7월)	회 의	주요 내용
8월 1일	GC 회의	기본골격을 정식 채택함.
7월 31일	Green Room 회의	밤샘 논의를 통해 오전에 합의에 이뤘고, 합의문안 점검 회의를 거침.
	HOD 회의	합의문을 배포하고 토론함.
7월 30일	오전 7시에 수정안 배포	면화에 관한 각료회의로 계획됐던 28일보다 지연
	HOD 회의	회원국들은 수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됐으며, 협상이 칸쿤 때와 다르다는 점 등이 지적됨.
	Green Room 회의	20개국이 수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하기 시작함.
7월 29일	FIPs 합의 도출	28~29일 밤샘 논의를 거쳐 FIPs 각료들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케언즈 그룹과 G20에 설명
	HOD 회의	Groser 의장은 수출신용, 민감 및 특별 품목 등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얻었다고 밝힘.
7월 28일	HOD 회의	Groser 의장은 29일에 GC 의장에게 수정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G10은 FIPs 중심의 폐쇄적 협상에 문제를 제기함.
7월 27일	GC 회의	Oshima GC 의장은 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리비아의 가입절차 승인 등의 의제를 다룸.
7월 23일	HOD 회의	WTO는 28일에 수정안 제시될 예정이며, 채택 기한은 30일이라고 밝힘.
7월 19~20일	HOD 회의	초안에 관한 논의에서 수입국은 관세 상한, TR Q 증량 등의 어려움과 개도국은 선진국을 위한 보호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함.
7월 16일	WTO	WTO는 기본골격 초안을 배포함.

자료: WTO(www.wto.org)

1.6.2.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시장접근

-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함.
-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되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인정함.
 -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나중에 협상함.
- 관세 상한(tariff ceiling)을 설정하는 것은 추후 평가함.
- 민감 품목은 적절한 수(an appropriate number)를 대상품목으로 회원국이 선정해 제시하되 실제 품목별(each product)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편차(deviations)를 고려해 나중에 협상에서 결정될 기준과 규칙에 따름.
- 지금의 TRQ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는 감축 또는 철폐함.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관세 단일화(tariff simplification), 특별 긴급수입 제한 조치(SSG) 등은 나중에 협상함.
- 개도국은 관세 감축 방식, 낮은 관세 감축률 적용, 민감 품목의 수와 취급, TRQ 증량, 이행기간 측면에서 우대함.
 - 특히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선정기준과 우대 정도는 나중에 협상을 통해 구체화함.
 - 개도국의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긴급수입조치(SSM)가 설정 및 적용.

□ 국내보조

- 보조수준에 따라 다른 감축공식(tiered formula)을 적용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감축대상 보조(AMS), 최소 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 등의 총액을 총 무역왜곡 보조(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로 규정하고 이를 구간공식에 따라 감축함.
 - 무역왜곡 보조 총계는 이행 첫해와 이행기간 동안에 8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함.
- AMS는 구간별 감축공식을 적용해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
 - AMS에 대한 품목별 상한은 과거를 기준으로 설정함.
-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해 나중에 협상하되, 대부분의 보조를 생계농이나 자원 빈곤농을 위한 지지에 배분하는 개도국의 경우에 감축을 면제함.
- 블루박스(blue box)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시행할 수 있음.
 - ① 생산 제한아래 직접지불
 - 지불이 고정되고 변치 않는(fixed and unchanging)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 또는
 - 지불이 고정되고 변치 않는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기초할 것, 또는
 - 고정되고 변치 않는 사육두수에 대한 지불일 것

- ② 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
- 지불이 고정되고 변치 않는(fixed and unchanging) 기준(base)과 단수에 기초할 것, 또는
 - 지불이 고정되고 변치 않는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기초할 것, 또는
 - 고정되고 변치 않는 사육두수에 대한 지불일 것
- 블루박스의 지급 한도는 과거 총 농업 생산액의 5%임.
- 이 조치를 사용한 회원국뿐만 아니라 보조 실적이 없는 회원국도 앞으로 블루박스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조치의 추가 기준은 나중 협상에서 결정함.
- 허용보조(green box)는 본래 뜻대로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적도록 그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명확히 하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함.
- 허용보조의 이행 점검과 감독 체제를 보완함.

□ 수출경쟁

- 다음과 같은 수출보조 요소들을 합의된 시점까지 철폐.
-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 최소이자율, 위험 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 등이며, 180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은 나중에 합의함.
 -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 국영무역기관(STEs)의 무역 왜곡 관행
 - 잉여 농산물의 처분 등 앞으로 마련될 규율에 맞지 않는 식량원조

- 개도국에는 긴 이행기간을 허용하고,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제9.4조)는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를 철폐한 이후라도 어느 정도 유지.
 - 국내 소비자가격의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적 지위 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함.

□ 기타 사항

-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함.
- 감시와 감독 조항(농업협정 제18조)은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함.
- 분야별 자유화(sectorial initiatives), 수출세, 지리적 표시제(GIs) 등은 관심사항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수출금지 및 제한(농업협정 12.1조)에 관한 규율은 강화함.

2. 기본골격의 평가와 시사점

2.1. 총괄

2.1.1. 의의

- 2004년 8월 1일에 타결된 기본골격(framework)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WTO 2004).
 - 2003년 9월에 열렸던 제5차 WTO 칸쿤(Cancun) 각료회의의 결렬로 높아졌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 구도, WTO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불신, 협상일정 지연 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골격은 수출보조의 철폐, 높은 관세와 보조를 더 많이 깎는 방식에 의한 시장접근 개선과 국내보조 감축 등을 담고 있으며, 아프리카 회원국의 관심사항인 면화(cotton) 문제를 다루고 있음.¹⁵
- 농업에 관한 7쪽의 내용은 Doha 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나, 개혁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이번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목표로 모델리티 협상이 이뤄질 것임.
- 기본골격은 더욱 자세한 협상, 즉 모델리티를 설정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¹⁵ 서부 아프리카 4개국(Benin, Burkina Faso, Chad, Mali)은 미국의 면화보조로 인해 자국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함.

WTO 문서(WT/GC/W/535 Annex A)는 농업부문 모델리티 설정을 위한 기본골격이란 제목이 붙임.¹⁶

- 기본골격은 i) 추구해야 할 것(예: 수출보조의 철폐), ii) 추구하지 않을 것(예: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달의 투명성), iii) 추구하는 방식(예: 구간별 공식에 따른 관세감축) 등을 서술한 것임.
- 기본골격은 법적인 규율이 아닌 정치적인 지침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보증하기 위해 미국은 수정안의 머리글에서 이 문서가 분쟁해결 절차나 기존 WTO 협정의 해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며, 최종 타결안에서 이 내용은 살아있음.¹⁷
 - 7월 31일(토)에 열린 비공식 HOD 회의에서 G10을 대표해 스위스는 합의된 기본골격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발언함.

2.1.2. 타결 요인

- 5개 주요국(FIPs)이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제네바 시간으로 7월 28일(수)에 이름으로써 협상 진전에 이바지함.¹⁸

16 원문 제목은 다음과 같음.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17 기본골격 수정안(Job(04)/96/Rev.1)에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원문은 다음과 같음. The Framework text in Annex A shall not be used in any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ll not be used for inter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18 FIPs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됐고 Non-Group 5(NG5)로도 불림. 브라질은 G20의 대표이고, 인도는 G20과 G33에 속해 있으면서 개도국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호주는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수장임. 특히 FIPs 각료회의에서 인도의 Nath 산업부 장관은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했고, 미국의 Zoellick 대표가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 품목(SP)과 de minimis에 대한 S&D 등이 성사됐음(The

- 미국 Zoellick과 EU의 Lamy 대표는 브라질 Amorim 외교부 장관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함(ICTSD 2004).¹⁹
 - FIPs는 ‘합의(agreement)’란 표현을 사용하기 꺼려했는데, 이는 협상 투명성과 관련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임.
 - 농업협상 Groser 의장의 기본골격 수정안이 예정됐던 7월 27일(화)보다 늦은 7월 30일(금) 오전에 제시된 것도 FIPs의 합의 결과를 수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 G10을 대표해 Diess 스위스 대통령은 7월 27일(화)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FIPs 중심의 논의가 회원국의 참여 및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개도국 그룹인 G33도 이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7월 31일(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린 마지막 일반 이사회(GC)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FIPs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언함.
- G90을 구성하는 아프리카 그룹은 7월 27일(화) 일반 이사회(GC) 첫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화(cotton) 문제도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협상에 탄력을 더함.
- 이때까지 아프리카그룹은 면화 문제를 농업협상과 별도의 독립된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장해 왔음.
 - 아프리카 그룹은 협상 의제로써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를 반대했던 것이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이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쿤 초안보다 개도국에 더 유리한 내용이 담긴 이번 초안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시작했음.²⁰

Financial Express 2004a, 2004b).

19 Amorim 장관은 개도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20 예를 들면, 모든 수출보조의 철폐,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만 상정 등임.

- Groser 의장은 그룹별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사이의 이견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꾀했고, 자세한 규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시장접근 분야는 원칙 및 추후 협상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 또는 미국과 EU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합의’보다 ‘거부’하기 어려운 문안을 제시함.
 - 그룹별 대표(coordinators)를 매개로 그룹 내 활동과 소규모 그룹회의(green room)를 통한 집중적인 토론은 최종 합의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협상 막바지(약 2주간)에 집약적으로 이뤄진 소규모 그룹회의는 10개국 또는 20개국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7월 30일(금) 오후 5시부터 열린 20개국 회의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협상 타결에 이바지함.²¹

- 회원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된 주요 쟁점 사항은 모델리티 협상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에 기본골격 타결이 용이했음.
 - 관세감축 공식, 관세 상한 설정, 민감 품목 및 특별 품목의 기준과 취급에 관한 자세한 규정 등은 구체성 수준(level of specificity)을 낮추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수출보조 철폐 시한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이 있음.
 - 기본골격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을 배려해 이를 감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을 높임.

-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비례(proportionality) 원칙아래 기본골격에 균형 잡히게 반영됨.²²

21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분야의 22개국 소규모 그룹회의에 참여했으나, 7월 30일 마지막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음. 이 회의에는 G10을 대표한 스위스와 일본이 참여함. 노르웨이는 블루박스에 관한 논의 시간(30분 정도)에만 참여했음.

22 비례 원칙은 선진국과 견주어 개도국의 관세감축 의무가 낮은 것을 뜻함.

- G20이 요구한 수출보조의 철폐, 혼합(blended) 대신에 구간(tiered) 방식의 관세감축 공식 채택, de minimis 감축의 신축성 등이 반영됨.²³
 - 기본골격 초안은 선진국의 민감 품목 기준과 취급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이 사용할 특별 품목에 대한 기술은 간단하고 모호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구체성 수준을 맞추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함.
-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에야 비로소 시장접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
- 2004년 6월에 미국 면화보조에 대한 WTO 분쟁해결에서 브라질이 승소
 -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고 브라질, 호주, 태국 등이 소송한 사건 등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개혁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됨.²⁴
 - 특히 미국의 초기 입장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국내보조 분야의 양허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함.
 - 미국은 고위 관료들을 동원해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7월 협상의제(July Package)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연말로 끝나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의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골격 타결 시점이 중요했기 때문임.²⁵

23 UR 공식, 스위스 공식, 무관세 등으로 구성된 혼합 공식은 고관세 품목이 적으면서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구조를 가진 선진국에 유리한 반면에 단순한 관세구조아래 평균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함(Lim 2004).

24 미국의 Zoellick 대표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했으나, EU의 Lamy 대표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사실 2004년 8월 4일에 WTO 패널은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밝힘(Washington Trade Daily 2004).

25 신속 협상권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일정기간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의

- 협상 타결을 위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여개 회원국에서 각료가 HOD(Head of Delegation)나 GC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발한 협상 활동을 벌임.²⁶

2.1.3. 주요 회원국별 이해득실

-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 주요국이 거둔 성과라고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표 2-28>과 같음.

표 2-28. 회원국 또는 그룹별 성과

회원국 또는 그룹	주요 성과
G20 (브라질, 인도, 중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품목(SP)과 수입보호 장치(SSM) · S&D: 시장접근 및 de minimis ·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촉진 부문 1개만 채택 · 무역왜곡 보조 downpayment 20% · 신규 가입국에 대한 특별한 신축성 조항
G90 (아프리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문제 접근 ·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촉진 부문 1개만 채택
G10 (우리나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상한 추후 평가, · 수출금지 및 제한 규제 · 민감 품목 및 일부 SP 확보
케언즈 그룹 (호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품목의 TRQ 증대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블루박스, · 수출보조 철폐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품목 확보 ·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및 STE 규율 설정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무역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임.

²⁶ HOD 회의의 수석대표는 제네바 주재 대사가 맡고 GC 회의는 본부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임. Groser 의장은 많은 회원국에서 각료들이 참석하더라도 WTO 사무국 차원에서 공식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2.2. 시장접근 분야

2.2.1. 관세 감축의 폭

-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높고 고관세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아래 구간별 관세감축의 공식 채택은 큰 폭의 관세감축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임<표 2-29>.

표 2-29. 우리나라의 주요 고관세 품목

구 분	실품목(누계)	HS 10단위(누계)	비고
300%이상	25개	94개(6.5%)	쌀, 마늘(360%), 참깨(630%), 쌀보리(300%), 겉보리(324%)
250%이상	31개	108개(7.4%)	고추(270%)
200%이상	39개	124개(8.5%)	수삼(223%), 밤(219%)
100%이상	47개	142개(9.8%)	분유(176%), 감귤(144%)

주: 쌀은 관세화 유예 품목이나 관세 300% 이상으로 분류함.

자료: 농림부

2.2.2.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 폭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민감 품목의 특성상 그 관세감축 폭은 일반 품목의 경우보다 적을 것임.
- 민감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TRQ 증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민감 품목의 감축 수준이 관세감축 공식과 차이가 날수록 더 많이 TRQ를 늘려주는 방식임.
 - TRQ가 설정돼 있지 않은 민감 품목의 경우 TRQ가 설정돼야 할 것임.

2.2.3. 관세 상한에 대한 평가

- 수입 금지에 가까운 고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관세 상한은 관세 감축 폭이 클 경우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 고관세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 융통성을 추구할 경우 관세 상한은 구속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민감 품목에는 TRQ 증량의 조건이 부가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품목에 적용될 구간별 관세감축 폭이 쟁점이 될 것임.
- 협상과정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고관세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는 2003년 8월에 미국과 EU의 공동 제안서에서 처음으로 관세 상한으로 구체화됨.
 - 공동 제안서는 민감 품목을 인정하면서(EU의 입장) 관세 상한(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 입장)을 원칙으로 제시함.
- 이후 관세 상한은 우리나라, 일본 등 소위 수입국인 G-1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르베즈 초안에 이르기까지 관세감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음.
 - 데르베즈 초안에서 소수의 NTC 품목에 한해 관세 상한 적용 예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G-10의 입장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음.
- 오시마 초안(7월 16일)과 수정안(7월 30일), 그리고 최종 합의안(8월 1일)에 이르기 과정에서 관세 상한은 쟁점이 됨.
 - 오시마 초안에서 관세 상한의 역할은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requires further evaluation)”에서 수정안에서는 “더 평가될 것이다(...will be further evaluated)”로 바뀌었고, 최종 합의안에서는 수정안의 표현이 그대로 유지됨.²⁷

- 오시마 초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관세 상한의 표현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G10은 표현 자체를 삭제시키려고 했음.
- 결국 최종 합의안은 평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귀결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이 논의될 것이 분명함.

2.2.4. 실품목(product)과 관세라인(tariff line)의 차이

- 기본골격은 민감품목에 대한 선정을 빼고는 실품목 기준으로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약속 의무를 제시함.
-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이행이 관세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실품목 기준 채택은 그 시장개방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나의 실품목은 여러 개의 관세라인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쌀은 한 품목이지만 관세라인은 16개로 구성돼 있음. 따라서 품목기준으로 관세를 10% 감축할 경우, 16개 관세라인의 감축률을 모두 동일하게 10% 감축할 수도 있지만, 관세라인별로 감축률을 조정해 평균으로 10%를 맞출 수도 있음. 결국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방식은 실제 이행측면에서 과거의 UR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민감품목에 최소 감축률의 적용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특정 관세라인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TRQ 확대도 지금처럼 품목기준으로 전체(global) 쿼터 설정이 가능해져 특정 관세라인의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짐.

2.3. 국내보조 분야

2.3.1. 조화(harmonization)의 원칙(para.6)

- ‘무역왜곡 보조의 실질적인 감축(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이란 Doha 각료회의 위임사항을 상기시키면서 기본골격은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의 원칙을 강조함.
 - 국내보조 부분에서 조화란 용어가 3번이나 나타남.
- 조화의 수단으로서 구간별 공식(tiered formula)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공식은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AMS 감축에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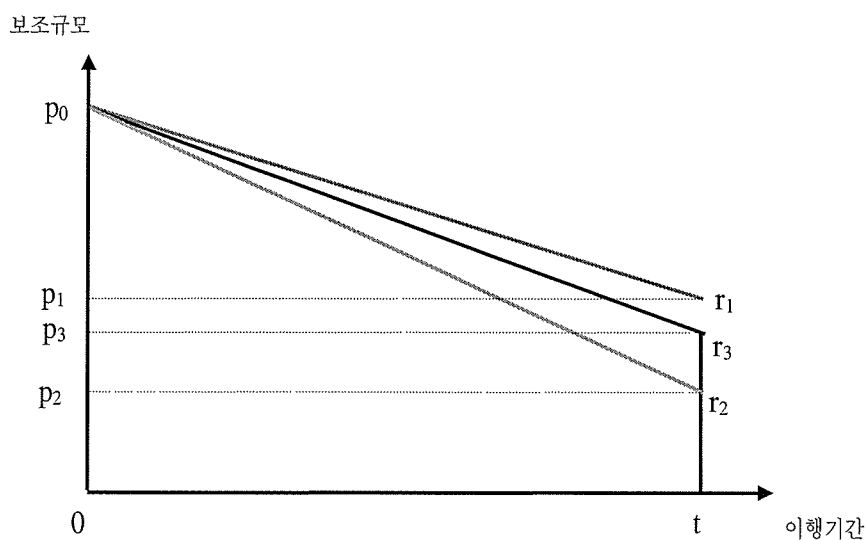
2.3.2. 무역왜곡 보조 총액의 감축(para.7~8)

- 무역왜곡 보조는 AMS 양허수준, 허용된 de minimis, 블루박스의 합으로 정의됨.²⁸
 - 무역왜곡 보조총액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보조사이의 전이(box shifting)를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임.
 - 그러나 보조 형태별 무역이나 생산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현실에서 이들을 같은 이름아래 묶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무역왜곡 보조는 구간별 감축공식에 의해 감축하되 이행 첫 해에 기준수준에서 80%를 넘지 않도록 함.
 - 이와 같은 다운페이먼트(downpayment) 방식에 의한 보조감축은 케언즈 그룹(G/AG/NG/W/35)과 ASEAN 그룹(G/AG/NG/W/55)이 각각 2000년 9월과 11월에 제안한 방식임.(케언즈그룹은 50%의 downpayment를 요구)

²⁸ De minimis는 품목 특정과 불특정 보조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해당 품목과 전체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중복 산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이 문제는 추후 협상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함.

- 농업협상위원회 Harbison 전임 의장의 종합 보고서도 downpayment 방식의 보조 감축을 소개했음(임송수 2003a).
 - 이번 기본골격 협상에서 인도와 브라질이 downpayment 방식의 보조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보조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감축률을 설정하는 공식은 추후 협상을 통해 이뤄질 테지만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의 규모와 보조의 절대규모를 기준으로 보조 높낮이를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 구간별 공식에 따른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의무는 감축 상한이 아닌 최소한의 감축수준으로 해석해야 함<그림 2-3>.
- 무역왜곡 보조가 감축 공식에 따라 이행기간(0-t1)에 p_0-r_1 의 스케줄로 감소하는 것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AMS, 블루박스, de minimis에 대한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의무를 적용했을 때 그 합계가 p_0-r_3 의 스케줄로 나타난다면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t1년에 $0-p_3(<0-p_1)$ 으로 구속됨.

그림 2-3.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구성 보조별 감축의 관계



○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및 양허수준과 기본골격 사이의 무역왜곡 보조를 견주면 <표 2-30>과 같음.

- EU는 기본골격 아래 블루박스와 de minimis의 감축으로 보조 규모가 양허수준 1,115억 달러에서 495억 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에는 품목 불특정 de minimis가 블루박스로 전환되면서 전체 보조는 286억 달러에서 238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
- 블루박스를 최대한 가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보조 감축은 6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산출됨.

표 2-30. 무역왜곡 보조의 규모 비교

단위: 100만 달러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	일본	우리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기준연도		2000	1998	1999	2000	1997	2000	2000	2000	1998	2000
현행수준	AMS	119	83	638	47,932	-	6,461	1,457	1,169	2,258	16,803
	블루박스	-	-	-	24,401	-	845	-	871	-	-
	de min	12	409	748	817	1,003	289	453	-	-	7,341
	합계	131	491	1,385	73,150	1,003	7,596	1,910	2,041	2,258	24,143
양허수준	AMS	264	997	3,041	73,741	-	36,231	1,549	1,266	3,180	19,103
	블루박스	-	-	-	24,401	-	845	-	871	-	-
	de min	958	6,400	972	13,360	8,497	4,160	2,843	98	223	9,476
	합계	1,222	7,397	4,013	111,502	8,497	41,236	4,392	2,236	3,403	28,579
기본골격	AMS	158	598	1,825	29,496	-	18,115	929	760	1,908	9,552
	블루박스	958	3,200	972	13,360	4,249	4,160	1,422	98	223	9,476
	de min	479	3,200	486	6,680	8,497	2,080	1,422	49	111	4,738
	합계	1,596	6,998	3,283	49,537	12,746	24,355	3,773	907	2,242	23,766

주: 1. 현행수준은 WTO에 통보된 실적임.

자료: WTO<www.wto.org>; OECD(2003)

- 노르웨이는 AMS와 블루박스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 보조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인도는 블루박스를 더 많이 활용할 경우 오히려 보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²⁹
- 첫째에 20%를 감축하는 downpayment 방식은 i) AMS가 실행수준이 아닌 양허수준을 기초로 감축된다는 점, ii) AMS 소진률(현행/양허)이 낮다는 점, iii) 보조의 형태가 차츰 그린박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에 제한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표 2-31>.³⁰
- 단 <표 2-30>에서 양허수준은 현재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보조규모이고, 기본골격은 아래와 같이 가정한 상한설정과 감축률을 적용한 이후 회원국이 사용 가능한 최대보조 규모임.
 - 또한 기본골격 아래 AMS 양허수준은 그 규모에 따라 각각 40%(호주, 브라질, 캐나다, 우리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50%(일본, 미국), 60%(EU)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함.
 - 블루박스는 현행수준과 양허수준의 경우 실제 사용규모이며,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의 5%로 상한이 설정된 경우임.
 - De minimis는 양허수준 아래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의 경우 10%)로써 최대 활용 가능 규모가 되며,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 대비 2.5%(호주, 캐나다,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5%(브라질, 우리나라), 10%(인도) 등 각각 50% 감축(인도의 경우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브라질의 농업생산액은 2000년 부가가치 수준을 사용했고, 스위스도 2000년 기준임.

29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직접지불의 정책수단을 채택하기에는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음.

30 UR 6년 이행기간에 선진국에 적용됐던 감축률인 20%를 이행 첫째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농정개혁 의지와 의무를 나타낸 상징적인 합의로 해석할 수 있음(Agra Europe 2004a).

- 한편 EU의 경우 AMS 소진률은 65%에 불과하며, 더욱이 2003년 CAP 개혁을 통해 블루박스의 상당 부분이 그린박스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downpayment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임송수 2003).³¹
- 미국은 AMS 소진률이 최근에 증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축 부담을 갖게 될 것임.
 -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AMS 소진률이 각각 94%와 92%로 높아, AMS나 양허수준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지만, 현행수준과 비교할 때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산출됨.

표 2-31. AMS의 소진률과 상대적 규모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일본	우리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기준연도	2000	1998	1999	2000	2000	2000	2000	1998	2000
AMS 소진률 (%)	45	8	21	65	18	94	92	71	88
AMS/농업생산액 (%)	1	2	16	28	44	5	65	71	10
AMS/EU AMS (%)	0	1	4	100	49	2	2	4	26

자료: WTO(www.wto.org); OECD(2003)

- 이에 따라 핵심은 앞으로 협상에서 보조 감축률을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³¹ 예를 들면, 프랑스는 곡물보조의 75%를 생산중립 직접지불로 전환하고 나머지 25%만 생산과 연계된 블루박스 조치로 유지할 계획임.

2.3.3. AMS 및 품목별 AMS 감축(para. 9-10)

- 무역왜곡 보조와 마찬가지로 AMS에도 구간별 감축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해야 함.
-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AMS의 높낮이를 따져보면 노르웨이가 65%로 높고, 일본 44%, EU 28%, 캐나다 16%, 미국 10%, 우리나라 5% 등으로 나타남<표 2-30>.
 - 절대규모 측면에서 AMS가 가장 큰 EU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이 그 49%, 미국이 26%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를 기록함.
-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의 AMS 규모는 낮게 나타나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G10 차원에서는 일부 불리한 회원국이 있어 G10은 캐나다와 함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AMS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국은 EU를 겨냥해 농업생산액 대비 AMS 크기를 기준으로 AMS를 감축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기본골격 협상에서 ‘절대기준 또는 상대기준’에 의한 감축 문안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EU도 같은 의견이어서 결국 삭제됨.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개도국이 주장한 내용으로 특히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선진국이 보조를 늘림으로써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예: dumping)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예를 들면, 1996~2001년에 미국은 면화에 대한 AMS 지출을 340만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늘렸으며, 쌀에 대해서도 580만 달러에서 7억 6,290만 달러로 증대시킴(www.wto.org).

- 기본골격이 일부 품목 특정 AMS의 감축을 명시하는 것도 이러한 품목 사이의 AMS 전이(product shifting)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G10은 품목별 AMS 상한이 AMS의 취지(통합 방식)에 어긋나고 각 국의 농정 신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품목별 AMS상한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형평성 회복의 논리를 지님.
 - 대부분의 개도국은 양허한 AMS가 없거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de minimis 중심의 정책조치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품목별 농업생산액 기준(품목 특정 de minimis의 경우)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AMS는 통합된 지표로 전체 상한 아래서 품목 사이의 보조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임.

- 품목별 AMS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AMS 대상 품목과 그 보조 규모 이하 수준에서 AMS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제약을 지님.
 - 1995~2000년에 AMS 대상 품목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로 제한돼 있으며, 전체 AMS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7%임<표 2-32>.

표 2-32. 우리나라의 현행 AMS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율

연도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5	0.97	0.0248	0.0029	-	-
1996	0.97	0.0259	0.0028	-	-
1997	0.97	0.0238	0.0029	0.0005	0.00001
1998	0.97	0.0299	0.0040	-	-
1999	0.97	0.0314	-	-	0.00003
2000	0.97	0.02	-	0.0011	-

자료: WTO(www.wto.org)

- 문제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AMS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5개 품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de minimis의 축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품목 특정한 보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특히 쌀 정책이 가격보조에서 그린박스에 속하는 공공비축제와 직접지불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 경우 쌀에 고착된 AMS(전체의 97%)가 상당부분 사장됨으로써 농정전반에서 AMS 조치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임.
 - 농정개혁 과정에서 AMS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EU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양한 품목에 대해 AMS 조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정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신축적인 농정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³²

2.3.4. De minimis 감축(para. 11~12)

- De minimis의 감축은 S&D 원칙을 고려하면서 협상하도록 규정함.
 - 개도국이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의 모든 de minimis 조치는 감축을 면제한다는 문구를 감안할 때 de minimis의 감축은 확실해보임.
-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면제는 인도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생계농과 빈농에 대한 기준과 ‘거의 모든 조치(almost all de minimis support)’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용대상 회원국과 조치가 결정될 것임.
 - 최소한 후자와 관련, 인도는 AMS 없이 de minimis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허된 AMS가 없는 개도국이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내다보임.

³²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U, 일본 등이 활용하는 품목 특정 de minimis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De minimis의 감축은 미국의 입장에서 경기순환 대응 직접지불(CCP)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기준과 연계시켜 협상할 것으로 전망됨.

2.3.5. 블루박스 상한과 새로운 기준(para. 13~15)

-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은 기본골격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음.
- 미국의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되도록 허용한 반면에 브라질 등 G20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기준(additional criteria)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는데, 용어는 수정안의 'may be negotiated'에서 'will be negotiated'로 강화됨.
 - CCP는 과거 기준면적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지만, 현재의 시장가격에 따라 그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과 연계된 정책 조치라고 할 수 있음(박동규 등 2004).
- CCP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PRCCP = TP - PRFDP - \max\{MP, LR\}$$

$$CCP = PRCCP \times BA \times 85\% \times YLD$$

·PRCCP: CCP 지급률(\$/부셀)

·TP: 목표가격(\$/부셀)

·PRFDP: FDP 지급률(\$/부셀)

·MP: 시장가격(\$/부셀)

·CCP: 경기변동 대응 지불(\$)

·LR: 용자율(\$/부셀)

·BA: 과거 기준면적(acre)

·YLD: 프로그램 단수(부셀/acre)

- 2000년 현재 블루박스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EU, 일본 등 3개국이며, UR 이행기간에 이 조치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임(UNCTAD 2003).
- 기본골격은 블루박스 보조가 과거 평균 농업생산액의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농업생산액에서 블루박스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노르웨이 44.4%, EC 8.2%, 일본 1% 정도임.
- 기본골격은 농정개혁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을 인정함.
 - 이에 따라 노르웨이처럼 그 활용 비율이 높은 회원국에 약간의 신축성(some flexibility)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잠재적인 사용 회원국에도 보조 상한이 적용된다고 밝힘.
 - 무역왜곡 보조의 기준(base)을 산출함에서도 기존의 블루박스 규모와 설정된 상한 가운데 큰 것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블루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을 배려함.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블루박스의 상한이 2004년 AMS 양허수준과 비슷할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또한 블루박스 조치가 농정개혁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2.3.6. 그린박스 기준 명확화(para. 16)

- 기본골격은 그린박스의 취지에 맞도록 그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지침은 없음.

2.4. 수출경쟁 분야

2.4.1. 수출보조 철폐(para. 17~21)

- 수출보조, 수출신용 및 보증, 수출보험, 식량원조, 수출 국영무역(STE) 등 모든 수출보조 요소에 대해 합의된 일시까지 철폐하기로 함.
- 지난 칸쿤 각료회의는 수출보조의 철폐, 다른 수출경쟁 수단에 대한 규율 등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골격은 상당한 진전임.
 - 수출보조는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특히 개도국과 NGO에 의해 강력하게 비난받아온 것임.
- 주요국의 수출보조 실적을 살펴보면 <표 2-33>와 같음.
 - UR 협정아래 25개국이 수출보조 감소 의무를 지님.

표 2-33. 주요국의 수출보조 추이

단위: 100만 달러

국 가	1995	1996	1997	1998	1999
EU	6,292	6,684	4,915	5,835	5,588
스위스	447	369	295	292	-
미국	26	122	112	147	80
한국	2	3	3	3	12

자료: WTO(www.wto.org)

- 수출보조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EU이며, EU는 수출보조의 철폐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수출신용과 식량원조에 의한 보조요소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병행주의(parallelism)를 주장해 기본골격에 반영시킴.

- 미국이 주로 활용하는 수출신용에는 수출보조와 같은 규제가 없음.
 - 세계 무역에서 현금기준 또는 180일 이하의 수출신용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대부분을 차지함(WTO 2000).
 - 수출신용 규모는 WTO에 통보되지 않고 있으나, OECD에 따르면 1995~98년에 11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OECD 2000).

- STE에 의한 수출보조나 정부의 금융지원 및 손실보증도 철폐 대상임.
 - 캐나다의 밀 위원회(CWB)와 정부는 CWB가 기본골격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함(Canada Press 2004).
 - 호주도 밀, 쌀, 감자, 설탕 등을 대상으로 단일 판매 창구에 의한 유통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된 것뿐이라고 반응을 나타냄(The Australian 2004).

- 수출보조 철폐의 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분명한 일시가 제시되지 못한 점, 특히 회원국의 내부 개혁 절차를 고려하도록 명시된 것(para. 20)에 우려를 나타내고 추후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Oxfam 2004).
 - EU의 수출보조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프랑스는 결국 기본골격의 병행 주의 반영에 만족했으나, 프랑스의 Gaymard 농업부 장관은 수출보조 철폐 시한은 2015년 또는 2017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Agra Europe 2004b).

- 우리나라는 S&D 차원에서 수출보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농업협정 아래에서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보조 요소의 철폐와 직접 연관은 없음.

2.4.2. 개도국 우대조치(para. 22~25)

- 개도국은 수출보조가 철폐된 시점 이후라도 얼마간(for a reasonable time) 농업협정 Article 9.4에 따라 처리, 등급 향상, 가공 등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국제수송 및 운송비용의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개도국의 수출보조 철폐 시점은 앞으로 합의해야 할 선진국의 시점과 Article 9.4의 지속기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우리나라는 특히 판매 촉진비로서 물류비 부담이 큰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사전에 지원 단가를 정해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과 업체(수출자 또는 물품 공급자)가 대상임.
 - 2001년에 판매 촉진비는 260억 원 정도임.

3. 모델리티 협상 과제와 전망

3.1. 협상 일정

- 이번 일반 이사회는 2001년 Doha 각료회의가 위임한 협상 시한인 2005년 1월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함.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열릴 계획임.
- 모델리티 협상은 2004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는 200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농업위원회의 다음 공식회의는 11월 18일로 예정돼 있음.

- 모델리티 협상은 일단 제6차 각료회의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06년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임.
- 지금과 같은 협상 탄력이 앞으로도 지탱된다면 2005년까지 모델리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새로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모델리티 협상이 기본골격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다수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빠른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기본골격에서 구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많은 핵심 쟁점들을 추후 협상으로 미룬 점, 모호한 표현에 대한 상이한 해석 가능, 관세감축과 TRQ 증량에 관한 복잡한 공식 설정, UR 때 없었던 민감 품목, 특별 품목 등의 새로운 개념과 이에 대한 자세한 규율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델리티 협상은 더 어렵고 긴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임.

3.2. 협상 과제와 전망

3.2.1. 시장접근 분야

- 관세 감축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수준이 제일 낮은 구간과 제일 높은 구간을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관세 상한의 역할을 축소하려면 고율관세 구간에 적용될 감축 폭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민감 품목의 감축률도 따라서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관세 상한에 커다란 이해가 걸린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세 상한의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협상결과가 민감 품목의 민감성을 반영해야만 균형 잡힌 협상이 된

다는 para. 33의 표현을 감안할 때 민감 품목에까지 관세 상한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함.³³

- 우리나라는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아래 관세 상한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관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3.2.2. 국내보조 분야

- 구간별 보조 감축공식과 관련한 기준 및 계수 설정은 복잡하고 회원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보조 규모와 감축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액과 같은 지표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우리나라의 미래 농정 신축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면서도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혹시 방법론 협상에서 상한 설정 면제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블루박스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브라질 등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그 추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33 민감 품목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ara. 32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고, 이는 일본의 쌀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일본을 위한 표현이라고 전해짐.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쌀의 시장개방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However, balance in this negotiation will be found only if the final negotiated result also reflects the sensitivity of the product concerned.*”

- 지금처럼 휴경아래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며, 가격과 연동된 새로운 조치와 관련해서는 가격연동 부분이 크게 제약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조치의 미래 도입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de minimis를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고, AMS와 de minimis의 감축은 품목 특정한 보조에 커다란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미래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임.
 - 비록 인도의 주장으로 첨가된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면제라 할지라도, 그 기준 협상에 적극 참여해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그린박스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심각한 쟁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특히 NTC의 추가 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체에서 그린박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69%(미국 70%, 일본 76%, EU 25%)에 이르고, 농정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이밖에도 기준연도의 설정과 관련해 특히 선진국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UR 의무는 2000년까지 정해져 있고, 그 이후부터 현행 유지의 형태로 진행돼 온 만큼 2004년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개도국과 형평을 고려해 기준연도가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4. C/S 작성에 주는 시사점

4.1. 시장접근 분야

-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높다고 해도 이를 모두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실제 영향은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에 의해 거의 결정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민감 품목들을 검토해 설정한 다음 이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임.
 - 그 이후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 폭을 최소화하고 민감 품목의 수를 더욱 늘리는데 주력해야 함.
- 민감 품목의 지정은 관세수준을 고려해야 함.
 - 관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품목은 설령 일반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감축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낮은 세율의 TRQ를 확대(신설)해야 하므로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언제나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한편 민감품목의 최대 개수는 적절한 수로 제한을 받을 것인 반면 실제 관세감축 및 TRQ 확대는 실패품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관세라인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상의 관세라인을 추가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 다만 이 경우 민감 품목의 개수가 늘어나는 단점도 있음.

4.2. 국내보조 분야

- AMS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 설정이 중요한데, 농업생산액이나 EU의 AMS 양허수준과 같은 상대기준과 회원국별 AMS 양허수준 자체의 크기에 다른 절대기준 가운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다른 대로 상대기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AMS와 최소 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AMS 감축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도국 지위로 인해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 결국 총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이 사실상 보조에 구속력을 발휘할 것임.
 - 이에 따라 총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최소화를 쫓아야 함.
-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농의 개념을 생계농과 자원 빈약농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블루박스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생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부족불 지불 형태)의 규모를 최대치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CS를 작성해야 할 것임.
- 허용보조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시 검토된 기준에 기존 및 미래 조치들이 신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특히 소규모 가족농,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유지 등에 대한 NTC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새로운 기준에 소득안정 직접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제 3장

민감 품목의 선정과 평가

1. 민감 품목 선정의 기준

1.1.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의 논의 동향

-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하빈슨초안에 기초한 모델리티 합의·도출이 실패한 이후, 2003년 7월 개최된 이집트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간의 막후 접촉 시기부터임.
- 당시 미국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어려운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EU는 민감한 품목에 UR 공식을 적용하되 대신 일정 부분 TRQ 증량을 인정하는 각자의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러한 미국과 EU의 절충은 2003년 7월 공동제안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카스티요 초안을 거쳐 데르베즈 초안에서 제1그룹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음.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비록 민감품목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UR 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시장접근은 TRQ와 관세감축의 조합으로 보장하도록 제시된 제 1 그룹을 사실상 민감품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본골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민감품목은 데르베즈 초안의 제 1그룹에서 확대 발전된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민감품목의 개수와 시장개방 폭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음.
- 한편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NTC품목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일부 소수 품목에 한해서 관세상한 적용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기본골격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민감품목의 개수는 적절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정 자체는 특별한 기준없이 회원국 자율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음. 다만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기본골격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향후 협상에서 적절히 마련된 기준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특별품목 선정기준에 관하여 지금까지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된 것은 농업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고용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양섭취량 측면에서 비중 등임.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제시된 기준관련 통계자료의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자율 설정을 강조해 왔음.

1.2. 민감품목 선정 기준(안)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2.1. 농가피해(농가소득 감소) 측면

- 관세감축 및 TRQ 확대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가격이 하락한다면 해당 품목의 생산농민의 농업소득이 우선적으로 감소될 것임. 만일 대폭적인 소득감소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커질 것임.
- 해당 품목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 농업소득의 감소는 국내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생산 감소 폭에 의해서 결정됨.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으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품목일 것임. 이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가 해당 품목의 농업생산액 또는 부가가치임.
 - 한편 생산액은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생산액이 클수록 그 만큼 많은 생산요소(또는 자원)이 해당 품목의 생산과정에 투입(배분)되고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생산감소에 따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원의 유희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비농업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에 이용되는 요소(자원)는 이동이 어려운 상대적인 고정성(fixty)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액은 자원의 유희화 정도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생산액은 간접적으로 그 품목의 사회적 수요도 반영하고 있음.
 -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되지 않는 품목은 필수 농산물이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생산이 유지 또는 확대되기 보다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당품목의 생산액이 꾸준히 유지 또는 증가하여 생산비중이 큰 품목은 그 만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농업생산액은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종합적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다만 축산물과 같이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 가격 변화가 포함된 농업생산액 지표를 보완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자원의 유희화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임
- 해당 품목의 재배농가 수 또는 취업자 수
- 농가소득 감소 차원이외에 농업부문의 고용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주요 지표로 자원의 유희화 정도와도 관련됨.
- 지역 집중도
- 절대적인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고 해도, 특정 농촌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학대에 따르 지역적인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민감품목 선정시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를 보완해 주는 지표임.

1.2.2.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 정도 또는 식량안보

□ 국민 1인 1일당 영양섭취량

- 식량 순수입국이며, 양곡 자급률이 27%에 불과한³⁴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관심도 민감품목 선정의 중요한 척도가 됨. 식량안보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식품으로서 국민의 영양섭취량 가운데 차지하는 에너지(칼로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음.

1.2.3. 향후 발전 가능성

□ 향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의 여건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함.

-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와 인구의 중·장기적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일수록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소폭 감축해 해당 품목의 국경보호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그 품목의 생산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향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의 수요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 시장에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품목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탈락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임.

³⁴ 양곡자급도는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및 기타 곡물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 현재 양곡자급율은 27%임. 사료용을 제외할 경우는 약 51%임.

해당 품목의 요소 집약도

- 해당 품목의 생산요소별 비용 분배몫(cost share)의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정태적·동태적으로 노동, 토지 절약적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해당 품목의 소비 동향(1인당 소비변화 추이)

1.2.4. 기타

해당 품목군의 관세조화 문제

- 해당 품목이 중요하다고 해도 직·간접 대체 품목 또는 유사 대체품목이 이미 자유화되었거나 관세가 매우 낮다면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국경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활용 가능한 비관세 장벽

- 해당 품목이 중요하다고 해도 직·간접 대체 품목 또는 유사 대체품목이 이미 자유화되었거나 관세가 매우 낮다면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국경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2. 검토 기준 적용 결과

2.1.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

-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쌀이 약 32%로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돼지, 한육우, 우유(낙농)의 순으로 쌀과 축산부문의 생산액 합계가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이 외에 수박, 배추, 딸기 등 일부 채소와 사과, 감귤 등 과실의 생산액을 추가했을 때 전체 농업생산액의 75%에 달함.(표 3-1 참조)
- 상위 10대 품목은 쌀, 돼지, 한우, 우유(낙농), 고추, 닭, 계란, 수박, 배추, 마늘이며, 20대 품목은(단 품목군은 제외) 쌀, 돼지, 한우, 우유(낙농), 고추, 닭, 계란, 수박(시설포함), 배추, 마늘, 딸기(시설포함), 사과, 감귤, 오이, 오리, 포도, 인삼, 참외, 무, 배 등임.
-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돼지와 닭, 우유 등 해외수입 사료의 이용이 중요한 축산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표 3-2 참조)
- 상위 17개 품목(군)은 쌀, 고추, 한우, 사과, 우유, 배, 양계, 감귤, 돼지, 마늘, 포도, 감, 맥류, 특용작물, 두류, 복숭아, 양파 순임.

표 3-1. 품목별 생산액 비중

순위	품목	2000-02 평균 생산액(천원)	생산액 비중(%)	누적 생산액 비중(%)
	농업	32,141,100,448	100.000	
1	쌀	10,260,901,117	31.925	31.925
2	돼지	2,660,873,292	8.279	40.203
3	한육우	1,904,928,205	5.927	46.130
4	우유	1,451,224,805	4.515	50.645
5	고추	1,043,960,733	3.248	53.893
6	닭	804,535,174	2.503	56.396
7	계란	736,834,333	2.292	58.689
8	수박	621,839,443	1.935	60.624
9	배추	579,284,547	1.802	62.426
10	마늘	546,879,775	1.701	64.127
11	딸기	536,271,673	1.668	65.796
12	사과	521,829,272	1.624	67.419
13	감귤	487,603,959	1.517	68.937
14	오이	455,882,100	1.418	70.355
15	오리	443,767,467	1.381	71.736
16	포도	438,922,284	1.366	73.101
17	인삼	433,762,070	1.350	74.451
18	참외	408,304,947	1.270	75.721
19	무	387,243,567	1.205	76.926
20	배	385,790,407	1.200	78.126
21	담배	358,833,816	1.116	79.243
22	파	340,032,667	1.058	80.301
23	절화류	326,094,689	1.015	81.315
24	느타리	309,068,354	0.962	82.277
25	양파	283,173,929	0.881	83.158
26	콩	274,495,625	0.854	84.012
27	감	271,218,479	0.844	84.856
28	상추	256,565,352	0.798	85.654
29	참깨	240,474,078	0.748	86.402
30	호박	216,777,575	0.674	87.077

<표 3-1 계속>

순위	품목	2000-02 평균 생산액(천원)	생산액 비중(%)	누적 생산액 비중(%)
31	분화류	213,603,695	0.665	87.741
32	감자	202,164,757	0.629	88.370
33	복숭아	169,684,784	0.528	88.898
34	벌꿀	166,462,500	0.518	89.416
35	쌀보리	135,455,586	0.421	89.837
36	고구마	125,932,955	0.392	90.229
37	시금치	103,963,234	0.323	90.553
38	당근	102,921,738	0.320	90.873
39	맥주보리	93,071,050	0.290	91.163
40	젓소	71,737,802	0.223	91.386
41	들깨	65,427,843	0.204	91.589
42	관상수	58,165,407	0.181	91.770
43	양배추	55,789,758	0.174	91.944
44	사슴	50,092,218	0.156	92.100
45	생강	49,244,262	0.153	92.253
46	옥수수	36,919,001	0.115	92.368
47	황기	36,883,580	0.115	92.483
48	당귀	35,987,329	0.112	92.594
49	겉보리	35,485,425	0.110	92.705
50	길경	34,123,469	0.106	92.811
51	팥	28,535,632	0.089	92.900
52	땅콩	21,266,642	0.066	92.966
53	토끼	16,985,718	0.053	93.019
54	녹두	10,272,389	0.032	93.051
55	작약	6,337,128	0.020	93.071

표 3-2. 주요 농산물의 부가가치(2001년 기준)

	품목	부가가치 (10억원)
1	쌀	7,385.4
2	고 추	925.2
3	한 우	753.7
4	사 과	607.2
5	우 유	552.3
6	배	549.0
7	양 계	494.2
8	감 굴	454.2
9	양 돈	446.1
10	마 늘	359.3
11	포 도	355.5
12	감	349.6
13	맥 류	248.2
14	특용작물	242.5
15	두 류	231.8
16	복숭아	224.0
17	양 파	214.0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에 근거해 재 계산

- 한편 지난 10년 사이(1990~2002년)의 품목(군)별 생산액 증감 변동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 비해 생산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품목은 채소와 과실, 화훼류, 축산물 등임.(특히 오리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2002년에 12배로 신장)

- 생산액 변동은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음. 그러나 지난 12년간 생산액의 대폭 증가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 해당 품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암시해 주기도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소 과일, 축산물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반면 식량작물과 유지류는 타 품목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³⁵⁾ (표 3-3)
- 1990년 이후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품목은 돼지, 우유, 오리 등 축산물과 상추 및 절화로서 과거 1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남.

35) 가격변화에 따른 생산액 증감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할 경우도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 물론 과거 추세 생산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해서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단은 곤란하다. 따라서 생산액의 동태적 변화추이는 최소한 참고 지수일 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표 3-3. 품목별 생산액 변화추이

단위: 억원

		품목	1990	1995	2000	2001	2002	90/02 증감률
농업			17,728	25,855	31,829	32,448	32,147	1.81
식량 작물	미곡	미곡	6,538	6,760	10,505	10,722	9,556	1.46
	맥류	겉보리	69.1	45.0	27.5	39.5	39.5	0.57
		쌀보리	146.1	103.8	87.0	197.5	121.9	0.83
		맥주보리	79.6	138.8	79.0	105.6	94.5	1.19
	두류	콩	213.7	274.4	285.8	268.1	269.6	1.26
		팥	38.8	56.8	37.5	29.1	19.1	0.49
		녹두	10.7	8.2	10.0	11.3	9.5	0.89
	잡곡	옥수수	31.4	32.7	35.6	32.7	42.5	1.35
	서류	고구마	125.8	124.8	130.6	115.1	132.0	1.05
		감자	131.4	305.6	218.2	225.7	162.5	1.24
채소	엽채류	배추	396.7	446.5	572.7	618.7	546.5	1.38
		양배추	32.3	49.6	62.6	46.2	58.6	1.81
		시금치	29.9	55.1	89.8	121.1	101.0	3.38
		상추	45.7	132.5	264.6	218.0	287.1	6.29
	과채류	수박	324.1	848.9	674.7	617.6	573.2	1.77
		참외	131.7	517.3	435.9	377.2	411.8	3.13
		오이	124.7	242.0	388.0	430.5	549.2	4.40
		호박	37.5	100.7	160.5	245.1	244.7	6.52
		딸기	159.4	384.0	444.3	591.9	572.6	3.59
		무	235.0	274.7	384.7	392.6	384.5	1.64
	근채류	당근	51.6	90.3	119.9	88.7	100.2	1.94
	조미채 소	고추	427.2	1,200	1,044	1,184	904.3	2.12
		마늘	836.3	1,219	532.4	583.2	525.1	0.63
		파	214.4	222.9	402.0	333.7	284.4	1.33
		양파	95.5	161.6	323.1	287.6	238.9	2.50
		생강	38.7	79.5	34.2	65.9	47.7	1.23
과실	과실	사과	439.7	896.2	497.2	437.2	631.1	1.44
		배	117.2	286.5	387.2	419.9	350.2	2.99
		복숭아	129.6	191.4	185.1	156.5	167.5	1.29
		포도	105.7	608.5	513.5	253.1	550.1	5.21
		감귤	286.5	709.3	633.6	389.2	440.1	1.54
		감	111.9	259.9	233.3	254.1	326.3	2.92

<표 3-3 계속>

		품목	1990	1995	2000	2001	2002	90/02 증감율
특용 작물	유지작 물	참깨	261.4	260.8	268.3	252.0	201.1	0.77
		들깨	52.2	73.5	60.5	74.4	61.4	1.18
		땅콩	41.2	44.3	16.4	27.2	20.2	0.49
약용 작물	약용작 물	길경	32.7	38.8	39.0	29.7	33.7	1.03
		당귀	14.2	45.1	26.2	47.0	34.8	2.45
		작약	22.8	20.9	5.5	6.6	6.9	0.30
화훼류	화훼류	황기	33.7	67.4	55.1	27.6	28.0	0.83
		절화류	59.2	225.8	298.4	308.9	371.0	6.26
		분화류	99.5	188.3	160.1	183.7	297.0	2.98
버섯	버섯	관상수	55.8	67.3	53.0	46.0	75.5	1.35
		느타리	90.8	201.8	311.8	322.1	293.3	3.23
전매 작물	전매작 물	인삼	197.8	283.9	372.8	373.5	555.0	2.81
		담배	260.2	350.7	422.9	353.2	300.4	1.15
축산	가축	한육우	922.4	1,776	1,879	1,670	2,136.3	2.32
		젓소	135.5	247.4	71.9	71.3	72.0	0.53
		돼지	1,174	1,407	2,372	2,692	2,918	2.49
		닭	445.9	772.7	820.8	863.3	729.4	1.64
		사슴	23.7	23.5	105.6	18.8	25.9	1.09
		토끼	43.7	6.2	16.8	17.6	16.6	0.38
		오리	37.5	153.6	474.4	382.0	475.0	12.66
	축산물	계란	407.6	562.8	651.2	827.6	731.8	1.80
		우유	637.7	855.6	1,352	1,429	1,573	2.47
		벌꿀	56.0	58.5	133.1	165.3	201.0	3.59
	누에고 치	누에고치	30.3	1.7	0.0	0.0	0.0	0.0

2.2. 품목별 재배면적

- 2001~03년 평균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큰 품목은 단연 쌀이 절대적이며, 콩과, 고추, 배추, 참깨, 쌀보리, 마늘, 맥주맥, 감, 들깨, 사과, 감귤, 포도, 수박, 배 등이 재배면적이 큰 주요 품목임.(표 3-4 참조)

표 3-4.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

단위: 1,000ha, %

	1989~91 평균		1994~95년 평균		2001~03년 평균	
쌀	1,236.5	(51.3)	1,069.3	(49.0)	1,050.8	(52.1)
콩	142.9	(5.9)	108.3	(5.0)	79.9	(4.0)
고추	70.7	(2.9)	93.7	(4.3)	72.0	(3.6)
배추	35.7	(1.5)	45.7	(2.1)	45.5	(2.3)
참깨	60.3	(2.5)	45.2	(2.1)	40.9	(2.0)
쌀보리	74.3	(3.1)	32.0	(1.5)	36.1	(1.8)
마늘	43.8	(1.8)	38.9	(1.8)	34.5	(1.7)
맥주보리	44.2	(1.8)	40.9	(1.9)	29.3	(1.5)
감	13.7	(0.6)	24.9	(1.1)	29.2	(1.4)
들깨	39.2	(1.6)	33.9	(1.6)	28.1	(1.4)
사과	48.8	(2.0)	48.7	(2.2)	26.3	(1.3)
수박	26.3	(1.1)	39.7	(1.8)	25.9	(1.3)
포도	15.3	(0.6)	24.3	(1.1)	24.8	(1.2)
감귤	19.3	(0.8)	23.7	(1.1)	24.6	(1.2)
배	9.0	(0.4)	15.7	(0.7)	24.1	(1.2)
과	20.4	(0.8)	21.5	(1.0)	21.9	(1.1)
감자	20.5	(0.9)	21.0	(1.0)	18.6	(0.9)

< 표 3-4 계속 >

	1989~91 평균		1994~95년 평균		2001~03년 평균	
옥수수	24.2	(1.0)	19.0	(0.9)	16.2	(0.8)
양파	9.4	(0.4)	11.7	(0.5)	15.6	(0.8)
복숭아	12.3	(0.5)	10.1	(0.5)	15.3	(0.8)
고구마	20.6	(0.9)	15.1	(0.7)	13.9	(0.7)
겉보리	36.4	(1.5)	15.1	(0.7)	11.7	(0.6)
무	5.4	(0.2)	7.9	(0.4)	9.0	(0.4)
호박	4.5	(0.2)	7.3	(0.3)	8.9	(0.4)
팔	23.7	(1.0)	16.2	(0.7)	8.4	(0.4)
참외	8.6	(0.4)	11.0	(0.5)	8.1	(0.4)
딸기	6.4	(0.3)	7.3	(0.3)	7.6	(0.4)
시금치	5.8	(0.2)	8.0	(0.4)	7.1	(0.4)
상추	5.1	(0.2)	7.5	(0.3)	6.9	(0.3)
오이	7.4	(0.3)	8.1	(0.4)	6.8	(0.3)
자두	3.2	(0.1)	2.8	(0.1)	5.9	(0.3)
양배추	4.4	(0.2)	5.6	(0.3)	5.4	(0.3)
땅콩	13.0	(0.5)	7.9	(0.4)	4.8	(0.2)
당근	4.9	(0.2)	5.6	(0.3)	3.7	(0.2)
토마토	2.6	(0.1)	3.9	(0.2)	3.7	(0.2)
녹두	5.8	(0.2)	3.0	(0.1)	2.4	(0.1)
생강	3.9	(0.2)	5.1	(0.2)	2.1	(0.1)
밀	0.3	(0.0)	1.9	(0.1)	2.0	(0.1)
기타	280.2	(11.6)	273.8	(12.6)	237.3	(11.8)
재배면적	2,408.7	(100.0)	2,181.2	(100.0)	2,014.9	(100.0)

주: ()는 비중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물통계

- 지난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의 동태적 변화 추이를 보면 쌀의 재배면적은 서서히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은 감귤, 포도, 복숭아, 배, 양파 및 과채류이며, 곡물류(보리, 콩, 옥수수 등)와 고추, 마늘, 사과, 참깨 고구마, 땅콩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2.3. 품목별 생산농가 및 취업자 비중

- 품목별 생산 농가수는 쌀, 배추, 마늘, 한우 등이 지난 10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고추는 점진적으로 생산 농가수 비중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품목이며, 감자는 반대로 점차 생산 농가수가 늘어난 품목임. 나머지 품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2000년 기준 생산 농가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쌀을 필두로 콩, 마늘, 배추, 감자, 한우, 팥, 무, 인삼 등임.
- 품목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2002년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논벼이고, 다음으로 닭, 고추, 한육우, 배 등으로 나타났음. 노동력이 많이 가는 고추의 경우 생산 농가수가 줄면서 고추 재배농가는 생산에 상당한 고용노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계열화로 생산 농가수는 적으나 취업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품목별 생산농가 및 취업자 비중

단위: %

순위	취업자		생산농가					
	2000		1990		1995		2000	
1	논벼	17.8	논벼	13.6	논벼	14.5	논벼	13.3
2	닭	13.6	보리	2.6	고추	1.1	고추	1.1
3	고추	12.2	콩	8.3	배추	7.8	배추	7.8
4	한옥우	5.6	팥	3.8	무	2.8	상추	2.5
5	배	3.8	감자	0.0	콩	2.9	무	3.8
6	사과	3.6	고추	10.6	상추	11.7	콩	11.5
7	버섯	3.6	배추	10.3	마늘	9.8	마늘	9.6
8	마늘	3.4	상추	7.5	한옥우	7.4	시금치	9.1
9	포도	3.4	무	9.5	시금치	8.7	오이	8.8
10	젓소	2.9	마늘	7.6	오이	6.9	감자	6.6
11	수박	2.4	시금치	5.7	감자	4.9	한옥우	5.6
12	딸기	2.3	오이	4.4	팥	3.6	팥	4.5
13	감귤	2.2	대파	2.6	대파	1.9	대파	2.3
14	복숭아	1.9	토마토	1.3	토마토	1.4	토마토	2.1
15	배추	1.9	양파	0.8	닭	1.0	닭	1.4
16	참외	1.9	수박	0.5	보리	0.9	양파	0.3
17	콩	1.7	딸기	0.1	양파	0.2	보리	0.2
18	오이	1.5	참외	0.4	수박	0.5	단감	0.2
19	단감	1.5	단감	0.3	사과	0.5	포도	0.7
20	감자	1.4	포도	0.3	포도	0.6	배	0.7
21	돼지	1.4	배	0.1	돼지	0.3	사과	0.6
22	양파	1.3	사과	0.6	단감	0.9	복숭아	0.5
23	무	1.2	복숭아	0.4	참외	0.3	감귤	0.4
24	상추	1.1	감귤	0.2	감귤	0.3	수박	0.4
25	대파	1.0	뽕은감	0.0	배	0.1	돼지	0.2
26	토마토	1.0	자두	0.1	복숭아	0.1	뽕은감	0.2
27	인삼	0.8	매실	0.0	젓소	0.0	딸기	0.1
28	보리	0.5	참다래	0.0	딸기	0.0	젓소	0.0
29	자두	0.4	메론	0.0	대추	0.0	참외	0.0
30	뽕은감	0.4	대추	0.0	뽕은감	0.2	자두	0.1
31	팥	0.3	한옥우	5.5	인삼	6.2	인삼	3.2
32	메론	0.3	젓소	0.3	자두	0.3	버섯	0.2
33	대추	0.2	닭	1.2	버섯	1.2	대추	1.7
34	시금치	0.2	돼지	1.3	참다래	0.6	매실	0.3
35	매실	0.1	인삼	0.0	매실	0.1	참다래	0.1
36	참다래	0.1	버섯	0.0	메론	0.1	메론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0, 1995, 2000년

2.4. 품목별 생산의 지역 집중도³⁶⁾

- 품목별 지역별 생산 집중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전국을 9개도로 구분한 후 각 도별 재배면적에서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비율을 계산한 후 이의 변이계수를 생산의 지역 집중도로 간주하였음(표 3-6 참조)
- 2001~03년 평균 재배면적에 기초한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를 보면 감귤이 가장 높고, 다음이 맥류와 옥수수로 나타났음.
 - 생산의 지역 집중도가 비교적 큰 품목은 감귤(제주), 쌀보리(전남, 전북), 맥주보리(전남, 제주), 옥수수(강원), 사과(경북), 감(경남), 감자(강원도, 제주도), 복숭아(충북, 경북), 양파(전남, 경남, 제주), 포도(경북, 충북), 마늘(전남, 제주) 등임.
 - 반면 쌀, 참깨, 콩, 고구마, 배 땅콩, 고추 등은 비교적 지역 집중도가 낮은 품목임.
- 품목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을 산출하여 특정 품목이 특정 지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검토한 결과도 지역집중도가 제일 높은 품목은 제주도의 감귤이고, 다음으로는 경남의 단감, 전남의 보리, 경북의 복숭아, 강원의 옥수수, 전남의 양파, 경북의 포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국적으로 생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품목은 쌀, 콩, 팥, 고구마, 고추, 참깨 등의 품목임.

36) 생산의 지역 집중도는 해당지역 전체 재배면적에서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비율에 대한 분산값을 이용하였음.

표 3-6-1. 지역별/품목별 생산집중도 I

	지역의 품목별 비중(%)									생산집중도 I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분산	반계수
참깨	1.2	0.8	2.4	1.4	1.4	2.9	2.9	1.7	2.2	1.9	0.6	250.4
미곡	58.4	40.0	42.7	65.7	64.0	53.2	45.8	50.6	1.1	46.8	374.7	241.9
콩	3.2	6.3	6.1	2.5	1.9	4.5	4.3	3.4	8.7	4.5	4.6	211.2
부	2.9	3.8	1.6	1.5	2.2	1.2	1.0	1.1	2.7	2.0	0.9	208.8
과	1.4	0.5	0.6	1.2	0.4	1.4	0.6	0.9	1.8	1.0	0.2	203.5
토마토	0.1	0.3	0.1	0.3	0.1	0.2	0.2	0.3	0.0	0.2	0.0	191.9
고구마	1.5	0.3	0.5	0.6	0.7	0.7	0.4	0.8	0.5	0.7	0.1	179.8
배	1.9	0.5	1.5	1.8	0.6	1.1	1.3	1.3	0.1	1.1	0.4	178.3
땅콩	0.2	0.1	0.3	0.3	0.4	0.0	0.4	0.1	0.5	0.3	0.0	173.8
호박	0.7	0.9	0.6	0.3	0.2	0.3	0.4	0.7	0.1	0.5	0.1	172.0
고추	2.5	3.9	7.4	2.8	3.5	2.4	5.5	1.4	0.0	3.3	4.9	148.4
오이	0.7	0.9	0.3	0.4	0.2	0.3	0.2	0.2	0.0	0.4	0.1	127.4
팔	0.3	1.2	1.0	0.2	0.3	0.3	0.5	0.4	0.1	0.5	0.1	126.5
배추	2.1	7.8	2.5	1.4	1.6	2.6	1.7	1.5	1.4	2.5	4.1	123.7
수박	0.2	0.2	1.3	1.7	1.4	0.8	1.2	3.5	0.5	1.2	1.0	120.3
들깨	2.2	3.7	3.3	2.4	1.4	0.4	0.5	0.5	0.0	1.6	1.8	119.0
시금치	1.1	0.1	0.1	0.1	0.1	0.4	0.2	0.6	0.1	0.3	0.1	95.2
마늘	0.4	0.4	0.5	1.1	0.3	3.5	1.4	2.6	5.9	1.8	3.6	94.0
딸기	0.0	0.0	0.1	0.8	0.2	0.3	0.2	1.1	0.1	0.3	0.1	92.9
포도	1.7	0.2	2.8	1.3	0.6	0.2	3.7	0.3	0.0	1.2	1.7	92.2
양파	0.0	0.1	0.0	0.1	0.2	1.9	0.9	1.3	1.5	0.7	0.6	90.6
참외	1.2	0.1	0.0	0.0	0.1	0.1	1.3	1.1	0.5	0.5	0.3	88.0
복숭아	0.5	0.6	2.0	0.4	0.3	0.1	2.4	0.2	0.0	0.7	0.8	85.4
녹두	0.1	0.0	0.1	0.1	0.0	0.3	0.0	0.0	0.4	0.1	0.0	85.2
감자	0.5	6.0	0.7	0.5	0.9	0.5	0.7	1.1	6.3	1.9	5.7	79.3
겉보리	0.1	0.3	0.2	0.1	1.3	0.0	1.0	1.9	0.0	0.5	0.5	78.4
상추	1.4	0.1	0.1	0.2	0.2	0.2	0.2	0.3	0.1	0.3	0.2	73.7
감	0.0	0.1	0.4	0.3	0.5	1.9	2.1	5.1	0.4	1.2	2.7	73.5
밀	0.0	0.0	0.0	0.0	0.2	0.2	0.0	0.3	0.0	0.1	0.0	69.1
사과	0.2	0.2	2.4	0.8	0.4	0.1	5.3	1.0	0.0	1.1	3.0	65.9
옥수수	0.6	5.5	1.9	0.3	0.2	0.5	0.5	0.5	0.0	1.1	3.0	63.6
맥주보리	0.0	0.0	0.0	0.0	0.0	5.0	0.0	2.2	5.4	1.4	5.1	61.6
쌀보리	0.0	0.0	0.0	0.1	4.3	5.6	0.1	0.8	0.0	1.2	4.6	56.9
생강	0.0	0.0	0.0	0.5	0.2	0.0	0.1	0.0	0.0	0.1	0.0	54.9
자두	0.0	0.1	0.4	0.0	0.0	0.0	1.5	0.2	0.0	0.2	0.2	51.2
양배추	0.0	0.8	0.2	0.2	0.1	0.2	0.1	0.0	3.5	0.6	1.3	51.1
당근	0.0	0.4	0.0	0.0	0.0	0.0	0.1	0.3	3.3	0.5	1.1	43.7
감귤	0.0	0.0	0.0	0.0	0.0	0.0	0.0	0.0	40.2	4.5	179.2	33.3

표 3-6-2. 지역별/품목별 생산집중도 II*

	지역의 품목별 비중(%)									생산집중도 II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분산	변이계수II
미곡	58.4	40.0	42.7	65.7	64.0	53.2	45.8	50.6	1.1	52.6	91.6	549.2
참깨	1.2	0.8	2.4	1.4	1.4	2.9	2.9	1.7	2.2	1.9	0.6	250.4
토마토	0.1	0.3	0.1	0.3	0.1	0.2	0.2	0.3	0.0	0.2	0.0	240.8
콩	3.2	6.3	6.1	2.5	1.9	4.5	4.3	3.4	8.7	4.5	4.6	211.2
무	2.9	3.8	1.6	1.5	2.2	1.2	1.0	1.1	2.7	2.0	0.9	208.8
파	1.4	0.5	0.6	1.2	0.4	1.4	0.6	0.9	1.8	1.0	0.2	203.5
고추	2.5	3.9	7.4	2.8	3.5	2.4	5.5	1.4	0.0	3.7	3.9	187.1
고구마	1.5	0.3	0.5	0.6	0.7	0.7	0.4	0.8	0.5	0.7	0.1	179.8
배	1.9	0.5	1.5	1.8	0.6	1.1	1.3	1.3	0.1	1.1	0.4	178.3
땅콩	0.2	0.1	0.3	0.3	0.4	0.0	0.4	0.1	0.5	0.3	0.0	173.8
호박	0.7	0.9	0.6	0.3	0.2	0.3	0.4	0.7	0.1	0.5	0.1	172.0
오이	0.7	0.9	0.3	0.4	0.2	0.3	0.2	0.2	0.0	0.4	0.1	149.0
들깨	2.2	3.7	3.3	2.4	1.4	0.4	0.5	0.5	0.0	1.8	1.7	139.8
팥	0.3	1.2	1.0	0.2	0.3	0.3	0.5	0.4	0.1	0.5	0.1	126.5
배추	2.1	7.8	2.5	1.4	1.6	2.6	1.7	1.5	1.4	2.5	4.1	123.7
수박	0.2	0.2	1.3	1.7	1.4	0.8	1.2	3.5	0.5	1.2	1.0	120.3
포도	1.7	0.2	2.8	1.3	0.6	0.2	3.7	0.3	0.0	1.4	1.7	102.9
시금치	1.1	0.1	0.1	0.1	0.1	0.4	0.2	0.6	0.1	0.3	0.1	95.2
복숭아	0.5	0.6	2.0	0.4	0.3	0.1	2.4	0.2	0.0	0.8	0.8	94.7
마늘	0.4	0.4	0.5	1.1	0.3	3.5	1.4	2.6	5.9	1.8	3.6	94.0
딸기	0.0	0.0	0.1	0.8	0.2	0.3	0.2	1.1	0.1	0.3	0.1	92.9
양파	0.0	0.1	0.0	0.1	0.2	1.9	0.9	1.3	1.5	0.7	0.6	90.6
참외	1.2	0.1	0.0	0.0	0.1	0.1	1.3	1.1	0.5	0.5	0.3	88.0
겉보리	0.1	0.3	0.2	0.1	1.3	0.0	1.0	1.9	0.0	0.6	0.5	86.4
녹두	0.1	0.0	0.1	0.1	0.0	0.3	0.0	0.0	0.4	0.1	0.0	85.2
감자	0.5	6.0	0.7	0.5	0.9	0.5	0.7	1.1	6.3	1.9	5.7	79.3
밀	0.0	0.0	0.0	0.0	0.2	0.2	0.0	0.3	0.0	0.1	0.0	74.8
상추	1.4	0.1	0.1	0.2	0.2	0.2	0.2	0.3	0.1	0.3	0.2	73.7
감	0.0	0.1	0.4	0.3	0.5	1.9	2.1	5.1	0.4	1.2	2.7	73.5
사과	0.2	0.2	2.4	0.8	0.4	0.1	5.3	1.0	0.0	1.3	3.3	71.6
옥수수	0.6	5.5	1.9	0.3	0.2	0.5	0.5	0.5	0.0	1.2	3.3	68.5
맥주보리	0.0	0.0	0.0	0.0	0.0	5.0	0.0	2.2	5.4	1.4	5.1	61.6
쌀보리	0.0	0.0	0.0	0.1	4.3	5.6	0.1	0.8	0.0	1.4	5.1	60.9
생강	0.0	0.0	0.0	0.5	0.2	0.0	0.1	0.0	0.0	0.1	0.0	58.8
자두	0.0	0.1	0.4	0.0	0.0	0.0	1.5	0.2	0.0	0.3	0.2	54.9
양배추	0.0	0.8	0.2	0.2	0.1	0.2	0.1	0.0	3.5	0.6	1.3	51.1
당근	0.0	0.4	0.0	0.0	0.0	0.0	0.1	0.3	3.3	0.5	1.1	43.7
감귤	0.0	0.0	0.0	0.0	0.0	0.0	0.0	0.0	40.2	4.5	179.2	33.3

* : 해당품목의 재배면적이 0인 제주도를 제외한 것임.

표 3-7. 지역별 품목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

순위 지역	1	2	3	4	5	6	7	8	9	10
경기	미곡 (37.8)	상추 (3.7)	배추 (2.0)	배 (1.9)	무 (1.9)	포도 (1.8)	파 (1.7)	오이 (1.7)	고추 (1.5)	시금치 (1.3)
강원	미곡 (36.6)	배추 (6.7)	감자 (6.7)	오이 (4.8)	고추 (4.6)	무 (2.5)	콩 (2.2)	호박 (2.1)	풋고추 (1.8)	토마토 (1.5)
충북	미곡 (43.0)	고추 (6.7)	포도 (5.3)	사과 (4.8)	배추 (2.9)	수박 (2.6)	복숭아 (2.0)	콩 (1.9)	배 (1.8)	참깨 (1.5)
충남	미곡 (58.9)	딸기 (5.1)	수박 (4.4)	고추 (3.0)	배 (2.3)	오이 (2.3)	배추 (2.1)	포도 (1.9)	사과 (1.6)	토마토 (1.5)
전북	미곡 (67.3)	고추 (3.3)	수박 (2.8)	무 (2.7)	배추 (2.4)	쌀보리 (1.8)	딸기 (1.6)	오이 (1.3)	포도 (1.1)	배 (1.0)
전남	미곡 (51.9)	마늘 (6.3)	고추 (5.6)	오이 (3.5)	풋고추 (3.5)	양파 (3.4)	배추 (3.1)	파 (2.7)	딸기 (2.7)	배 (2.2)
경북	미곡 (42.6)	사과 (10.1)	참외 (10.0)	포도 (5.9)	고추 (4.8)	복숭아 (2.6)	수박 (2.4)	마늘 (2.0)	자두 (2.0)	배 (1.8)
경남	미곡 (30.2)	고추 (8.2)	풋고추 (7.1)	수박 (5.7)	딸기 (4.7)	단감 (3.2)	마늘 (2.7)	양파 (1.7)	호박 (1.5)	배 (1.4)
제주	감귤 (52.5)	당근 (7.4)	마늘 (7.0)	감자 (3.0)	양배추 (2.5)	파 (2.1)	콩 (1.8)	양파 (1.8)	유채 (1.4)	무 (1.4)

주: ()는 지역별·품목별 생산액/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임.

2.5. 영양섭취(칼로리 기준) (표 3-8)

- 식량 순수입국이며, 2002년 기준으로 양곡자급률이 30.4%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식량안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척도임. 식량안보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식품으로서 국민의 섭취량 가운데 차지하는 에너지(칼로리)의 규모에 따라 품목별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음.

- 품목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을 산출하여 특정 품목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양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품목은 주로 쌀, 옥수수, 돼지고기, 콩, 우유, 달걀, 쇠고기, 닭고기, 마늘, 감자 등임.
- 동태적으로 살펴보면 축산물로부터 얻는 영양공급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식물성 유지작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표 3-8. 품목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단위: kcal/1인 1일당

순위	1990		1995		2000		2001		2002	
1	쌀	1,174.5	쌀	1,108.9	쌀	933.0	쌀	945.5	쌀	915.6
2	밀가루	284.9	밀가루	326.9	밀가루	363.3	밀가루	346.2	밀가루	348.3
3	옥수수	213.2	옥수수	224.6	옥수수	266.1	옥수수	245.6	옥수수	238.2
4	설탕	160.6	설탕	186.8	설탕	185.6	설탕	206.4	설탕	215.5
5	콩	91.6	돼지고기	110.2	대두유	171.5	대두유	180.2	대두유	192.4
6	돼지고기	91.3	콩	93.1	돼지고기	107.2	팜유	118.6	팜유	113.1
7	우유	48.4	우유	60.5	팜유	100.3	돼지고기	108.8	돼지고기	108.5
8	달걀	35.7	육류부산물	47.2	콩	90.9	콩	87.3	콩	89.2
9	마늘	26.2	달걀	36.2	우유	79.2	우유	84.4	우유	84.3
10	육류부산물	22.7	마늘	29.6	육류부산물	40.2	달걀	37.8	달걀	41.1
11	보리쌀	22.4	쇠고기	28.9	쇠고기	38.3	쇠고기	36.0	쇠고기	37.5
12	무	19.0	보리쌀	17.8	달걀	37.2	옥배유	35.4	육류부산물	34.6
13	배추	18.0	고추	16.2	닭고기	30.2	육류부산물	33.5	옥배유	33.9
14	쇠고기	14.8	감자	15.9	옥배유	30.1	닭고기	28.0	닭고기	30.5
15	닭고기	14.5	사과	15.5	마늘	23.6	야자유	25.5	야자유	23.7
16	감자	14.4	닭고기	15.3	야자유	22.2	마늘	22.1	마늘	20.0
17	사과	14.1	양파	14.9	보리쌀	17.1	보리쌀	18.8	감자	18.2
18	고추	13.6	배추	13.7	참기름	16.6	고구마	17.1	보리쌀	14.9
19	고구마	12.8	무	12.7	고구마	16.1	참기름	16.0	양파	14.2
20	양파	11.8	굴	12.7	감자	15.7	감자	15.4	참기름	14.1
21	땅콩	8.5	참깨	11.2	고추	15.2	양파	15.1	고추	13.2
22	팥	8.5	고구마	10.2	배추	14.1	고추	13.6	고구마	12.7
23	굴	7.9	땅콩	8.3	양파	13.8	배추	13.5	땅콩	10.8
24	조제분유	7.7	수박	7.7	사과	11.6	굴	10.6	참깨	10.5
25	참깨	6.5	조제분유	7.4	땅콩	11.5	무	10.4	굴	10.4
26	과	4.8	포도	6.3	포도	10.9	포도	10.3	배추	10.1
27	탈지분유	4.1	과	5.8	무	10.7	사과	9.6	사과	10.1
28	수박	3.5	밤	5.8	굴	9.8	땅콩	9.5	포도	9.5
29	전지분유	3.3	참외	4.2	수박	8.9	수박	9.1	무	8.4
30	배	3.2	단감	3.7	우지	8.5	우지	8.7	우지	8.1

<표 3-8 계속>

순위	1990		1995		2000		2001		2002	
	31	포도	2.7	탈지분유	3.6	참깨	8.3	참깨	7.8	수박
32	참외	2.2	배	3.4	팥	7.0	조제분유	7.1	탈지분유	7.0
33	복숭아	2.1	당근	2.7	조제분유	6.2	유채유	7.0	팥	6.3
34	녹두	1.8	양배추	2.5	배	5.9	배	6.8	배	6.2
35	밤	1.8	복숭아	2.3	과	5.7	탈지분유	6.4	미강유	5.2
36	감	1.7	토마토	1.9	유채유	5.6	팥	6.3	조제분유	5.1
37	꿀	1.7	오이	1.6	밤	5.3	과	5.4	바나나	4.9
38	양배추	1.6	시금치	1.6	면실류	5.0	밤	5.2	과	4.8
39	당근	1.6	딸기	1.6	바나나	4.9	바나나	5.2	면실류	4.8
40	토마토	1.6	녹두	1.5	탈지분유	4.4	꿀	4.6	들기름	4.3
41	오이	1.3	생강	1.4	미강유	4.2	면실류	4.1	밤	3.9
42	생강	1.0	꿀	1.4	단감	4.1	호박	3.8	꿀	3.8
43	딸기	1.0	메밀	1.3	참외	3.8	단감	3.5	호박	3.6
44	느타리	0.9	상추	1.3	양배추	3.5	참외	3.1	단감	3.5
45	연유	0.7	호박	1.1	호박	3.5	들기름	2.7	참외	2.8
46	호박	0.7	호도	0.8	꿀	3.0	미강유	2.7	복숭아	2.7
47	메밀	0.7	연유	0.8	복숭아	2.5	양배추	2.6	당근	2.5
48	시금치	0.6	전지분유	0.7	당근	2.4	복숭아	2.4	전지분유	2.4
49	수수	0.5	팥	0.7	들기름	2.3	당근	2.4	양배추	2.0
50	조	0.5	미나리	0.5	토마토	2.0	풋고추	2.1	녹두	1.9
51	상추	0.4	도토리	0.5	풋고추	1.9	전지분유	1.8	아몬드	1.9
52	잣	0.2	조	0.4	상추	1.7	녹두	1.7	딸기	1.8
53	호도	0.2	표고버섯	0.4	오이	1.6	아몬드	1.7	토마토	1.8
54	산나물	0.2	잣	0.4	딸기	1.6	오이	1.6	오이	1.7
55	양송이	0.2	산나물	0.4	오렌지	1.6	토마토	1.6	고추	1.7
56	표고버섯	0.1	가지	0.3	전지분유	1.6	상추	1.5	오렌지	1.7
57	도토리	0.1	양송이	0.3	아몬드	1.5	시금치	1.5	상추	1.5
58	은행	0.1	수수	0.2	시금치	1.4	오렌지	1.4	산나물	1.4
59	들깨	0.0	은행	0.1	산나물	1.4	산나물	1.3	시금치	1.3
60	가지	0.0	호밀	0.0	메밀	1.2	도토리	1.2	자두	1.2

주: 품목별 1인 1일 영양공급량은 품목별 에너지 공급량(Kcal)에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연도.

2.6. 품목별 요소 집약도

- 품목별 요소 집약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토지 및 노동의 비용분배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단위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산물이 가장 높았으며, 경종 작물로서는 시설채소와 (시설)과일류, 쌀, 겉보리, 맥주보리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쌀보리 등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토지와 노동, 그리고 가변비용을 제외한 고정비용은 일종의 자본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은 품목이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도가 높은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동태적인 변화를 보면 산란계, 사과, 맥주보리의 경우 고정비용의 분배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동비용 분배뒀이 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참깨, 고추, 콩, 양파, 포도, 복숭아 등이 그 대표적인 품목이며, 노동비용의 비중이 작은 품목은 축산물과 기계화된 상대적으로 잘 진행된 쌀과 보리, 그리고 시설 채소 및 과일류 등임
- 토지비용 분배뒀이 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적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쌀, 겉보리, 쌀보리, 참깨, 인삼, 고구마, 양파, 마늘, 고추 등이며, 쌀을 제외하고 이들 품목 대부분은 동태적으로 토지비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3-9. 품목별/연도별 고정비용 비중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0-02평균
가을감자	4	4	5	7	8	8	12	11	11
감귤(노지)	8	1	1	21	14	15	14	13	14
감귤(시설)		2	2	22	22	2	21	22	21
겉보리	25	28	23	25	23	24	21	25	23
고구마	5	5	6	7	7	9	9	1	9
노지고추	5	5	5	4	5	4	4	4	4
마늘	2	2	3	3	3	3	3	3	3
양파	4	4	4	5	4	3	3	4	3
단감	7	8	9	11	14	14	14	15	14
맥주보리	16	17	19	2	28	28	28	26	27
배	7	9	1	13	15	14	13	16	14
복숭아	6	7	8	1	1	12	14	13	13
봄감자	6	6	8	1	1	1	1	1	1
사과	8	9	1	14	16	17	17	17	17
쌀보리	34	32	32	33	31	3	29	32	3
인삼	2	2	7	4	5	5	14	14	11
참깨	4	5	5	5	2	6	5	5	5
콩	8	9	8	11	12	15	14	16	15
포도(노지)	8	8	9	11	13	13	13	13	13
포도(시설)	27	26	27	24	27	24	27	30	27
쌀						22	22	23	23
낙농	12	13	15	21	22	21	21	-	22
비육돈	32	31	32	32	-	36	34	35	35
산란계	17	16	17	33	37	36	36	35	36
육계	28	24	23	25	30	30	33	34	33
한우비육우	61	57	50	47	46	46	54	57	52

자료: 농축산물표준소득, 농촌진흥청

주: 각 품목의 총비용(TC)에서 고정비용(K)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단, 낙농의 경우 99-01년도의 평균임.

표 3-10. 품목별/연도별 가변비용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0-02 평균
가을감자	43	41	40	43	46	45	43	45	44
감귤(노지)	30	32	26	27	30	32	37	32	34
감귤(시설)		52	54	54	48	60	58	58	59
겉보리	25	22	24	27	26	28	27	25	27
고구마	28	30	30	35	36	33	33	35	34
노지고추	23	21	20	23	25	25	26	26	25
마늘	48	42	41	45	50	45	44	43	44
양파	29	29	30	29	31	31	32	31	31
단감	24	24	23	27	26	28	27	28	27
맥주보리	27	29	28	34	40	36	33	34	34
배	27	28	28	32	33	33	33	34	33
복숭아	23	21	23	25	28	27	28	30	28
봄감자	41	44	40	42	44	45	43	41	43
사과	27	28	29	33	34	36	33	33	34
쌀보리	23	22	26	28	28	30	28	26	28
인삼	36	34	32	39	38	41	36	38	38
참깨	11	11	11	14	14	14	13	13	13
콩	19	19	17	21	22	22	19	20	20
포도(노지)	26	24	22	27	26	27	27	29	28
포도(시설)	45	49	47	50	42	47	39	34	40
쌀						18	18	17	17
낙농	55	54	57	62	62	60	61	-	61
비육돈	49	51	56	63	0	59	61	60	60
산란계	59	64	67	62	56	57	58	58	58
육계	62	63	64	68	64	62	60	59	61
한우비육우	24	27	35	45	41	40	36	33	36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해당 연도

주: 총비용(TC)에서 가변비용(M)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가변비용은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광열동력비, 소농구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3-11. 품목별/연도별 토지비용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0-02평균
가을감자	0.80	0.46	0.62	0.58	0.75	3.01	4.09	3.34	3.48
감귤(노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감귤(시설)		0.00	0.14	0.93	1.01	0.31	0.16	0.38	0.28
겉보리	13.42	16.47	14.90	11.74	16.87	13.95	18.18	19.93	17.35
고구마	1.93	1.85	2.28	2.35	5.15	7.62	6.03	7.54	7.06
노지고추	4.34	4.35	4.08	4.44	4.27	4.89	5.24	5.29	5.14
마늘	1.95	2.33	2.53	3.51	3.12	4.13	3.87	4.03	4.01
양파	4.03	5.45	4.82	5.72	5.60	5.63	6.72	6.46	6.27
단감	0.03	0.41	0.15	0.27	0.37	0.34	0.24	0.25	0.28
맥주보리	2.12	1.64	2.53	0.27	1.09	1.31	3.29	1.86	2.15
배	1.26	0.65	0.68	0.25	0.47	0.67	0.86	0.90	0.81
복숭아	0.13	0.05	0.16	0.25	0.18	0.15	0.32	0.59	0.35
봄감자	0.62	1.35	1.15	0.76	1.01	1.03	1.06	1.10	1.06
사과	0.01	0.01	0.03	0.08	0.42	0.03	0.51	0.05	0.19
쌀보리	9.80	11.14	7.41	6.35	12.00	10.33	16.88	16.60	14.61
인삼	2.45	4.18	5.00	8.45	7.64	6.34	8.76	9.89	8.33
참깨	9.19	9.10	9.16	8.99	10.23	9.74	10.67	10.07	10.16
콩	1.58	0.79	0.66	0.18	0.88	1.96	4.44	2.51	2.97
포도(노지)	0.23	0.52	0.38	0.46	0.30	0.36	0.78	0.86	0.67
포도(시설)	0.00	0.05	0.00	0.06	0.09	0.18	0.64	0.36	0.39
쌀						29.71	29.68	30.38	29.92
낙농	0.01	0.03	0.02	0.06	0.07	0.10	0.12	-	0.10
비육돈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산란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육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한우비육우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1	0.01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주: 총비용(TC)에서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단, 낙농의 평균은 99-01년 기준임.

표 3-12. 품목별/연도별 노동비용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0-02평균
가을감자	51.54	54.53	54.72	49.09	45.27	43.47	40.28	40.93	41.56
감귤(노지)	62.31	58.05	63.74	51.78	56.84	53.70	48.87	55.30	52.62
감귤(시설)		27.93	25.49	23.17	28.48	19.10	20.71	19.85	19.89
겉보리	36.98	33.57	37.92	36.89	34.30	34.55	34.12	29.95	32.87
고구마	65.08	62.29	61.83	55.49	51.41	49.57	51.51	47.90	49.66
노지고추	66.97	68.98	70.87	68.02	66.54	65.60	64.72	64.96	65.09
마늘	47.47	53.26	53.64	48.67	43.77	47.84	49.87	50.29	49.33
양파	62.16	61.36	60.71	60.37	60.05	60.17	58.22	58.49	58.96
단감	68.15	67.43	68.58	61.58	60.13	57.58	58.85	57.03	57.82
맥주보리	54.86	52.32	49.84	45.77	31.51	34.58	35.83	38.05	36.15
배	64.91	61.72	60.63	54.47	51.25	52.05	53.69	49.75	51.83
복숭아	70.60	71.34	68.76	64.65	61.50	61.37	57.46	56.32	58.38
봄감자	52.93	48.78	50.76	47.71	44.37	44.07	46.25	47.67	46.00
사과	65.07	63.35	60.94	52.99	49.35	46.97	49.87	49.41	48.75
쌀보리	33.82	34.19	35.49	33.14	29.75	30.04	26.44	25.18	27.22
인삼	58.93	59.58	56.98	48.35	49.09	48.19	41.20	38.18	42.52
참깨	75.27	75.23	74.95	72.47	73.62	71.12	70.92	71.85	71.30
콩	71.22	71.76	74.03	67.88	64.99	61.43	62.74	61.92	62.03
포도(노지)	66.61	67.64	67.98	61.60	60.32	59.32	59.29	56.97	58.53
포도(시설)	27.75	25.90	25.97	25.62	31.24	28.69	33.29	35.04	32.34
쌀						30.34	30.29	29.70	30.11
낙농	32.70	33.22	28.71	17.42	15.15	18.43	17.22	-	16.93
비육돈	19.16	18.10	12.09	5.00	0.00	5.25	4.74	4.89	4.96
산란계	24.47	20.04	16.14	5.20	6.19	6.82	6.23	6.46	6.50
육계	10.02	12.63	13.19	6.86	6.38	7.79	6.61	6.35	6.92
한우비육우	15.06	16.19	15.67	8.05	13.16	14.26	9.97	10.44	11.55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주: 품목별 총비용(TC)에서 노동비용(L)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3-13. 생산비 구조에 따른 품목별 순위: 2000~2002년 평균

단위: %

순위	품목명	L/TC	품목명	A/TC	품목명	K/TC	품목명	M/TC
1	비육돈	5	감귤(노지)	0	한우비육우	52	참깨	13
2	산란계	7	비육돈	0	산란계	36	쌀	17
3	육계	7	육계	0	비육돈	35	콩	20
4	한우비육우	12	산란계	0	육계	33	노지고추	25
5	낙농	17	한우비육우	0	쌀보리	30	겉보리	27
6	감귤(시설)	20	낙농	0	맥주보리	27	단감	27
7	쌀보리	27	사과	0	포도(시설)	27	포도(노지)	28
8	쌀	30	단감	0	겉보리	23	쌀보리	28
9	포도(시설)	32	감귤(시설)	0	쌀	23	복숭아	28
10	겉보리	33	복숭아	0	낙농	22	양파	31
11	맥주보리	36	포도(시설)	0	감귤(시설)	21	배	33
12	가을감자	42	포도(노지)	1	사과	17	감귤(노지)	34
13	인삼	43	배	1	콩	15	고구마	34
14	봄감자	46	봄감자	1	단감	14	사과	34
15	사과	49	맥주보리	2	배	14	맥주보리	34
16	마늘	49	콩	3	감귤(노지)	14	한우비육우	36
17	고구마	50	가을감자	3	포도(노지)	13	인삼	38
18	배	52	마늘	4	복숭아	13	포도(시설)	40
19	감귤(노지)	53	노지고추	5	인삼	11	봄감자	43
20	단감	58	양파	6	가을감자	11	마늘	44
21	복숭아	58	고구마	7	봄감자	10	가을감자	44
22	포도(노지)	59	인삼	8	고구마	9	산란계	58
23	양파	59	참깨	10	참깨	5	감귤(시설)	59
24	콩	62	쌀보리	15	노지고추	4	비육돈	60
25	노지고추	65	겉보리	17	양파	3	육계	61
26	참깨	71	쌀	30	마늘	3	낙농	61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2.7.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 및 양허관세 수준(표 3-11)

-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쌀을 비롯하여 맥류(보리), 옥수수, 두류(콩, 팥, 녹두 등), 고추, 마늘, 참깨, 땅콩 등이며, 축산물도 최근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
- 국내외 가격차가 큰 맥류, 옥수수, 마늘 등은 해당 2004년 양허관세도 매우 높은 반면, 대부분의 두류와 참깨, 고추는 양허관세 수준이 국내외 가격차를 충분히 만회할 정도로 높지 않아 관세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편 축산물은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차별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국내외 가격차이가 곧 국제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표 3-14. 주요 품목의 2001-03년도 평균 국내외 가격차 및 2004 양허세율
단위: 원/kg, %

	국내가격(A)	국제가격(B)	(A-B)/B*100	2004년 양허세율
쌀	-	-	-	관세화유예
보리	787.3	304.9	158.2	쌀보리(299.6), 겉보리(324)
맥주보리	952.0	219.1	334.5	513
옥수수	575.6	139.9	311.4	365
대두	2,460.4	290.1	748.2	487
팥	3,705.7	504.8	634.0	420.8
녹두	4,428.7	172.5	2,468.1	607.5
고구마	689.2	797.2	-13.6	385
감자	301.8	935.5	-67.7	338
배추	311.0	255.0	22.0	27
양배추	232.3	933.2	-75.1	27
상추	1,589.0	1,584.8	0.3	45

<표 3-14 계속>

	국내가격(A)	국제가격(B)	(A-B)/B*100	2004년 양허세율
무	140.3	459.2	-69.4	45
당근	670.0	539.3	24.2	40.5
고추	5,810.6	1,615.6	259.7	270
마늘	1,393.1	688.8	102.3	360
양파	293.2	527.6	-44.4	150
오이	740.9	813.7	-8.9	27
파	759.7	3,553.9	-78.6	27
호박	596.3	645.3	-7.6	27
토마토	678.9	872.6	-22.2	45
딸기	1,140.2	1,592.5	-28.4	45
사과	1,286.9	1,126.2	14.3	45
배	977.0	1,176.2	-16.9	45
복숭아	967.2	1,099.8	-12.1	45
포도	1,891.5	1,652.6	14.5	45
참깨	9,407.3	866.9	985.1	630
땅콩	2,001.8	857.1	133.6	230.5
엽연초	6,940.0	5,422.1	28.0	54
느타리버섯	2,949.6	2,495.7	18.2	40.5
쇠고기	9,066.3	3,536.6	156.4	40
돼지고기	5,036.0	2,032.3	147.8	25
닭고기	2,807.7	1,379.5	103.5	20

국내가격은 농가판매가격, 국제가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공 수입단가임
 자료: 농협조사월보, 농림업주요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2.8.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

□ 지난 15년간 1인당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 온 품목은 축산물과 낙농품, 포도, 단감, 감귤의 과일과 마늘, 양파, 참깨, 옥수수 등이며, 사과, 콩, 보리의 소비량은 감소해 왔음.

표 3-15. 1인당 연간 소비량: 1985~2002년

단위: kg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쌀	128.1	119.6	106.5	93.6	88.9	87.0
보리쌀	4.6	1.6	1.5	1.6	1.7	1.5
밀	32.1	29.8	33.9	35.9	34.4	34.6
옥수수	3.1	2.7	3.3	5.9	6.3	5.7
콩	9.3	8.3	9.0	8.5	8.2	8.4
무	23.1	26.7	21.1	24.4	23.7	19.2
배추	35.6	46.9	38.3	39.7	37.8	28.4
마늘	3.8	6.5	7.5	7.2	6.4	5.8
양파	7.8	7.4	16.5	14.8	16.6	15.3
고추	1.5	1.8	2.4	2.5	2.3	2.2
사과	13	14.5	15.8	10.4	8.4	9.0
배추	3.1	3.6	3.9	6.7	8.6	7.8
복숭아	3.2	2.7	2.9	3.6	3.5	4.0
포도	3.7	3.1	7.0	10.3	9.7	9.0
단감	1.6	1.5	3.4	4.8	4.1	4.1
감귤	9.1	11.5	14.0	14.0	15.5	15.5
참깨	1.12	1.31	1.92	2.00	2.10	2.20
땅콩	0.49	0.92	0.64	0.88	0.82	0.82
쇠고기	2.9	4.1	6.7	8.5	8.1	8.5
돼지고기	8.4	11.8	14.8	16.5	16.9	17.0
닭고기	3.1	4.0	5.9	6.9	7.3	8.0
우유	23.8	42.8	47.8	59.2	64.3	63.9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4.

□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1990~2000 소비패턴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3-16. 일본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단위: g

기간	곡류	서류	설탕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유지류
1984~86	459	101	69	40	307	159	98	47	162	41
1989~91	396	103	92	41	296	157	113	52	182	39
1995~97	362	98	87	37	297	156	120	54	187	41
1998~00	319	95	79	36	304	138	116	53	184	41
2001	316	94	78	36	303	146	124	53	180	42

2.9. 종합 결과

- 쌀은 항상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다른 경종작물간의 비교가 쉽지 않음. 따라서 여기서는 쌀(또는 축산물)을 제외한 후 언급된 지표를 이용하여 민감품목의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
- 민감품목의 선정은 우선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위 40개 품목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품목 수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을 적용하였음.
 - 첫째 기준으로 농가피해를 고려하였음.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 정도는 생산액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이 기준에 따를 때 사과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배추와 포도는 피해 정도가 적을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7. 생산액과 국내외가격차에 의한 품목분류

		국내외가격차		
		대	중	소
생산액	대	사과	고추, 쇠고기, 마늘, 배추, 딸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	참깨, 대두, 보리, 배	맥주보리, 복숭아, 무, 고구마, 상치, 양파, 당근, 호박, 토마토, 감자	포도
	소	녹두, 생강, 팔, 땅콩	양배추	

주: 생산액 및 국내외가격차의 대, 중,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생산액 및 국내외가격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 두 번째는 자원의 유희화 정도를 고려하였음.
- 이를 위해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수(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분류.
 - 녹두, 팥, 시금치 등이 자원의 유희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나타냈으며, 고추는 취업자수와 재배면적 측면에서 쌀 다음으로 자원유희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8. 재배면적과 취업자수에 의한 품목분류

		취업자수		
		대	중	소
재배면적	대	고추	배추, 보리, 콩, 참깨	
	중	사과, 배, 마늘, 포도	수박, 딸기, 감귤, 복숭아, 감, 맥주맥, 감자, 양파, 무, 고구마, 옥수수	
	소		토마토,	녹두, 팥, 시금치

주: 재배면적과 취업자수의 대, 중,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및 국내외가격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 세 번째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존여건을 고려한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음. 해당품목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개별 요소의 비용분배뒀을 이용하여 집약도를 고려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를 때 참깨와 양파, 콩, 담배, 파 등이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노동분배뒀과 토지분배뒀으로 품목을 분류할 경우,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토지집약적인 품목은 콩, 파, 담배, 참깨 등이며, 버섯과 과실류가 상대적으로 노동 및 토지 절약적인 품목으로 나타났음.
 - 노동분배뒀과 자본분배뒀으로 품목을 분류하였을 경우,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집약도가 낮은 품목은 참깨, 콩, 담배, 파, 양파 등으로 나타났음.

표 3-19. 노동분배몫과 토지분배몫에 의한 품목분류

		노동분배몫		
		저	중	고
토지분배몫	저	느타리	복숭아, 단감, 사과, 감귤	
	중	맥주보리, 오이, 포도	마늘, 상추, 고추, 무, 수박, 감자, 참외, 호박, 배추, 토마토, 딸기, 배	콩, 담배, 과
	고	보리	인삼, 고구마, 양파	참깨

주: 노동분배몫과 토지분배몫의 대, 중,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노동 및 토지분배몫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3-20. 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에 의한 품목분류

		노동분배몫		
		저	중	고
자본분배몫	고	맥주보리, 오이, 포도, 느타리		
	중	보리	인삼, 고구마, 마늘, 상추, 고추, 무, 수박, 감자, 참외, 호박, 배추, 토마토, 딸기, 배, 복숭아, 단감, 사과, 감귤	
	저		양파	참깨, 콩, 담배, 과

주: 노동분배몫과 자본분배몫의 대, 중,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노동 및 자본분배몫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 토지분배몫과 자본분배몫으로 품목을 분류하였을 경우, 토지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집약도가 낮은 품목은 대표적으로 참깨와 양파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토지분배뭇과 자본분배뭇에 의한 품목분류

		자본분배뭇		
		고	중	저
토지분배뭇	저	느타리	복숭아, 단감, 사과, 감귤	
	중	맥주보리, 오이, 포도	마늘, 상추, 고추, 무, 수박, 감자, 참외, 호박, 배추, 토마토, 딸기, 배	콩, 담배, 파
	고		보리, 인삼, 고구마	참깨, 양파

주: 자본분배뭇과 토지분배뭇의 대, 중, 소의 구분은 해당품목의 자본 및 토지분배뭇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음.

-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민감품목에서 제외
 - 국내외 가격차가 큰 대표적인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 대두, 보리, 땅콩 등임
 - 그러나 지역집중도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다시 민감품목으로 고려
 - 지역집중도가 큰 품목은 감귤, 보리(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사과 감, 감자, 마늘, 양파, 복숭아 등임
-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한 민감품목 선정 1차안은 다음과 같음.
- 곡물류: 쌀, 보리(맥주맥 포함), 옥수수, 감자
 - 양념채소류: 고추, 마늘
 - 과일류: 사과, 배, 감귤
 - 축산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 민감품목의 1차안을 가급적 넓은 범위로 선정한 이유는 민감품목의 지정이 회원국 자율로 되어 있고, 그 개수는 향후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수를 미리 예단하여 최소한으로 줄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민감품목의 수는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TRQ 대상품목으로 논의된 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TRQ 대상품목 수는 실품목수로 60개 HS 10단위로 190 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감품목의 수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표 3-22. 민감품목 1차안

			품목 수(HS 10단위)		
			1차	2차	3차
쌀 (1)	1	쌀	16	16	16
곡물류(3)	1	보 리	17	10	-
	2	옥수수	18	9	-
	3	감 자	10	4	-
채소류(2)	1	고 추	7	5	5
	2	마 늘	6	6	6
과일류 (5)	1	사 과	6	6	6
	2	배	2	2	2
	3	포 도	6	6	-
	4	감 껍	8	3	3
	5	복숭아	4	4	-
축산 및 낙농(4)	1	한 우	22	11	11
	2	양 돈	28	17	14
	3	양 계	57	33	33
	4	낙농품	50	31	13
계			257	163	109
비중(%)			17.7	11.2	7.5

주: 1, 2, 3차는 해당 품목의 HS 10단위 가운데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된 개수를 제외한 경우임.

3.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TRQ 확대 검토

3.1. 민감품목의 관세조화 문제

-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유사 또는 직·간접 대체품의 관세가 낮을 경우 관세를 통한 국경보호의 실질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임.
- 특히 양념채소류의 경우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은 수입단가 신고 문제로 높은 관세가 무의미한 경우도 종종 발생.
- 따라서 다음에서 언급되는 품목은 양허수정 협상을 관련 세 번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설령 양허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이해 당사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임.
 - 차선책은 해당 품목과 대체/유사품의 관세 감축 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 때 TRQ 확대의 의무가 뒤 따르므로 관세감축과 TRQ 확대중 어느 것이 보다 유리한가를 비교 분석해서 결정해야 함.
 - 아울러 제한된 민감품목의 개수 안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 유사/대체품목을 모두 포함시켜 관세감축 폭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한 실익도 검토되어야 함.
 -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 고추의 경우 냉동고추와 고추장 등이 고추와 직·간접 대체되어 국내 고추의 가격이 낮을 때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국내 고추가격이 높을 때는 이들 대체품은 물론 신선 및 냉장, 건고추까지 수입단가를 낮추어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임. 마늘의 경우는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등의 관세가 여타 마늘과 큰 차이를 보여 국내가격이 높기만 하면 상당한 량의 냉동 및 초산마늘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³⁷⁾.

표 3-23. 민감품목(고추)

	H S 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904201000	고추류(건조/파쇄/미분쇄)	270	50
2	0904202000	고추류(건조/파쇄/분쇄)	270	50
3	709602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	270	50
4	710807000	고추류(냉동)	27	-
5	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입/신선/냉장)	270	50
6	0711905091	고추의 것(일시저장처리)	270	50
7	2103901030	고추장	54	-

표 3-24. 민감품목(마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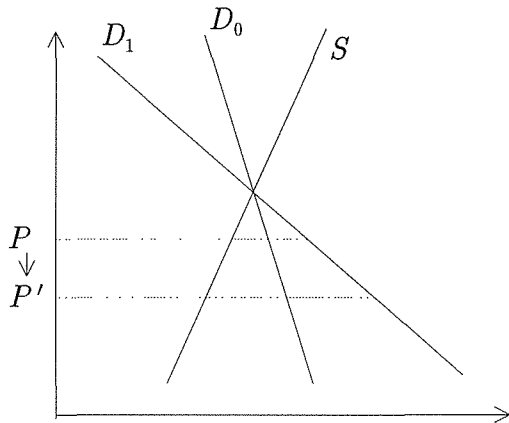
	H S 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712901000	마늘(건조)	360	50
2	0710802000	마늘(냉동)	27	-
3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360	50
4	0703201000	마늘(신선/냉장/탈피)	360	50
5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처리)	360	50
6	2001909060	마늘(조제저장처리)	36	-

37) 이와 유사한 경우는 부록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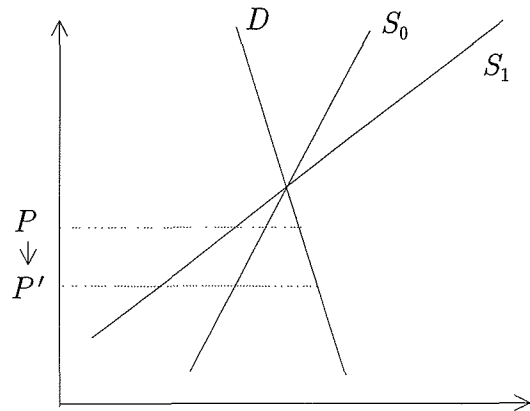
3.2. 관세감축과 TRQ 확대의 실익 문제

-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핵심품목의 경우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
 - 민감품목에 포함될 경우 관세감축 정도에 따라 TRQ 신설 및 증량 의무가 뒤따르게 될 것임. 그러나 일반 품목에 포함될 경우 관세감축 폭은 커지지만 TRQ증량의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04년 양허관세가 20%인 품목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UR공식을 적용, 최소 10% 관세를 감축할 경우, 이행 마지막도 관세는 18%가 되지만 대신 TRQ가 증량되어야 함. 반면 일반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관세감축 폭이 50%가 된다고 해도 이행 마지막도 관세수준은 10%이나 대신 TRQ증량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이러한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증대효과와 TRQ증량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어느 그룹에 속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한편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변화는 해당 품목의 수급 탄성치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국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또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그림 3-1>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림 3-2>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 <그림 3-1>과 같이 공급(S)이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곡선이 D_1 (탄력적)일 때보다 D_0 (비탄력적)일 때 가격변화($P \rightarrow P'$)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이 커짐.
- <그림 3-2>에서는 수요곡선(D)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곡선이 S_0 (비탄력적)보다 S_1 (탄력적)일 때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폭이 커짐. 따라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변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증가됨을 알 수 있음.

3.2.1. 관세 감축에 대한 수입량 확대 분석을 위한 모형

-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아래서 관세만이 유일한 국경조치일 경우 수입량은 국내외 수급차로 표현될 것임.

$$I(P) = D(P) - S(P) \dots \dots \dots (1)$$

여기서 I 는 수입수요이며, D 와 S 는 해당 품목의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P 는 국내시장가격을 나타냄.

□ 따라서 수입량의 변화는 수급탄성치 및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입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frac{\Delta I}{I} &= \frac{\Delta D}{D} \cdot \frac{D}{I} - \frac{\Delta S}{S} \cdot \frac{S}{I} \\ &= \frac{\Delta D}{D} \cdot \frac{D}{I} - \frac{\Delta S}{S} \cdot \frac{D-I}{I} \quad (\because I = D - S) \\ &= \frac{\Delta D}{D} \cdot \frac{D}{I} - \frac{\Delta S}{S} \cdot \frac{D}{I} + \frac{\Delta S}{S} \\ &= \frac{D}{I} \left(\frac{\Delta D}{D} - \frac{\Delta S}{S} \right) + \frac{\Delta S}{S} \\ &= \frac{D}{I} \left(\frac{\Delta D}{D} \cdot \frac{P}{\Delta P} \cdot \frac{\Delta P}{P} - \frac{\Delta S}{S} \cdot \frac{P}{\Delta P} \cdot \frac{\Delta P}{P} \right) + \frac{\Delta S}{S} \\ &= \frac{D}{I} \cdot \frac{\Delta P}{P} (\eta - \epsilon) + \epsilon \frac{\Delta P}{P} \\ &= \left\{ \frac{1}{\alpha} (\eta - \epsilon) + \epsilon \right\} \frac{\Delta P}{P} \dots \dots \dots (2) \end{aligned}$$

단, η 는 수요탄성치, ϵ 는 공급탄성치, $\alpha = I/D$ 는 총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 한편 국내가격 P 는 국제가격 P_w 에 수입관세(T)를 추가한 수준이 됨 (수입이후 제반 항역/운송/마진 등의 비용은 무시).

$$P = P_w(1 + T) \dots\dots\dots (3)$$

따라서 관세수준의 변화는 국제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국내가격의 변화로 이어지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음.

$$\Delta P = P_w \cdot \Delta T \dots\dots\dots (4)$$

□ (4)를 위의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begin{aligned} \frac{\Delta I}{I} &= \left\{ \frac{1}{\alpha} (\eta - \epsilon) + \epsilon \right\} \frac{P_w \cdot \Delta T}{P} \\ &= \left\{ \frac{1}{\alpha} (\eta - \epsilon) + \epsilon \right\} \frac{T \cdot P_w}{P} \cdot \frac{\Delta T}{T} \end{aligned}$$

이를 탄력성 형태로 바꾸면

$$\theta = \frac{\Delta I}{I} \cdot \frac{T}{\Delta T} = \left\{ \frac{1}{\alpha} (\eta - \epsilon) + \epsilon \right\} \frac{T \cdot P_w}{P} \dots\dots\dots (5)$$

여기서 θ 는 수입수요의 관세에 대한 탄력치이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치와(η, ϵ)와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관세, 국내외가격차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음.

3.2.2. 실증 분석

□ 분석대상

- WTO 농업협상에서 기본골격합의안이 나오기 전 초안에서 민감품목은 당초 TRQ품목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인해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품목의 대상으로서 일차적으로 TRQ 대상품목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TRQ 대상 품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는 TRQ 품목으로서 고추, 마늘, 양파를 선택하였으며 비 TRQ 품목으로서는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과와 쇠고기를 선정하여 이 품목들을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음.

□ 주요 품목별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율 계산

○ 수요와 공급함수의 설정

- 식(5)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인 품목별 공급함수와 수요함수의 자체 가격탄력성은 기존의 연구를 이용하였음. 선행연구로서 최양부 외(1993), 김명환 외(2000), 김경덕 외(2002)를 이용하였음.

표 3-25. 주요 품목의 공급탄성치 및 수요탄성치

	최양부 외(1993)		김명환 외(2000)		김경덕 외(2002)	
	ϵ	η	ϵ	η	ϵ	η
고추	0.36	-0.22	0.310	-0.191	0.366	-0.077
마늘	0.38	-0.30		-0.271	0.358	-0.159
양파	0.39	-0.68	0.711	-0.448	0.717	-0.456
사과			0.840	-0.248	0.131	-0.445
쇠고기	1.25	-0.9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외(2000)와 김경덕 외(2002)에서는 공급탄성치가 아닌 재배면적의 가격탄성치를 이용하였음. 단수가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할 경우 공급탄성치와 재배면적의 가격탄성치는 일치함.
- 공급량은 재배면적에 단수를 곱한 것이므로 단수가 일정할 경우 공급량의 변화는 재배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됨. 즉

$$S = Y \cdot ACR \quad \text{이므로} \quad \Delta S = Y \cdot \Delta ACR \text{이 됨.}$$

따라서, 공급탄성치는

$$\epsilon = \frac{\Delta S}{S} \cdot \frac{P}{\Delta P} = \frac{Y \cdot \Delta ACR}{Y \cdot ACR} \cdot \frac{P}{\Delta P} = \frac{\Delta ACR}{ACR} \cdot \frac{P}{\Delta P}$$

단, 여기서 S는 국내 생산량, P는 자체가격, ACR은 재배면적을 나타내며, Y는 단수임.

- 연구 결과에 따라 품목별 공급탄성치 및 재배면적의 가격탄성치와 수요탄성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쇠고기의 공급탄성치를 제외한

여타 품목의 공급탄성치 및 수요탄성치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존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거나 인용하기 부적절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표시하였음.

○ 수급상황

- 식(5)에서 α 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을 검토해야 함.
- 고추, 마늘, 양파는 TRQ 품목으로서 쿼터 내 세율과 쿼터 밖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으며 사과와 감의 경우 검역문제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수입이 국내의 수급상황을 순수하게 반영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실제의 수입실적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입제한이 없을 경우의 수입수요를 추산하여 α 값을 계산하여야 함.

표 3-26. 2001~03년 평균 수급 실적 및 수입 수요량

단위: 톤

	생산량(S)	소비량(D)	수입수요(D-S)	α
고추	168,294	205,333	37,039	0.180
마늘	393,238	436,333	43,096	0.099
양파	917,335	968,000	50,665	0.052
사과	400,701	413,555	12,854	0.031
쇠고기	151,127	392,313	241,186	0.615

자료: 작물통계, 식품수급표,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주: 1) 소비량=1인당 소비량×인구

2) $\alpha=(D-S)/D$

○ 관세와 국내외 가격 자료

- 품목별 가격(P , P_w)과 양허세율(T)을 이용하여 $\frac{P_w \cdot T}{P}$ 를 계산함.

표 3-27. 품목별 국내외 가격과 양허세율

	국제가격(A) (원/kg)	국내가격(B) (원/kg)	2004 양허세율(C) (%)	(A×C)/B
고추	1,223	4,526	270	0.730
마늘	418	1,925	360	0.783
양파	253	595	135	0.574
사과	1,911	2,867	50	0.333
쇠고기	6,476	9,066	40	0.28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도소매가격동향
한국무역협회

주: 국제가격은 품목별 '01-'03평균 수입단가이며 국내가격은 도매가격임.

○ 결과

- 앞에서 구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반응도를 계산.
-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성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선행연구를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도 세 가지로 나타남.
- 고추의 경우 관세가 1% 하락할 때 현재 수준에서 수입량이 1.5~2.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TRQ증량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1.5~2.0%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음. 쇠고기의 경우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변화는 매우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상대적으로 관세감축의 부담이 작아 TRQ를 증량하는 것보다 관세를 감축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양과는 관세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관세가 1% 하락할 경우 수입량이 15~18% 늘어날 것임. 따라서 관세를 감축하는 것보다 TRQ를 증량하는 것이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이 모형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수급 사정이 달라질 경우 θ 값이 변할 수 있음.

표 3-28.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율

단위: %

	최양부 외(1993)	김명환 외(2000)	김경덕 외(2002)
고추	2.07	1.52	1.79
마늘	5.09	3.81	
양과	15.77	17.12	16.91
사과		6.13	11.39
쇠고기	0.68		

주: 괄호 안은 수입량 변화율임.

표 3-29. 관세 1% 변화시 수입량 변화율

	공급 탄성치	수요 탄성치	소비량(톤)	수입량(톤)	α	$\Delta I/I$ (%)
고추	0.36	-0.22	195,667	26,054	0.13	-2.92
마늘	0.38	-0.30	424,667	28,438	0.07	-7.65
쇠고기	1.25	-0.97	392,203	310,000	0.79	-0.45
돼지고기	0.48	-0.43	811,447	122,023	0.15	-1.11
닭고기	0.36	-0.60	368,443	88,685	0.24	-0.60

제 4 장

DDA 농업부문 모델리티 협상전략

1. 시장접근분야

1.1. 민감품목의 최대한 확보: 전략적 접근

-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 증량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확일적으로 규정할 공식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해 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는 회원국별로 그리고 동일한 국가내에서도 품목별로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감축과 모델리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일반 공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임.
- 그렇다면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민감품목의 개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앞에서 분석된 민감품목의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민감품목의 개수는 HS 10단위로 250여개 안팎으로 판단되며, 축산물 및 과실류 일부를 제외할 경우 최소한 100여개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민감품목과 관련된 논의에서 EU가 TRQ 관리대상 품목을 민감품목의 후보그룹으로 하자는 제안을 감안한다면 민감품목의 개수는 의외로 15~20% 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제 1안: HS 10 단위로 250~300개 수준
 - 제 2안: HS 10 단위로 150~200개
 - 제 3안: HS 10 단위로 67~140개

1.2. 일반품목의 관세구간 및 감축 폭의 효율적 설정

- 핵심 품목인 축산물과 과일류, 버섯 등의 관세는 20-45%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중요 품목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품목의 관세감축 구간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함.
- 과거 하빈슨초안의 경우 관세구간을 3~4개 구간으로 나눈 바 있음. 선진국의 경우 15%와 90%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눈 반면 개도국은 20%, 60%, 120%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40%대에 중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최초 관세구간을 가급적 넓게 설정해야 함.
 - 제 1안: 0 ~ 45%까지
 - 제 2안: 0 ~ 30%까지, 30~45%

표 4-1. 관세구간별 품목수, 평균 관세율, 주요품목, 생산액

관세구간1)	품목수	평균관세율	주요 품목	생산액2) (10억)
0세율	29	0.0	종자류	
1-10	186	5.8	종자,원피 등	
10-15	139	13.1	동물, 나무	
15-20	256	18.7	닭고기	817
20-30	286	26.5	돼지고기, 계란	2,584
30-40	104	35.1	쇠고기	1,786
40-50	122	44.7	과일류, 버섯, 채소	2,526
50-60	124	53.8	과일주스	
60-70	20	65.1	육류통조림	
70-120	47	82.4	바나나, 감, 동물의 설육	
120-150	7	138.9	양파, 감귤	881
150-250	24	206.9	낙농품, 천연꿀, 밤, 땅콩	1,517
250-350	24	287.2	보리, 옥수수, 감자, 고추	1,634
350-450	18	381.5	마늘, 고구마	749
450-600	13	521.3	대두, 녹차, 잣, 감자전분	295
600-700	7	618.3	참깨, 녹두, 대추	252
700-800	16	755.9	인삼류	380
800이상	14	831.4	매니옥, 곡물전분	
계3)	1,436	63.2		

주 1) 하한치는 초과하되 상한치는 포함됨. 예를 들면 10-15는 10% 초과 15% 이하를 의미

2) 생산액은 1999~2001년 평균 생산액이며,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계산.

3) 쌀은 제외시킴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2』,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1.3. 관세상한 철폐

- 관세상한은 우리나라와 같은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구조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Tiered approach 자체가 관세조화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 관세상한은 이중의 규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

2. 국내보조분야

2.1. 보조크기의 상대적 지표 개발

- AMS 감축률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할 때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예상됨.
 - AMS의 감축률은 하빈슨 안에서는 선진국 60%, 개도국 40%가 제시된 바 있으며, EU는 당초 제안은 55%에서 60%의 AMS 감축을 표명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AMS 사용실적은 쌀 약정수매제도 유지에 따라 그 대부분이 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AMS 감축률이 클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쌀 수매제도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4-2. 우리나라의 AMS 이행 실적

단위: 억 원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	합계(A) (사용실적)	양허수준 (B)	A/B (%)
1995	20,160	515	60	-	-	20,735	21,826	95
1996	19,099	509	56	-	-	19,664	21,056	93
1997	18,843	460	57	-	-	19,360	20,287	95
1998	15,098	468	62	-	-	15,628	19,517	80
1999	15,032	487	-	-	0.5	15,519	18,748	83
2000	16,472	418	-	18.5	-	16,909	17,978	94
평균	-	-	-	-	-	-	-	90

2.2. 완화된 Blue Box 이용을 위한 보조총액 감축률의 최소화

□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규정 활용을 위해 보조총액 감축율을 최소화해야 함.

- 기본골격에 제시된 완화된 형태의 Blue Box는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과거 연도 기준 농업총생산액의 5% 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음.
 - 2000~02년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액은 약 32조로 이의 5%는 1조 6천억 원임
 - 2004년 우리나라의 AMS 양허수준인 1조 4,9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AMS를 대폭 감축하더라도 감축된 부분만큼 완화된 형태의 Blue Box로 지급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완화된 Blue Box 운용은 다시 총액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AMS(양허수준)와 완화된 형태의 Blue Box, 품목 특정 및 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합은 약 2조 3,279억 원임.
- AMS 감축률을 60%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AMS 상한은 5,960억 원이 되고, AMS에 해당하는 보조를 전체감축보조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다고 본다면, 최소허용보조나 완화된 형태의 Blue Box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규모는 총액감축률(10~50%)에 따라 5,680억 원에서 1조 4,991억 원 수준이 됨

표 4-3. 보조총액 감축률별 무역왜곡 보조총액의 상한

단위: 억원

	2000년 총액	보조총액 감축률		
		10%	30%	50%
AMS	17,978	5,960	5,960	5,960
최소허용보조	5,301	14,991	10,335	5,680
완화된 Blue Box	0			
합계	23,279	20,951	16,295	11,640

주: AMS는 양허수준에서 60% 감축하고, 보조가운데 가장 먼저 소진한다고 가정함.

- 특히 보조총액 감축률이 50%로 설정된다면 AMS를 제외한 가능한 보조 수준은 현재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에 불과하고, 따라서 총액보조의 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완화된 Blue Box를 이용하여 AMS 대폭 감축의 효과를 줄이는 방법임.

2.3. 허용보조의 기준 신축성 확보: 특히 NTC 반영

- 허용보조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다시 검토된 기준에 기존 및 미래 조치들이 신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특히 소규모 가족농,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유지 등에 대한 NTC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새로운 기준에 소득안정 직접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제 5 장

C/S 작성의 기본 방향

1. 관세감축의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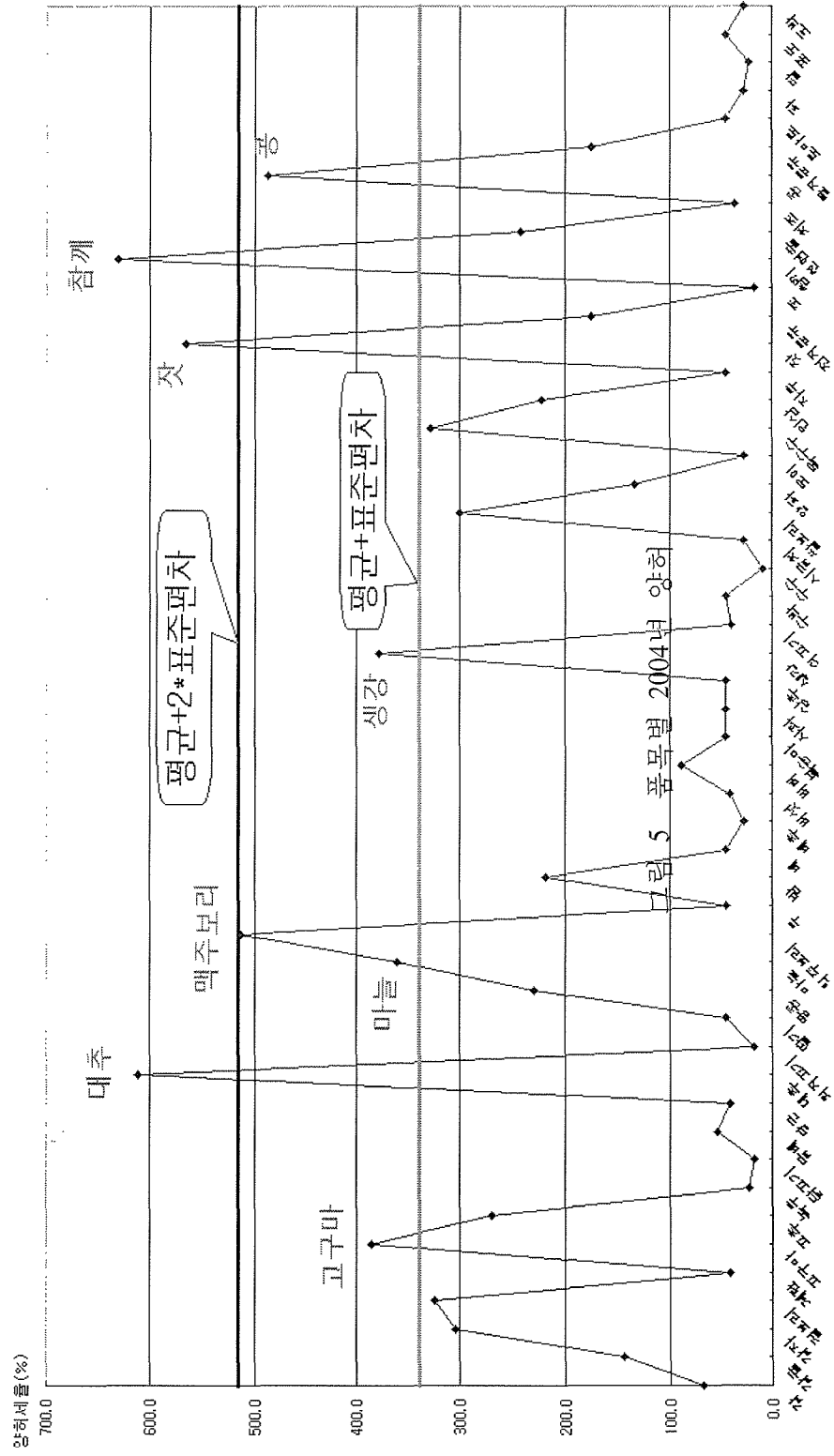
-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감축의 융통성이 주어질 것이나, 일반 품목의 관세 감축 폭은 상당히 수준이 될 것임. 이는 품목간 관세 감축률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 차원에서 볼 때 차선(second best)의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함.
- 차선의 관세감축 이론에 따르면 최적 관세감축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해(piecemeal reduction) 나가되,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① 여타 품목에 비해 특히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② 모든 품목에 동일한 감축률(equi- proportional reduction)을 적용하되, 여타 품목의 관세에 비해 특히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임.³⁸⁾

38) Vousden (1994), 『The Economics of Trade Protection』 참조.

원래 이론은 Fukushima(1979), "Tariff Structure, Non-Traded Goods, and Theory of Piecemeal Policy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0, pp 427-435와 Hatta and Fukushima(1979), "The Welfare Effect of Tariff Reduction in Many Country World", *Jour.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9, pp 503-511

-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관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극단적인 관세 수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농산물 평균 관세는 2004년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63%이며, 표준편차는 136%로서 극단적인 고율관세를 (평균+2*표준편차)로 본다면 이는 335% 임. 따라서 335% 보다 높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러한 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매니옥(887%), 참깨(754%), 대추(611%), 녹두, (607%), 잣(567%), 귀리(554%), 녹차(513%), 맥주맥(513%), 대두(487%), 팥(420%), 고구마(385%), 옥수수(370%), 마늘(360%) 등임.
- 그러나 HS 10단위로 1450여개에 이르는 전체 농산물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극단적인 관세를 찾는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의미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음.
- <그림 5-1>은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50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관세율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평균은 162%, 표준편차 176%로 나타났으며, 이에 기초할 때 극단적인 관세 품목은 2004년 양허관세가 약 340%를 넘는 고구마, 대추, 맥주보리, 마늘, 생강, 잣, 참깨, 콩 등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마늘을 민감품목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품목은 우선적으로 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 품목별 2004년 양허세율



2. 민감품목 관세감축의 전략적 접근

- 기본골격안에서 민감품목의 개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관세 감축은 실품목기준으로 언급되어 있음.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효과는 사실상 이전과 같은 UR 공식을 적용한 것과 동일해 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선정은 주요 핵심 품목을 선정하는 것 이외에 핵심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폭과 TRQ 증량 폭을 낮추는 대신 이미 개방이 된 일부 품목을 전략적으로 집어넣고, 이 품목의 관세와 TRQ를 대폭 늘림으로써 평균적인 관세감축과 TRQ 증량 폭을 맞출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맥주보리는 맥아(볶음), 맥아(훈연), 맥아(볶지 않은 것) 등 3개가 직접 대체품인데 이중 볶은 맥아의 관세는 27%로 이미 상당 부분 쿼터를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훈연 맥아와 볶지 않은 맥아의 관세는 270%대로 국내 맥주보리 재배농가의 보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이 경우 맥주보리 3개를 모두 민감품목에 넣되 실품목기준으로 관세를 감축하고 TRQ를 늘린다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훈연 맥아와 볶지 않은 맥아의 관세를 소폭 인하하고 대신 볶은 맥아의 관세를 대폭 낮추어 평균적인 관세감축 수준을 맞출 수 있음. TRQ는 총량쿼터로 이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주어질 것임.
- 이러한 전략적 선정을 위해서도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부록 1. 품목 분류 기준

부표 1-1. 생산액 기준 품목 분류

분 류	품 목	생 산 액(천원)
고	수박	621,839,443
	배추	579,284,547
	마늘	546,879,775
	딸기	536,271,673
	사과	521,829,272
	오리	511,175,233
	감귤	487,603,959
	오이	455,882,100
중	포도	438,922,284
	인삼	433,762,070
	참외	408,304,947
	무	387,243,567
	배	385,790,407
	담배	358,833,816
	파	340,032,667
	느타리	309,068,354
	양파	283,173,929
	콩	274,495,625
	감	271,218,479
	상추	256,565,352
	참깨	240,474,078
	호박	216,777,575
	토마토	212,691,079
	감자	202,164,757
	일반보리	170,941,010
	복숭아	169,684,784
	고구마	125,932,955
	시금치	103,963,234
	당근	102,921,738
	맥주보리	93,071,050
	들깨	65,427,843

<부표 1-1 계속>

분 류	품 목	생 산 액(천원)
저	양배추	55,789,758
	팔/녹두	38,808,022
	옥수수	36,919,001
	황기	36,883,580
	당귀	35,987,329
	길경	34,123,469
	팔	28,535,632
	땅콩	21,266,642
	녹두	10,272,389
	작약	6,337,128
	평 균	254,076,843
표준편차	189,264,958	
평균-표준편차	64,811,885	
평균+표준편차	443,341,801	

부표 1-2 노동투입시간에 따른 품목 분류

분 류	품 목	총투입시간
고	쌀	295,575,368
	닭	225,603,497
	고추	202,928,776
	한육우	93,620,749
	느타리버섯	85,042,875
	배	62,727,355
	사과	60,446,996
	마늘	55,996,987
	포도	55,975,952
	젓소암컷	47,687,311

<부표 1-2 계속>

분 류	품 목	총투입시간
중	수박	39,077,736
	딸기	38,182,265
	감귤	36,776,335
	복숭아	32,101,945
	배추	31,616,365
	감	31,523,886
	참외	31,381,894
	콩	28,736,721
	오이	25,755,624
	참깨	23,518,805
	감자	23,050,516
	돼지	22,568,611
	양파	21,043,149
	무	19,753,210
	상추	18,770,930
	대파	17,007,608
	토마토	16,901,036
	고구마	13,780,747
	인삼	12,555,183
	자두	6,909,775
옥수수	6,605,078	
맥주보리	6,003,954	
일반보리	5,701,646	
저	팔	5,056,596
	메론	4,597,328
	대추	3,636,062
	시금치	3,614,699
	매실	1,526,328
	참다래	1,124,646
평 균		25,621,604
표준편차		20,408,328
평균-표준편차		5,213,276
평균+표준편차		46,029,933

부표 1-3 지역별 집중도에 근거한 품목 분류

분 류	품 목	변이계수 ²
저	미곡	549.2
	참깨	250.4
	토마토	240.8
	콩	211.2
	무	208.8
	과	203.5
	고추	187.1
	고구마	179.8
	배	178.3
중	땅콩	173.8
	호박	172
	오이	149
	들깨	139.8
	팥	126.5
	배추	123.7
	수박	120.3
	포도	102.9
	시금치	95.2
	복숭아	94.7
	마늘	94
	딸기	92.9
	양파	90.6
	참외	88
	겉보리	86.4
	녹두	85.2
	감자	79.3
	밀	74.8
	상추	73.7
	감	73.5
	사과	71.6
	옥수수	68.5
	맥주보리	61.6
쌀보리	60.9	
생강	58.8	

<부표 1-3 계속>

분 류	품 목	변이계수 ²
고	자두	54.9
	양배추	51.1
	당근	43.7
	감귤	33.3
평균		116
표준편차		59.1
평균-표준편차		57.1
평균+표준편차		175.3

부록 2. 민감품목의 유사/대체품

부표 2-1 . 보리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1102901000	보리가루	260	20
2	1103191000	분쇄물, 조분(보리의 것)	260	20
3	1203203000	펠리트(보리의 것)	260	20
4	1104192000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233	20
5	1104292000	가공곡물(보리의 것)	126	20
6	1003009010	겉보리	324	20
7	1003009090	보리기타	299.7	20
8	2101301000	볶음치커리, 커피대용물(보리의 것)	40.5	
9	1003009020	쌀보리	299.7	20
10	1806902992	조제식료품기타(보리가루)	27	
11	1901909092	조제식료품기타(보리가루)	27	

부표 2-2. 맥주보리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269	30
2	1107201000	맥아(훈연한 것)	269	30
3	1107209000	맥아(기타/볶음)	27	
4	1702903000	맥아당	19.7	
5	2203000000	맥주	30	
6	1003001000	맥주맥	513	30
7	1806902910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스)	32.8	
8	1901901000	조제식료품기타(맥아엑스)	32.8	

부표 2-3. 옥수수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1104230000	가공곡물(옥수수의 것)	167	3
2	0712902092	단옥수수(기타/건조)	370	3
3	0712902091	단옥수수(종자용)	370	0
4	2302100000	박류(옥수수의 것)	6.6	
5	0710400000	스위트콘(냉동)	54	
6	2006009010	스위트콘(설탕저장처리)	15	
7	2005800000	스위트콘 (자메이스변종, 카라타/조제 저장처리)	15	
8	2001909040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	54	
9	2004901000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54	
10	1005909000	옥수수 기타	328	3
11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328	2
12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328	0
13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630	2
14	1102200000	옥수수가루	18	
15	2306700000	옥수수배의 것(오일케익 및 유박)	6.6	
16	1515290000	옥수수유(기타)	22.5	
17	1515210000	옥수수유(조유)	22.5	
18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22.5	
19	1108120000	전분(옥수수의 것)	226	2
20	1904102000	콘칩	5.4	
21	1904101000	콘플레이크	5.4	
22	2008993000	팝콘(조제저장처리)	45	
23	1103130000	분쇄물, 조분(옥수수의 것)	162.9	3

부표 2-4. 감자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712902093	감자(건조)	27	
2	0701900000	감자(기타)	304	30
3	2005209000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31.5	
4	0710100000	감자(냉동)	27	
5	2004100000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18	
6	0701100000	감자(종자용)	304	0
7	2005201000	감자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조 제저장처리)	54	
8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304	5.8
9	1105200000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304	5.8
10	1108130000	전분(감자의 것)	455	8
11	0714909090	서류(기타)	385	20
12	0714909010	서류(기타/냉동)	45	

부표 2-5. 감귤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144	50
2	0805900000	감귤류(기타/신선/건조)	144	50
3	2008300000	감귤류과실(조제저장처리)	45	
4	2007919000	감귤류의 과실조제품기타	31.5	
5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32.8	
6	2009399000	감귤류쥬스기타(기타)	54	-
7	2009319000	감귤류쥬스기타 (브릭스 값이 20을 초 과하지 않는 것)	54	-
8	0805209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144	50
9	2007911000	잼, 제리, 마말레이드(감귤류)	45	

부표 2-6. 쇠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506901020	뼈(소의 것)	9	
2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18	
3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8	
4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18	
5	020610000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18	
6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8	
7	0206210000	소식용설육(혀/냉동)	18	
8	1602509000	소의 것(기타조제저장)	72	-
9	1602501000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72	-
10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40	-
1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40	-
12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40	-
13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절단한 것)	40	-
1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40	-
15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40	-
16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22.5	
17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27	
18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27	
19	0504001010	장(소의 것)	27	
20	0511993010	수정란(소의 것)	18	-
21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 조분 및 펠리트	9	5
22	021099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 조분)	22.5	
23	1602100000	육. 설육(균질화조제품)	72	
24	1602909000	조제육. 설육기타	72	
25	1602901000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72	
26	2104101000	수프. 브로드. 제조품(육류의 것)	18	

부표 2-7. 돼지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103910000	돼지(50kg 미만의 것)	18	
2	0103920000	돼지(50kg 이상의 것)	18	
3	1602419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기타조제저장)	27	-
4	1602411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의 것)	54	
5	1602429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 (기타조제저장)	27	-
6	1602421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 (밀폐용기의 것)	54	
7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25	-
8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것)	25	-
9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5	-
10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삼겹살)	25	-
11	02031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22.5	
12	0203120000	돼지고기(냉장/넓적다리,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것)	22.5	
13	0203110000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2.5	
14	0203191000	돼지고기(냉장/삼겹살)	22.5	
15	0210991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22.5	
16	1602499000	돼지고기기타(기타조제저장)	27	-
17	1602491000	돼지고기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54	
18	021019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	25	-
19	02101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넓적다리살, 어깨살 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25	-
20	0210120000	돼지고기식용설육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1.5	
21	0206410000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18	
22	0206499000	돼지식용설육(기타/냉동)	18	
23	0206300000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18	
24	0206491000	돼지식용설육(족/냉동)	18	

부표 2-8. 닭고기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105119000	닭(기타/185g이하)	9	
2	0105929000	닭(기타/2,000g 이하)	9	
3	0105939000	닭(기타/2,000g 초과)	9	
4	0207141020	닭가슴(냉동)	20	-
5	0207131020	닭가슴(냉장)	18	
6	0207142010	닭간장(냉동)	22.5	
7	0207132010	닭간장(냉장)	22.5	
8	0207121000	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20	-
9	0207111000	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18	
10	1602321090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72	
11	1602329000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72	
12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20	-
13	020711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18	
14	0207142090	닭기타설육(냉동)	27	
15	0207132090	닭기타설육(냉장)	27	
16	0207141090	닭기타절단육(냉동)	20	-
17	0207131090	닭기타절단육(냉장)	18	
18	0207141030	닭날개(냉동)	20	-
19	0207131030	닭날개(냉장)	18	
20	0207141010	닭다리(냉동)	20	-
21	0207131010	닭다리(냉장)	18	
22	0408991000	조란(닭의 것)	41.6	30

부표 2-9. 유제품

	HSK	한글품명	2004 양허관세	시장 접근세율
1	0401100000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이하)	36	
2	0401200000	밀크와 크림 (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	36	
3	0403909000	밀크와 크림기타(발효 또는 신성화된)	36	
4	0405100000	버터	89	40
5	2106909020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품	54	
6	0403901000	버터밀크	89	20
7	0402109000	분유기타(감미 첨가)	176	20
8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 감미 미첨가)	176	20
9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 감미 미첨가)	176	40
10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176	40
11	040291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	89	40
12	040299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89	40
13	0402211000	전지분유(지방분의 전중량의 1.5%초과)	176	40
14	1806902111	조제분유(유아용)	36	
15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	36	
16	0406300000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36	
17	0406200000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36	
18	0406101000	치즈(신선)	36	
19	0406900000	치즈기타	36	
20	0402911000	무당연유	89	40
21	0402991000	가당연유	89	40
22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	36	
23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제외)	19.7	
24	1517909000	마가린류 유지기타	19.7	
25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36	
26	0401301000	냉동크림	36	
27	0501309000	크림기타	36	

부록3: 차선의 관세인하 모형

□ 특정 농산물 i 의 소비 및 생산을 C 및 X 라고 할 때 사회전체의 효용함수 및 생산가능곡선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음.

$$U(C) = U(C_1, C_2, \dots, C_n)$$

$$\Phi(X, v) = \Phi(X_1, X_2, \dots, X_n, v)$$

□ 쌍대이론을 이용하여 위 함수에서 지출함수와 GNP함수를 정의할 수 있음.

- ① 지출함수: $E(P, V) = \text{Min}[PC : U(C) = V]$
 ② GNP함수: $G(P, v) = \text{Max}[PX : \Phi(X, v) = O]$

□ 한편 국내가격 P_i 와 국제가격 P_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

- ③ 가격연계: $P_i = P_i^* + t_i$ (단 t_i 는 i 농산물의 관세)

□ 국제수지 균형조건으로부터 예산제약식이 도출됨.

- ④ 예산제약: $E(P, V) = G(P, v) + \Sigma\{t_i(C_i - X_i)\}$

□ 수입관세의 변화(dt_i)에 대한 사회전체의 후생 변화(dV)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의 식 ①의 양변을 가격으로 편미분 하면

- ⑤ $dE/dP_i = E_{P_i} = C_i(P, V)$
 ⑥ $\Sigma(P_i E_{P_i}) = E_{P_i} = E(P, V)$

□ 마찬가지로 방법을 식 ②에 적용하면

$$\begin{aligned} \textcircled{7} \quad & dG/dP_i = G_{P_i} = X_i(P, v) \\ \textcircled{8} \quad & \Sigma(P_i G_{P_i}) = G(P, v) \end{aligned}$$

□ 위의 식 ⑤와 ⑦을 이용하여 예산 제약식을 다시 표현하면

$$\textcircled{9} \quad \Sigma(E_{P_j} dt_j) + E_V dV = \Sigma G_{P_j} dt_j$$

□ 위의 식 ⑥을 ⑨에 대입하여 정리하며

$$\begin{aligned} \textcircled{10} \quad \Sigma(E_{P_j} dt_j) + E_V dV = & \Sigma G_{P_j} dt_j + \Sigma \Sigma t_j (E_{P_i P_j} - G_{P_i P_j}) dt_i \\ & + \Sigma (E_{P_i} - G_{P_i}) dt_i + \Sigma t_i E_{P_i V} dV \end{aligned}$$

이 때 GNP함수는 가격에 대해 볼록하고, 지출함수는 가격에 오목하기 때문에 $S_{P_i P_j}$ 는 가격에 대해 오목함. 따라서 $S_{P_i P_j}$ 로 이루어지는 행렬 S_{PP} 는 음반정조건(negative semi-definite) 임.

□ 한편 위의 식 ⑩의 좌변을 H 라고 하면 식 ⑩은 다음과 같이 변형됨.

$$\textcircled{11} \quad H \frac{dV}{dt_k} = \sum t_i S_{P_i P_j}$$

특정 품목의 관세수준을 고정시킬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k 농산물의 관세수준 t_k 는 위의 식 ⑪의 값이 0을 만족할 때의 t_k 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됨.

$$\textcircled{12} \quad t_k = -1/S_{P_k P_k} [\sum t_i S_{P_i P_j}]$$

따라서 차선의 관세인하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k 재의 관세율 수준 t_k 는 0가 아니며, 특히 모든 재화가 순 대체관계에 있으며, 관세가 유일한 국경장벽일 때 차선의 관세수준은 0이 아님을 의미.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경덕, 김태훈, 전상곤, 이정환. 1999. 농업전망시물레이션 모령: KREI-ASMO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보고서 M43.
- 농림부. 2000. 농업총조사.
- 농림부. 2003a. UR 농산물이행계획 참고자료. 국제농업국.
- 농림부. 2003b. 농림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 농림부. 2003c. 농림통계연보.
- 농림부. 2004. 농림업 주요통계 2003.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각년호.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월호.
- 서소청, 2001.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 강화와 농산품 경쟁력 제고', 「중국의 WTO 가
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송유철 외,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 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 겨울호.
- _____,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17
- 이재욱 외, 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경연 D94
- _____,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농경연 용역연구
보고 C99-36
- _____, 2001. 「WTO 농산물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 농경연 용역연구보고
- _____, 2002. 「주요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 수립」, 농경연
용역연구보고 C2002-4
- _____, 200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 농경연 용역연구보고

- 이정환 외, 1999. '한국 쌀농업의 선택 : 관세화인가? MMA인가?',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0. '한국 쌀농업의 선택 :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시나리오', 「농업경제연구」 제41권 제3호
- 이창제, 1996.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송수. 2003a.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8.
- 임송수. 2003b.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연구속보, 2003-2(제2권).
- 임송수, 김상현. 2003. WTO 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60.
- 임정빈 외, 200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국내외 영향 및 대응방안',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2.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용역연구보고 C20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02. 'WTO 쌀협상의 동향과 주요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토론자료
- 최세균, 임송수, 어명근.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48.
- 한두봉, 1999. '쌀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 쿼터와 관세의 비교분석',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 고려대 자연자원연구소
- 황계곤, 2000.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 _____, 2002. '미국 신농업법 입법동향', KREI 국제세미나 발표자료집

<국외문헌>

- ABARE, 1999.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Market Access Issues.
- Agra Europe. 2003. Commission Reticence on Sugar Proposal Understandable. 23 October 2003.
- Bingshen, K.E. and G.H. Wan. 2003. China's WTO Entry and Its Impact on the Agricultural Sector. Asa Pacific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Working Paper 03-11.
- Commission on 21st Century Production Agriculture. 2001. Directions for Future Farm Policy: The Role of Government in Support of Production Agriculture.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January 2001.
- IGTN[International Gender and Trade Network]. 2003. Special Report on the WTO Cancun Ministerial. No. 6. WTO Report Vol. 9.
<<http://www.globalservicesnetwork.com>>
- Inside US Trade. 2003a. Vol. 21, No. 37. 15 September 2003.
- _____. 2003b. Vol. 21, No. 41. 10 October 2003.
- Josling, T. and A. Rae, "Multilateral Approaches to Market Access Negotiations in Agricultur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the New Trade Agenda in the WTO 2000 Negotiations, World Bank.
- Sharma, R. 2002. "Incorporating Food Security Concerns 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sia Regional Workshop o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on Agriculture, 25-29 November 2002, Bangkok.
- Steinberg, H.R. and T.E. Josling. 2003. "When the Peace Ends: The Vulnerability of EC and US Agricultural Subsidies to WTO Legal Challen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369-417.
- Sumner, D. A. and Hyunok Lee, 2002. "The U.S. Farm Bill and the WTO: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IATRC), 1997. Implementation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ssues for the Next Round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USDA ERS, 1999. "Implementation of Uruguay Round Tariff Reductions, Agricultural Outlook.

USDA ERS, 2001. "Rice: Background and Issues for Farm Legislation", RCS-0601-01.

USDA ERS, 2002. "China's Food and Agriculture: Issues for the 21st Century"

USDA ERS, 2002. "Rice Outlook", RCS-1002

USDA ERS, 2002. "USDA Agricultural Baseline Projections to 2011"

WSJ[Wall Street Journal]. 2003. "Trade Talks Fail Amid Big Divide Over Farm Issues", 15 September 2003.

WTO. "WTO Agriculture Negotiation: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15 August 2003.

_____, Agreement on Agriculture, MTN/FA II-A1A-3

_____, various documents of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e.

C2004-

DDA 농업분야 Modality협상 결과분석 및 C/S 작성방향에 관한 연구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2004년 월 일 발행 2004년 월 일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주) 02-22637534(代)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